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2017. 8.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에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제출한 2016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 총수입 401.8조원, 총지출 384.9조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6.9조원 흑자, 관리재정수지는 22.7조원 적자를 기록하여 2016년 추경 전망보다 각각 14.4조원, 16.3조원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리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상당하고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노력은 배가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를 발간하여 국회의 결산 심사를 적극 지원하고자 합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분석시리즈」는 「총괄 분석」을 비롯하여 「위원회별 분석」,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 「결산 분석 종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번 「총괄 분석」에서는 12대 분야별 결산, 국세수입 등 재정총량에 대하여 심층 분석하고, 자치단체보조사업 분석 등 유형별 분석주제를 대폭 확대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하여 보다 거시적인 시각에서 재정 지출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부처 사업뿐만 아니라 46개 주요 공공기관의 결산 분석을 추가하여 재정 전반을 빠짐없이 살펴보고자 노력하였고, 「2015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에서는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국회의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를 분석·정리하였으며,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서는 국가성평등지수와 연계하여 양성평등제고를 위해 보다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분석시리즈가 결산심사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예산정책처는 앞으로도 국회의 예·결산심사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7년 8월

국회예산정책처장 김 춘 순

차 례

CONTENTS

외교 통일 위원 회

[외교부]

I. 결산 개요 / 3

- 1. 현 황 3
-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6
-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7

II. 주요 현안 분석 / 8

- 1.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성과 검토 필요 8
- 2.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 사업의 지속가능성 검토 필요 11

III. 개별 사업 분석 / 17

- 1. 재외공관 근무 인력의 현지어 능력 제고 필요 17
- 2. 재외동포영사국 행사 용역비의 부적절한 집행 19
- 3. 동북아국 자산취득비의 초과 집행 22
- 4. 한국국제협력단 자체수입의 연례적 과소계상 시정 필요 24
- 5. 해외봉사단(WFK) 자문단 생활비 및 활동비 지급액 적정성 검토 27
- 6. 전략사업비 사업의 문제점 30
- 7. 국제개발협력센터 운영의 적정성 검토 35
- 8. 재외동포재단 사업 간 통폐합 필요 40



[통일부]

I. 결산 개요 / 45

1. 현 황	45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49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50

II. 주요 현안 분석 / 51

1. 개성공단 피해지원 관련 경험·교역 보험제도 검토 필요	51
2. 북한인권재단 설립 준비 시 관련 법령 준수 미흡	56
2-1. 예비비 신청 및 배정의 문제점	57
2-2. 북한인권재단 설립 준비과정 상 집행의 문제점	58
3. 통일정책추진 사업의 개선 필요	60
3-1. 통일법제 관련 학술회의 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	61
3-2. 적합한 비목으로 연구용역 수행 필요	63
3-3. 성과가 저조한 DB시스템 구축	66

III. 개별 사업 분석 / 68

1.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내실화 필요	68
2.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 방향의 재검토 필요	72
3.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부진 및 예산 집행 부적절	76
4. 6.25전쟁 납북 진상규명 사업의 보조사업 관리 부실 등	79
5.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의 기존 교육과정과의 유사·중복	82
6. 통일미래기획과정 성과관리 내실화 필요	84



CONTENTS

7.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지연	87
8. 기존 통일연구원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 수립 지연에 따른 예산 집행 부진	89
9. 남북하나재단 기부금 모집 근거 규정 정비 필요	9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I. 결산 개요 / 95

1. 현 황	95
2.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97

II. 개별 사업 분석 / 98

1. 해외지역회의 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98
2.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사무실의 사용허가 후 운영 필요	101
3. 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중 지역회의 보조금 집행 부적절	104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관지 발행의 효율성 제고 필요	107



국방위원회

[국방부]

I. 결산 개요 / 115

- 1. 현 황 115
-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관련 국회 논의사항 119
-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20

II. 주요 현안 분석 / 121

- 1. 장비획득 및 유지사업 개선과제 121
 - 1-1. 업체의 능력부족, 납품 장비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장비보급 지연 문제 122
 - 1-2. 내구연한 초과 중형표준차량 교체 위한 조속한 연구개발 필요 125
- 2. 군 급식 관련 개선과제 128
 - 2-1. 내부 방침에 따른 기초훈련병 증식비 조정 부적정 129
 - 2-2. 민간조리원 운영 내실화 노력 필요 131
- 3. 군 책임운영기관의 부적정한 예산 집행 문제 133

III. 개별 사업 분석 / 136

- 1. 미조달된 방탄복 등의 조속한 확보 필요 136
- 2. 사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험연구비 집행 138
- 3. 소각시설 추가확보를 위한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 필요 140
- 4. 구매요구서 수정 지연에 따른 구형 화생방특수보호의 구매 142



CONTENTS

5. 재정사업자율평가에 따라 감액편성된 예산의 증액 집행 부적정	145
6. 국방사이버안보대응체계구축 사업 예산 이월 과다	147
7. 국제화여비를 활용한 업무수행관련 여비 집행 부적정	150
8.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의 연례적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52
9. 마트 관리관 및 판매원 점장에 대한 포상금 지급 부적정	154
10. 국방전직교육원의 집행잔액을 활용한 신규사업 수행 부적정	156
11. 무등산 방공포대의 조속한 이전후보지 선정 협의 필요	158
12. 지자체 예산 교부 시 연내 집행가능성에 대한 검토 필요	160
13.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사업의 예산 조정 부적정	162
14. 집행지침을 위반한 정보화사업 낙찰차액 집행 부적정	164
15. 군인연금 보전금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66

[병무청]

I. 결산 개요 / 171

1. 현 황	171
2. 2016년도 예산 관련 국회 논의사항	173
3. 2016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74

II. 주요 현안 분석 / 175

1. 보충역 대상자 증가에 따른 소집 적체 해소대책 마련 필요	175
--	-----



Ⅲ. 개별 사업 분석 / 179

1. 해외 책임관의 원격실태조사 응답률 제고 필요 179
2. 사회복지무연수센터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 부진 182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및 국제교류기금으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81억 900만원(16.4%)이 증가한 3,415억 2,2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99억 8,200만원(17.1%)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236,908	241,372	241,372	285,340	43,968	48,432
기 금	54,632	52,041	52,041	56,182	4,141	1,550
합계(총수입)	291,540	293,413	293,413	341,522	48,109	49,982

자료: 외교부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371억 9,500만원(1.7%) 감소한 2조 1,336억 6,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022억 6,200만원(5.0%)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1,982,461	2,121,041	2,121,041	2,084,583	△36,458	102,122
기 금	48,940	49,667	49,817	49,080	△737	140
합계(총지출)	2,031,401	2,170,708	2,170,858	2,133,663	△37,195	102,262

자료: 외교부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413억 7,200만원이며, 2,853억 4,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41,372	241,372	241,372	285,340	285,340	0	0	118.2

자료: 외교부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1,717억 6,900만원이며, 이 중 96.8%인 2조 1,026억 4,700만원을 지출하고 77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14억 2,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139,303	2,139,303	2,171,769	2,102,647	7,700	61,422	96.8

자료: 외교부

다.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수정수입계획액은 1,096억 4,700만원이며, 1,109억 4,3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A)					
국제교류기금	109,647	109,647	110,943	110,943	0	0	101.2

자료: 외교부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수정지출계획액은 1,096억 4,700만원이며, 이 중 1,109억 4,3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3,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지출계획액		계획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A)					
국제교류기금	109,647	109,647	109,647	110,943	0	737	101.2

자료: 외교부

외교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전략사업비, ② 인도네시아(ODA), ③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등이 있다.

전략사업비는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하여 30억원이 감액(250억원 → 220억원)되었고, 인도네시아(ODA)사업은 인도네시아 대검찰청 성과관리 개혁 사업이 수원국 대검찰청이 추진중인 사업 내용과 중복되어 2015년에 취소됨에 따라 해당 예산이 32억 1,200만원 감액(141억 9,900만원 → 109억 8,700만원)되었다. 중남미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은 청년 중남미 진출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기존에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제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활용도가 낮기 때문에 관련 예산 1억 800만원이 감액(42억 9,600만원 → 41억 8,800만원) 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ASEAN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② 재외국민 보호, ③ 공공외교 역량강화 등이 있다.

ASEAN 및 남아태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는 당초 아세안문화원 건립을 위해 100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건립 예산에 대한 증액 필요가 있어 총사업비를 198억원으로 증액하는 과정에서 2016년도 예산이 23억원 증액(37억 800만원 → 60억 800만원)되었다. 재외국민 보호 사업의 경우 해외에서의 사건·사고 발생 증가에 따라 사건·사고 담당 영사 보조인력 확충을 위해 12억원이 증액(88억 8,400만원 → 100억 8,400만원)되었다. 공공외교 역량강화 사업은 평창 스페셜 뮤직&아트 페스티벌, 재한 유학생 체험 및 문화 프로그램, K-pop 페스티벌 지원 등 공공외교 행사 강화를 위해 5억원이 증액(136억 6,000만원 → 141억 6,000만원)되었다.

외교부는 ① 한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② 범국가적 테러, 대형 재난 발생에 대비한 재외국민보호 및 재외공관 안전 강화, ③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정착과 통일기반 조성을 위한 북미·동북아 등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④ 공공외교 강화 등을 2016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3대 외교 정책 중 2013년에 사업 구상이 시작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의 경우 사업의 성과에 대해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기존 외교활동과의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고,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은 집행이 연례적으로 부진한 등의 문제가 있었다.

둘째, 예산 집행 과정에서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있었다. 예를 들어, 재외동포영사국은 제3회 세계영사고위급회의를 개최하며 부적절한 비목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였다.

셋째, 한국국제협력단은 수지차보전기관이나 자체수입을 연례적으로 과소계상하였고,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ODA 사업인 월드프렌즈KOICA자문단에 대해 일반 봉사단에 비해 생활비 및 활동비 지급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전략사업비의 경우 연례적 집행 부진 및 관련 지침 제정 지연 등의 문제가 있었다.

1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성과 검토 필요

가. 현 황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란 2013.5.8. 대통령의 미국의회 연설에서 공식 제안된 개념으로, 동북아 지역의 대립과 갈등의 역내 구도를 대화와 협력의 질서로 전환하고자 하는 정부의 미래지향적 노력¹⁾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동북아 역내 국가(한·중·일·미·러·몽 등) 간 연성안보 분야²⁾에서의 대화와 협력을 통한 신뢰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은 외교부의 정책총괄담당관실과 다른 실·국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정책총괄담당관실은 일반회계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³⁾에서 협력의 큰 틀 구축·각 국 정부의 인식 제고 및 참여 독려 활동·외교부 개별 실·국의 관련 사업 총괄 등을 수행한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17억 6,000만원이며, 이 중 15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다. 다른 실·국들은 해당 실·국의 업무와 관계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이행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1,760	1,760	0	0	0	1,760	1,590	0	170

자료: 외교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홈페이지(<http://napci.net/kor/introduce/concept.php>) ‘개념 및 목표’

2) 연성안보란 전통적 안보인 군사분야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에서는 원자력안보/에너지안보/기후변화 및 환경/재난관리/사이버스페이스/마약/보건 등 7개 분야를 의제로 선정하고 있다.

3) 예산코드: 일반회계 1134-402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외교부가 수행해 왔던 기존의 외교활동과 차이점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에 따르면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특징은 동북아 지역의 다자협력기구 부재를 보완하기 위해 다자협력의 질서를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외교부가 제출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사업의 의제별 협력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양자 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2016년도에 실시한 사업 중 최초 시행연도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라는 아젠다가 등장하였던 2013년 이전인 경우도 다수여서,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이 기존에 외교부가 수행하던 외교활동들과 명확히 구별된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2016년도 의제별 협력사업 수행 현황]

의제	협력사업 내용	최초 시행연도	양자/다자	소관
원자력 안전	○ 한·일 차관보급 양자회의(1.12, 동경)	2015	양자	국제 에너지 안보과
	○ 한·일 과장급 양자협의(3.11, 동경)	2015	양자	
	○ 한·중 과장급 양자협의(5.27, 북경)	2015	양자	
	○ 한·일·중 동북아원자력안전 제2차 과장급 실무회의(6.22, 서울)	2015	다자	
	○ 정부합동대표단 일본 관계기관 방문, 협의(10.18-19, 동경)	2016	양자	
	○ 동북아 원자력안전 TRM CG(Coordination Group) 회의(7.28, 푸저우)	2013	양자	
	○ 동북아 원자력안전 신뢰 제고 포럼(10.25, 서울)	2016	다자	
	○ 한·일·중 원자력안전 연구 전문가 워크숍(11.1-2, 서울)	2016	다자	
	○ 제9차 TRM(Top Regulator's Meeting)	2008	다자	
	○ 제4차 TRM+(11.29-30, 북경)	2013	다자	
환경	○ 제20차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고위급회의 개최(2.1-2, 서울)	1993	다자	기후 변화 외교과
	○ 제18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4.26-27)	1999	다자	
	○ 제1차 한·중 기후변화 공동위 및 배출권거래제 라운드테이블(6.22-23, 부산)	2016	양자	
	○ 제18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7.6-7, 홍천)	1994	양자	
	○ 제21차 한·중 환경협력 공동위(11.23, 서울)	1995	양자	
	○ 제21차 북서태평양보전 실천계획(NOWPAP) 정부간회의(11.23-25, 서울)	1994	다자	
	○ 제2차 월경성 대기오염 라운드테이블(12.9, 서울)	2014	다자	

의제	협력사업 내용	최초 시행연도	양자/다자	소관
마약	○ 제26차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ADLOMICO)(9.22-23, 서울)	1989	다자	인권 사회과
	○ 제40차 아태지역 마약법집행기관장회의 (HONLEA)(10.24-25, 스리랑카)	1988	다자	
재난 관리	○ 동북아 재난관리 협력회의(6.21, 서울)	2016	다자	다자협력 인도 지원과
	○ 한일중 재난대응 도상훈련(TTX)(6.22, 서울) (미·리·몽 참관)	2013	다자	
보건	○ 제9차 한·중·일 보건장관회의(12.3-4, 서울)	2016	다자	인권 사회과
	○ 제10차 한·중·일 감염병 예방관리 포럼(12.19, 중국)	2016	다자	
에너지 안보	○ 제3차 한·미 국장급 에너지대화(5.10, 워싱턴 D.C)	2014	양자	국제 에너지 안보과
	○ 제4차 한·일 과장급 에너지대화(5.19, 동경)	2012	양자	
	○ 제4차 동북아 에너지안보 포럼(12.15, 서울)	2012	다자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외교부는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양자협의로도 사업 방향 재설정·참여국 확대 등을 통해 동북아 지역 다자협력 증진의 기반으로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다자협력 참여국 간 이견이 있는 분야에서는 양자 차원에서의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기존의 양자 협의들도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5년 동안의 활동에 대해 엄밀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동북아 지역의 다자외교가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외교부는 2015년부터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 사업¹⁾을 수행하고 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란 단절되고 파편화된 유라시아 국가들을 연결하여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유라시아 대륙 내 평화달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2013.10월 유라시아 컨퍼런스에 서 대통령이 제안하였다.

동 사업은 ①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사업, ②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준비, ③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 등 세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	2,200	134	0	0	2,334	1,271	100	963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협력 확대	700	64	3	0	767	297	58	412
한·중앙아 협력 사무국 준비	1,000	70	△20	0	1,050	645	42	363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	500	0	17	0	517	329	0	188

자료: 외교부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은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는 사업이다. 나진-하산 물류사업은 시베리아에서 채굴한 석탄을 철도를 이용하여 북한의 나진항까지 운송한 후, 중국 선박으로 한국까지 이동하는 사업이다. 실질적인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기업들의 직접 투자로 마련하며, 외교부는 사업을 위한 국가간 조율·관계부처 회의·전문가 자문 등에 동 사업비를 집행한다. 2016년에는 7억 6,700만원 중 2억 9,700만원이 집행되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433-403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준비는 2007년부터 시작된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후속조치인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운영을 준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 예산현액 10억 5,000만원 중 6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은 유라시아이니셔티브와 관련된 각종 협력 행사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6년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2016년 예산현액 5억 1,700만원 중 3억 2,900만원이 집행되었다.

나. 분석의견

첫째,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경우 사업이 예상대로 진행되지 못하여 집행이 부진하다.

동 내역사업의 경우 2015년과 2016년의 집행률이 예산액 대비 각각 26.3%와 42.4%에 불과하다.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협력 확대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5							2016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700	0	△373	327	184	64	79	700	64	3	767	297	58	412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외교부에 따르면 2015년에는 한-러 사업자간 협상, 북한지역 홍수로 인한 나선 지역 철도 유실 등에 따라 예산 집행이 저조하였고, 2016년의 경우 남북러 3각 협력사업의 전제 조건인 원활한 대북관계에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사업을 전혀 추진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남북러 3각협력 사업 계획 대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상 계획			집행 실적	
내역		금액	내용	금액
남북러 3각 협력을 통한 초국경 협력 전략 구축	남북러 3각협력의 활성화 및 초국경 협력을 위한 국제세미나	200	-	-
	남북러 3각협력을 위한 자유무역지대 조성의 타당성 연구용역	150	- 러-일 경험 동향과 한-러 경제 협력에의 시사점 연구용역 ('16.12.27.-'17.3.27.) - 동아시아-유럽 교역물량의 중국 철도 활용도 제고방안 연구용역 ('15.7.-'16.2., 이월예산)	51
	한반도중단철도(TKR)-시베리아횡단철도(TSR)-중국횡단철도(ICR) 연계 및 산업협력 중심의 남북러/남북중 다자협력 방안 연구용역	50	- 한-중간 복합물류네트워크 실용화 연구용역('15.9.17.-'16.2.29., 이월예산)	31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사업	남북러 3각협력을 위한 대러/대중 실무협의 및 아웃리치	105	-	-
	남북러 3각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 운영	45	-	-
	남북러 3각협력팀 운영	110	- 일반수용비(복사기 렌탈료, 생수 구입비, 사무실 칸막이 설치 등)	9
	남북러 3각협력 관련 자료집 제작	40	-	-
유라시아이니셔티브추진 사업 (유라시아-북극항로 연계성 행사 사업 포함)		-	- 유라시아이니셔티브 추진방안 협의 50회 - 유라시아-북극항로 연계성 행사 (6.13.-18.)	206
소 계		700		297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대체 행사인 ‘유라시아 북극항로 연계성 행사’를 추진하였으나 성과 미흡·규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외교부는 동 사업에서 ‘유라시아 북극항로 연계성 행사’를 2016.6.13.~18. 동안 러시아 일대에서 개최하며 1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사업 내용 중 문화 행사 및 현장 시찰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어려운 프로그램의 비중이 높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불요불급한 신규 행사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²⁾

2) 이에 대해 외교부는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포함하여 검토 중이던 3각협력 사업들이 모두 중단되어 유라

[유라시아-북극항로 연계성 행사 주요 프로그램]

일시	프로그램	비고
6. 14.(화)	한-러대화 정경 컨퍼런스	본부 측 참여자: 북극대사, 1등 서기관 등 8명 장소: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무르만스크
	이범진 공사 순국비 참배	
	러시아 남북극연구소 부소장 면담	
	문화시찰(여름궁전 등)	
	상트페테르부르크 문화공연	
6. 15.(수)	원자력 쇄빙선 레닌호 시찰	
	알로샤 동상 방문	
	류카빈 무르만스크 부주지사 면담	
	무르만스크 한국영화제	
6. 16.(목)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무르만스크 항만시찰	
	무르만스크 문화공연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더욱이 동 행사의 추진 과정에서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북극항로 국제세미나 (6.16.)’ 운영을 위탁하고 5,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위탁사업비에서 동 세미나의 사회자인 외교부 소속기관 공무원에게 사례비로 3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공무원이 자기 소관 사무가 아닐지라도 소속된 중앙관서(본부 및 소속기관 전체를 포괄)의 사무와 관련해 업무에 조력하는 경우 사례금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³⁾ 따라서 이와 같은 위탁사업비 집행은 규정에 어긋난 것이라 할 수 있다.⁴⁾

시아 구상 실현을 위한 방향의 일환으로 동 행사를 추진하였고, 동 행사를 계기로 외교부 북극대표와 러시아 남북극연구소 부소장이 만나 장기간 계류되었던 「한국극지연구소-러시아 남북극연구소 협력 MOU」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3)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6. 1., p.142.

4)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394.에 ‘위탁사업의 경우 담당공무원에 대한 업무조력 사례금 지급이 타당하지 않음’으로 되어 있어 담당공무원이 아닌 소속 공무원에게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하나, 이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해석으로 보인다.

셋째,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준비 사업은 협력사무국 출범 지연에 따라 예산집행이 부진하였다.

동 내역사업은 예산현액 10억 5,000만원 중 6억 4,500만원이 집행되었다. 동 사업의 경우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운영과 관련하여 사무국 운영비용과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리에 2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집행액은 4,700만원에 불과하다.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준비 사업 계획 대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예산상 계획			집행 실적	
내역		금액	내용	금액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중점 협력사업 시행, 한-중앙 아 협력사무국 안정적 기반 구축	중앙아 5개국 산업현대화 및 다변화 정책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회의	250	- 중앙아 산업 현대화 및 다변화 지원회의	250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설립 관련 대상국 아웃리치	170	-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관련 해외 출장 2건	24
	한-중앙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	200	- 한-중앙아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사업('16.12)	194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안정화 전략 연구 용역(2건)	80	- 한-중앙아 차세대 네트워크 사업	75
			- 한-중앙아 협력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 운영방안 수립 연구용역('16.3.9-5.11)	
	중앙아 5개국 주한외교단 등 주요 인사 실무협의 정례 개최	20	-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관련 법률자문계약('15.7.1.-'16.2.29, 이월예산)	5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운영	홍보사업 시행 및 중기 협력사업 발굴	50	- 한-중앙아 협력포럼의 성과와 비전('15.7.9-'16.2.9, 이월예산)	
	사무국 운영비용	100	- 중앙아 외교단 협의 8건	47
소 계	사무국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 관리	130	- 관련 부처 협의 25건	
			- 중앙아 관련 국내 출장 3건	5
		1,000	- 기자단 대상 홍보 6건	50
			-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출범 선포식 및 제1차 국별 대표자 협의회	
			-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출범 관련 제1차 국별 대표자 협의회	47
			-	-
				645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한-중앙아 협력사무국 운영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당초 외교부는 2016.11.15. 제10차 한·중앙아 협력포럼 개최 시점에 사무국을 출범할 계획이었으나, 중앙아 국가들의 국내절차 미비 등으로 중앙아 5개국과의 협의가 지연되고 사무국 운영 방식이 결정되지 않아 2017년부터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조직으로 출범하게 되었다.⁵⁾

넷째,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은 사업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2016년에 동 내역사업에서 ‘유라시아 기차 페리 환황해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하였으며, 2017년에는 ‘환동해/환황해 연계성 행사’ 목적으로 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복합협력사업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년도	사업명	세부 내용	예산액
2016	유라시아 기차 페리 환황해 국제회의 개최	중국과 러시아 지역을 선박·열차페리·고속철도 등으로 이동하며 각종 행사 개최	120
2017	환동해/환황해 연계성 행사		483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유라시아 기차 페리 환황해 국제회의’나, ‘환동해/환황해 연계성 행사’는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행사성 사업이다. 따라서 동 사업이 유라시아 지역과의 교류 증진에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5) 이에 따라 2017년도부터는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재외공관 근무 인력의 현지어 능력 제고 필요

가. 현 황

외교부는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외교부령)」에 따라 외교부 소속 공무원 및 외교부가 보수를 지급하는 주재관에게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산금은 일정 등급 이상의 제2외국어¹⁾ 검정등급을 받은 자가 해당 제2외국어를 현지어로 사용하는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동안 지급되는 수당이다.

예를 들어, 영어는 제2외국어가 아니므로 일정 등급 이상의 영어 자격을 가진 외무공무원이 주미국대사관에 근무할 경우 가산금을 수령할 수 없으며,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서 지정하는 제2외국어가 아닌 일본어 자격을 가진 외무공무원이 주일대사관에 근무할 경우에도 가산금 수령이 불가하다. 한편 일정 등급 이상의 독일어 자격을 가진 외무공무원이 주독일대사관에 근무할 경우 근무기간동안 가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가산금은 자격등급 및 언어 종류에 따라 월 200불에서 900불까지 지급되며,²⁾ 2016년도에는 100명에게 37만 6,700불이 지급되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서는 총 54개 언어를 가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언어로 지정하고 있다.

2)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 별표 1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표]

(단위: 미불)

	1급	2급	3급
제1종 제2외국어 (프랑스어·독일어)	300	250	200
제2종 제2외국어 (동 규정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통용어 중 제1종 제2외국어를 제외한 언어)	900	600	450

나. 분석의견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수령인이 있는 재외공관 수가 적으며, 지역별 격차도 크다.

2016년도 말 기준으로 전체 재외공관 수는 총 163개이고, 이 중 「재외근무수당 가산금 지급규칙」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2외국어를 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에 위치한 공관 수는 121개이다.

그런데 121개의 재외공관 중 지난 해에 가산금을 수령한 100명이 근무하는 재외공관은 51개에 불과하다. 이는 나머지 70개의 공관에는 해당 지역의 언어에 능통한 외무공무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51개의 공관이 특정 지역에 편중된 문제가 있다. 아메리카주의 경우 가산금 수령이 가능한 공관 대비 가산금 수령인이 있는 공관의 수 비중이 81.0%에 달하나, 중동·아프리카·아시아주는 그 비중이 10~30%로 낮다.

[재외근무수당 가산금의 국가별 지급 현황]

(단위: 개, %)

	아메리카주	유럽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주	계
가산금 수령인이 있는 공관 수(A)	17	23	5	3	3	51
가산금 수령이 가능한 공관(B)	21	46	19	13	22	121
A/B	81.0	50.0	26.3	23.1	13.6	42.1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아메리카주와 유럽주의 국가들은 스페인어·불어·러시아어 등이 통용어인데, 이를 구사할 수 있는 외무공무원이 비교적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교부는 중동·아프리카·아시아 등 타 지역에서도 외교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어 교육 등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외교부는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 행사를 2016.10.25.~27. 3일 동안 인천 송도의 오크우드프리미어인천에서 개최하였다.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란 국제 영사분야의 신규 의제를 논의하고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2013년 출범한 고위급 다자회의체인 세계영사포럼이 18개월마다 개최하는 국제행사이다.

외교부는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의 사전 준비·참가자 관리·참가비의 수령 및 관리·회의 전후 각종 기획 및 예산 집행·회의현장 인력지원 등을 위해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¹⁾에서 A업체와 2,000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추가적으로 재외동포영사국 기본경비²⁾에서 해당 업체에 4,300만원을 집행하였다.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의 관련 A업체에 대한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일시	건명	세목	지출액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2016-10-18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 PCO 용역 선금 지급	업무용역비 (260-01)	10
	2016-12-30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 PCO 용역 준공금 지급	업무용역비 (260-01)	10
재외동포 영사국 기본경비	2016-10-18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 참가비 지급	일반수용비 (210-01)	3
	2016-12-23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 관련 소요 경비 지급	일반수용비 (210-01)	20
	2016-12-23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 관련 임차료 지급	임차료 (210-07)	2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831-651

2) 예산코드: 일반회계 7011-265

나. 분석의견

첫째, 서로 다른 두 개의 세부사업에서 동일 행사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사업 규모의 파악 및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외교부는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를 개최하며 관련 비용을 두 개의 상이한 세부사업에서 집행하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6년도 예산안 편성 시점에는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의 개최지가 결정되지 않아 소요 예산을 전액 편성하지 못해 사업 도중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두개의 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동일한 행사의 개최에 소요되는 예산을 두 개의 세부사업에서 집행할 경우 사업 관리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이 저해되며, 예산 집행의 성과를 판단하기도 어려워진다. 또한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과 재외동포 영사국 기본경비는 다른 프로그램에 속한 사업인데,³⁾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나의 행사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으로 예산을 관리하고자 프로그램 예산제도를 도입한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둘째, 동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 적합하지 않은 비목에서 예산을 집행하였다.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행사 등 정부업무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은 위탁사업비(210-15목)로 집행해야 한다. 따라서 외교부가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 행사 개최 전반을 A업체라는 PCO⁴⁾ 업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사업비로 집행함이 타당하다.

그러나 외교부는 제3차 세계영사고위급회의(GCF)를 개최할 때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 사업에서는 업무용역비(260-01목)를, 재외동포영사국 기본경비에서는 일반수용비(210-01목)와 임차료(210-16목)를 PCO 업체에 지급하였다.⁵⁾

비록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용·조정 등의 절차를 통해 적절한 비목에서 집행하는 등 예산 규범을 준수해야 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동 행사

3)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지원은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 프로그램에, 재외동포 영사국 기본경비는 ‘외교행정 지원’ 프로그램에 속해 있다.

4) Professional Conference(Convention) Organizer의 약자로, 국제회의 전문용역업체를 의미한다.

5) ㈜유니원커뮤니케이션즈는 일반수용비를 디자인 개발비·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 등 제작에 집행하였고, 임차료는 회의운영을 위한 전산기기와 차량 임차에 집행하였다.

에 소요된 모든 경비가 부적절한 비목에서 집행된 바, 외교부는 향후 행사 개최 등에서 비목의 용도 등 관련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위탁계약 시에는 소요 예산을 명확하게 산정하여 계약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A업체와 2016.6.15.에 2,000만원 규모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때 계약금이 2,000만원 이하였기 때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⁶⁾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동 행사 개최를 위해 결과적으로 외교부가 A업체에 지불한 금액은 6,000만원 이상으로, 당초 행사의 위탁 규모를 명확히 추정하였다면 동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에는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다 명확히 산정하여 적합한 방식으로 위탁사업을 진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현 황

동북아국 기본경비¹⁾는 동북아국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016년도 예산현액 4억 6,600만원 중 4억 2,100만원이 집행되었다. 이 중 자산취득비 본예산은 2,300만원이었으나 2016.11.24. 의전장실 기본경비²⁾로부터 4,000만원 내역변경을 승인받아 총 6,200만원을 집행하였다.

[동북아국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산취득비	23	23	0	40	0	63	62	0	1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동북아국 자산취득비 집행률은 당초 예산액 대비 269%으로 과다하게 집행된 측면이 있으며, 자산취득비 예산현액의 65%를 12월에 집행하였다.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자산취득비 집행이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³⁾ 그러나 동북아국은 지난해 11월 말 다른 실의 자산취득비 4,000만원을 내역변경받아, 예산현액 6,300만원 중 4,164만원을 12월 중 집행하여 파티션, 커피메이커, 책장 등을 구입하였다.

외교부는 동북아국 파티션 교체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당초 예산 편성시 반영되지 않고, 파티션이 최소 7~8년 이상 사용되어 교체가 시급한 상황에서 타 실·국의 자산취득비 불용이 예상되어 이를 활용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7011-257

2) 예산코드: 일반회계 7011-253

3)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6. 1., p.205.

그러나 갑작스러운 증원 등 긴급하게 집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산취득비를 예산액에 비해 과도하게 초과 집행하는 것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예산 편성 단계에서 적절한 규모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동북아국의 2016.12월 자산취득비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개)

구입 일자	계약 유형	과(팀)	품목	단가	수량	금액
12.5	수의	동북아역사심의관실	컴퓨터 책상	539	1	539
	수의	동북아3과	컴퓨터 책상	539	3	1,617
	수의	동북아3과	레이저 프린터	297	1	297
12.15.	수의	동북아1과	팩스기기	267	1	267
	수의	동북아1과	액정 모니터	231	1	231
	수의	동북아1과	노트북	1,430	1	1,430
	수의	동북아1과	회의용 의자	165	14	2,310
	경쟁	동북아1과	파티션	10,369	1	10,369
12.19.	수의	동북아3과	커피메이커	880	1	880
	수의	동북아3과	책장	330	3	990
	수의	동북아3과	책장	542	2	484
	수의	동북아3과	책장	165	1	165
12.21.	수의	동북아2과	의자	352	3	1,056
	수의	동북아협력팀	커피메이커	270	1	270
	경쟁	동북아2과	파티션	9,986	1	9,986
12.22.	수의	동북아3과	프린터	495	1	495
12.26.	수의	동북아역사심의관실	보조책상	209	1	209
12.27.	수의	동북아2과	모니터	275	1	275
	수의	동북아국장실	커피머신	385	1	385
	수의	동북아3과	레이저 프린터	1,100	1	1,100
	경쟁	동북아3과	파티션	8,287	1	8,287

자료: 외교부

가. 현 황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매년 기관의 지출예산 총액에서 기관 운영으로 발생하는 자체수입 예산을 차감한 나머지 부분을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수지차(收支差) 보전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집행한다.

2016년 한국국제협력단의 자체수입 예산액은 218억 8,000만원이고, 사업비를 포함한 지출예산 총액은 6,288억 6,100만원으로 계획됨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에 대한 정부 출연금은 지출과 수입의 차액에 해당하는 6,069억 8,100만원이 편성되었다. 그러나, 2016년 한국국제협력단 결산서에 따르면 실제 자체수입액은 359억 4,200만원으로 예산 218억 8,000만원 대비 64.3%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국제협력단 2016년 수입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예산액	수입예산현액	수입액		수납률	전년대비 증감률
			2016	2015		
합 계	628,861	661,843	673,938	687,425	101.8	△2.0
정부출연금	606,981	601,278	601,278	619,359	100.0	△2.9
자체수입	21,880	23,848	35,942	28,458	150.7	26.3
이자수입	4,069	4,069	2,375	3,368	58.4	△29.5
이월 결산잉여금	11,582	13,550	16,019	13,580	118.2	18.0
갑수익	6,229	6,229	17,458	11,509	280.3	51.7
이월사업비	0	36,718	36,718	39,608	100.0	△7.3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나. 분석의견

첫째, 한국국제협력단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례적으로 자체수입을 과소계상하고 있다. 수지차 보전기관의 경우 자체수입을 과소계상하면 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산이 실제 필요액보다 과다하게 편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최근 실제 자체수입액의 추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결산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수입 결산액은 예산액보다 최소 164%~최대 224% 더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예산 편성 시 과년도 실제 자체수입 수준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년도 예산만 기준으로 삼아 일부 변동사항만 반영하여 편성함으로써 매년 자체수입이 과소계상된 것이다.

한국국제협력단은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 방침에 따라 잡수입을 과거 5년간 결산 평균금액으로 자체수입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자체수입 계상 방식을 개선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으로 인한 수입의 실제 발생 규모와 증가 추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시정이 필요하다.

[한국국제협력단 최근 5년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 자체수입	12,148	27,238	13,842	26,466	14,614	29,375	14,614	28,457	21,880	35,942
- 이자수입	5,805	7,060	6,300	5,728	7,072	4,844	6,648	3,368	4,069	2,375
- 잡수익	0	4,293	0	8,239	0	7,656	0	11,509	6,229	17,548
· 사업비 정산잔액 반납	0	4,040	0	6,620	0	6,803	0	10,657	-	15,878
· 수입위약배상금	0	89	0	1,400	0	436	0	569	-	1,437
· 기 타	0	163	0	218	0	417	0	283	-	233
- 이월 결산 잉여금	6,343	15,885	7,542	12,499	7,542	16,875	7,966	13,580	11,582	16,019
○ 이월사업비	0	39,886	0	34,194	0	35,347	0	39,608	0	36,718
○ 출연금	485,329	485,329	527,427	513,512	591,882	565,347	632,990	619,359	606,981	601,278
수입 합계	497,477	552,453	541,269	574,172	606,496	630,069	647,604	687,424	628,861	673,938
○ 인건비	16,837	16,830	20,019	20,019	21,338	21,338	22,535	22,535	24,276	24,276
○ 경상비	722	726	736	736	885	884	985	984	985	984
○ 사업비	479,918	485,217	520,514	498,748	584,273	552,020	624,084	608,876	603,600	613,713
○ 이월사업비	-	34,194	-	35,347	-	39,608	-	36,718	-	17,204
지출 합계	497,477	536,967	541,269	554,850	606,496	613,850	647,604	669,113	628,861	656,177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둘째, 자체수입이 과소계상됨에 따라 결산잉여금이 매년 150억원 이상의 규모로 발생하고 있는데, 한국국제협력단은 결산잉여금 중 일부를 관례적으로 사업 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바, 시정이 필요하다.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출연기관의 경우 결산잉여금이 발생하면 부족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70% 이상 적립하고, 인센티브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하도록 규정¹⁾하고 있으므로, 결산잉여금은 결국 다음연도의 정부 출연금 감소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한국국제협력단의 사례와 같이 매년 결산잉여금이 과다하게 나타나는 예·결산의 불일치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배분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결산잉여금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해외개발원조(ODA) 사업비 잔액이 인건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충당금과 인센티브성과급 재원 등으로 사용되는 것은 관련 지침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나 국회의 예산확정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의 경우 결산잉여금 중 일부를 관례적으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르헨티나·칠레농장의 관리비 및 출장비, 잡손실 처리비용 등 사업 외 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고유사업의 내역에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 최근 5년간 결산잉여금 처분내역]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퇴직급여충당금	1,633	1,359	1,443	1,514	1,968
법정보험료 부족분	488	584	722	297	-
외교부경평성과급	453	-	-	-	-
해외수당환차손보전	41	-	-	-	-
사업외 비용*	367	498	468	477	753
법인세	5	6	6	4	-
차기(차차기) 이월금	12,499	16,875	13,580	16,019	15,040
합 계	15,486	19,322	16,219	18,310	17,761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1)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결산잉여금을 당해연도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무부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기관(15.12.31 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최소한 70% 이상을 적립

(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이 결산잉여금의 70% 이하인 기관은 부족분만 적립)

2)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 명시된 인센티브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

가. 현 황

한국국제협력단 사업 중 해외봉사단(World Friends Korea, WFK) 사업¹⁾은 한국정부에서 파견하는 해외봉사단의 예산을 관리하는 사업이다.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던 봉사단이 2009년도에 ‘WFK’라는 브랜드로 통합됨에 따라 동 사업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 자체 봉사단인 일반봉사단, 드림봉사단, 월드프렌즈KOICA 자문단 등 9개 봉사단²⁾과 타 부처 봉사단인 과학기술지원단(미래창조과학부/한국연구재단), IT봉사단(미래창조과학부/한국정보화진흥원), 청년단기봉사단(교육부), NIPA자문단(미래창조과학부/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4개 봉사단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타 부처 봉사단 예산의 경우에는 한국국제협력단이 예산을 직접 집행하지 않고 해당 부처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2016년 WFK 사업 예산액은 1,195억 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700만원을 합한 1,195억 5,000만원의 예산현액 중 1,500만원을 불용하고 1,195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다.

[해외봉사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해외봉사단	119,503	47	0	0	119,550	119,535	0	15

자료: 외교부

이 중 월드프렌즈KOICA자문단(이하 ‘자문단’)은 퇴직(예정)자 등이 개도국에서 개발 경험 및 전문지식을 전수할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시작된 사업이다. 자문단은 6개월에서 1년 간 개도국 정부부처 및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정책자문 및 기술전수 등을 제공한다. 2016년에는 상반기 31명, 하반기 23명 등 총 54명이 파견되었으며, 186억원이 집행되었다. 일반봉사단과 자문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635-402

2) 일반봉사단, 드림봉사단, 새마을리더봉사단, 국제개발전문봉사단, 글로벌새마을청년전문봉사단, 청년중기봉사단, UNV봉사단, 월드프렌즈KOICA자문단, NGO봉사단

[일반봉사단과 자문단 비교]

구분	일반봉사단	자문단
선발분야	공공행정, 교육, 농림수산, 보건, 산업에너지, 환경 등	경제개발, 농업, 행정제도 등 개도국의 정책 노하우 및 지식전수가 필요한 분야
선발인원 (명)	연 500~550명	연 50~100명
지원자격	만 19세 이상자, 해당직종 경력/학력/자격증 중 1개 이상 보유	해당 직종 10년 이상 경력자 영어(수원국영어)로 강의, 자문 가능자
선발전형	3단계(서류/면접 및 적합도검사/신원조회)	4단계(서류/면접 및 적합도검사/신원조회/수원국동의)
역할	교육, 직업훈련, 실습 등 실무 봉사활동	정책자문, 지식전수, 의료활동 등 해당분야 전문지식 전수 활동
경비지급	현지생활비 월 450~550불 주거비 월 300~500불	현지생활비 월 4,000불(주거비 포함) 현지활동비 월 500불
파견기간	2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6개월 또는 1년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
기타	단신 부임 (단, 시니어는 배우자 동반 가능하나 제반 경비는 자부담)	배우자 동반 가능 (단, 경비는 자부담)

자료: KOICA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자문단도 봉사단의 하나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지생활비 등 지급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일반봉사단에게 매달 지급되는 지원금은 현지생활비와 주거비로, 현지생활비는 월 450~550불, 주거비는 월 300~500불 사이에서 지원된다. 그런데 자문단의 경우 주거비를 포함하여 현지생활비로 월 4,000불을 지급하고 있으며, 별도로 현지활동비를 월 500불씩 지급하고 있다. 자문단이 일반봉사단에 비해 월등히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 데에는 합리적인 사유가 명확히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국제협력단은 자문단의 경우 파견목적·파견분야·현지활동 등의 측

면에서 일반봉사단과는 사업의 성격이 상이하며, 파견기간이 단기이고 현지어 교육 등 별도의 현지적응훈련을 거치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현재 지급하는 금액이 적정하다는 의견이다. 또한 현 수준의 경비를 지원하지 않고서는 이러한 사업에 참여할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자문활동이 일반봉사단의 봉사활동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총 지급 규모에 약 4배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문단의 활동도 WFK 해외봉사단 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규 급여에 준하는 수준의 현지생활비를 받는 것이 자칫 봉사활동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문단 파견 국가는 페루, 캄보디아, 동티모르, 방글라데시 등 물가 수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으로,³⁾ 해당 국가의 경제 수준을 감안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3) 파견 대상 국가들은 「공무원 여비 지급규정」의 국가별 도시 등급 중 하위 등급인 다·라등급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가. 현 황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은 정상회담 및 고위급 차원의 약속 사업과 대규모 재난 발생 시 긴급구호지원을 추진하기 위해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그룹(ODA) 사업¹⁾ 내에 전략사업비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전략사업비란 일반 ODA 사업과 내용은 같으나 절차를 fast-track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예산 편성 및 사업 결정 방식에 차이가 있다. 구체적으로 일반 ODA 사업은 사업 발굴 및 사업선정 절차 후 개별 사업별로 예산을 신청하고 편성한다. 그러나 전략사업비는 예산 편성 시 전략사업비 목적으로 총액을 확정된 후, 당해 연도에 요건에 부합하는 사업이 있을 경우 수시배정 절차를 통해 예산을 배정받고 집행하게 된다.

2016년도 전략사업비 예산액은 220억원으로 이 중 162억 9,600만원이 배정되고 145억 2,900만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약 66%이다.

[최근 3년간 전략사업비 결산]

(단위: 백만원, %)

	2014				2015				2016			
	예산액 (A)	배정액	집행액 (B)	B/A	예산액 (A)	배정액	집행액 (B)	B/A	예산액 (A)	배정액	집행액 (B)	B/A
전략 사업비	30,000	16,200	15,219	50.7	25,000	17,161	11,356	45.4	22,000	16,296	14,529	66.0

자료: 외교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전략사업비는 ①프로젝트 사업²⁾, ②국제기구 사업, ③긴급구호 지원으로 나뉜다. 프로젝트 사업은 일반 ODA 사업과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고, 국제기구 사업은 국제기구에 예산을 지원하고 해당 국제기구가 ODA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긴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632-409

2) 프로젝트 사업이란 ODA 지원유형의 하나로, 개도국의 경제·사회개발지원을 위한 시설물 건축·물자 공여·전문가 파견·연수생 초청 등 주요 원조수단을 연계하여 종합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급구호 지원은 대규모 재난 발생에 따른 국제사회의 긴급요청 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나. 분석의견

첫째, 전략사업비를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그룹(ODA)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전략사업비는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그룹(ODA)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는 예산편성이 완료된 후 실소요 발생 시 수시배정을 통해 예산을 배정받는 전략사업비 특성 상 사업 내역을 미리 정할 수 없어, 1개 세부사업(아프리카 비중점 국가그룹)에 통합하여 편성한 것이다.

그러나 전략사업비가 아프리카 지역의 ODA 사업에만 집행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략사업비를 아프리카 비중점 국가그룹(ODA) 사업에 편성할 경우, ODA의 지역별 집행규모 산정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전략사업비 운용지침」의 신속한 제정이 필요하다.

전략사업비는 2014년부터 신규로 시작한 사업이지만 2016년까지 정식 지침이 부채한 채 운영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국제협력단은 2016.12월 「전략사업비 운용지침」의 초안을 작성하였고, 2017.6월 현재 「전략사업비 운용 세부지침」을 작성 중에 있다고 한다.

전략사업비로 집행하는 사업은 일반 ODA 사업과 절차가 상이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관련 지침을 별도로 규정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지침의 부재는 전략사업비의 자의적 운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세부지침을 조속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전략사업비로 집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사업 수가 매년 감소하고 있다.

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매년 실적이 감소하고 있다. 2014년에는 11건, 2015년에는 6건이 선정되었으나, 2016년의 경우 ‘코리아에이드’와 ‘키르기즈공화국 전자주민카드 도입사업’ 등 2건의 사업만이 선정되었다.

[전략사업비 중 프로젝트 사업의 연도별 지원 현황]

연도	사업명	비고
2014	라오스 경찰병원 역량강화사업('14-'17/800만불)	11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빈민가정 상수급수연결사업('14-'16/300만불)	
	우간다 엔테베국제공항 시스템 개선사업('14-'16/950만불)	
	키르기스스탄 선거역량배양사업('14-'16/500만불)	
	스리랑카 폐기물소각플랜트 건립사업('14-'16/560만불)	
	라오스 농촌공동체 개발사업('14-'20/1,455만불)	
	필리핀 비사야주립대 톨로사캄퍼스 재건사업('14-'16/400만불)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권해안종합개발 건설팅사업('14-'17/950만불)	
	우간다 종합석유화학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14-'16/150만불)	
	라오스 불발탄 제거사업('14-'16/300만불)	
2015	중국 황사/미세먼지 관측망 운영 및 대처기술 역량강화사업('14-'16/300만불)	6건
	필리핀 북구 일로일로 3개어항 태풍피해 복구사업('15-'17/800만불)	
	필리핀 동부사말 기안 펠리페 아브리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재건사업('15-'17/480만불)	
	베트남 호치민 메트로 5호선 2단계 타당성조사사업('15-'17/600만불)	
	베트남 교통분야 DEEP 사업('15-'17/500만불)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재시스템 구축사업('15-'18/800만불)	
2016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국제공항 여객터미널 현대화 타당성조사 사업('15-'17/400만불)	2건
	동아프리카 3국 Korea Aid('16/280만불)/유지 관리('16/159.5만불)	
	키르기스공화국 전자주민카드(e-NID) 도입 사업('16-'18/746만불)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전략사업비 사업으로 선정되더라도 집행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해당 연도에 집행액이 전혀 없는 경우도 있다. 전략사업비 사업의 경우 사업 첫해에만 전략사업비로 운영되고 두 번째 해 부터는 일반사업비로 집행되므로 사업 시작년도 집행액이 없을 경우 전략사업비로 진행하는 의의가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

2014년에는 우간다 종합석유화학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지원사업, 라오스 불발탄 제거사업, 중국 황사/미세먼지 관측망 운영 및 대처기술 역량강화사업 등 3건, 2015년에는 필리핀 북구 일로일로 3개어항 태풍피해 복구사업, 베트남 교통분야 DEEP 사업, 캄보디아 국가지급결재시스템 구축사업 등 3건이 전략사업비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해당 연도 집행액은 없었다.

넷째, 긴급구호지원의 경우 타 사업에서 집행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긴급구호지원은 동일한 목적으로 외교부 일반회계에 한국국제협력단 보조사업인 해외긴급구호지원 사업³⁾이 편성되어 있다.

2014년 ‘시리아 난민 지원’, ‘이라크 사태 관련 인도적 지원’, ‘UN 에볼라 대응 기금’, 2015년 ‘필리핀 태풍 피해 재건’, ‘시리아 난민 인도적 지원’ 등의 경우 해외긴급구호지원 사업에서도 동일한 목적으로 긴급구호지원이 수행되었다. 동일한 목적의 구호지원을 위해 두 사업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원조 규모 파악을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양 사업 간의 유사·중복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⁴⁾

[전략사업비와 해외긴급구호지원 동일 사업/재난 지원 현황]

(단위: 백만원)

	전략사업비			해외긴급구호지원		
	사업명	집행액	지원 방식	재난명	지원액	지원 방식
2014	시리아 난민 지원	1,098	국제 기구 지원	시리아 난민 지원	5,911	국제기구지원/양자현물
	이라크 사태 관련 인도적 지원	4,397	국제 기구 지원	이라크 내 이란 난민(MEK) 재정착 지원	101	국제기구지원
				이라크 북부사태 지원	1,268	국제기구지원
	UN 에볼라 대응기금	5,350	국제 기구 지원	에볼라 대응 지원	6,005	국제기구지원
				에볼라 대응 대한 민국해외긴급구호대 (KDRT) 파견	278	KDRT 파견

3) 예산코드: 일반회계 1638-402

4) 이에 대해 외교부는 그간 외교부 일반회계에 편성된 해외긴급구호지원 사업으로는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전략사업비로 인도적 지원을 제공한 바 있으나, 2017년의 경우 인도적 지원(ODA) 사업 예산이 전년 대비 대폭 증액(450억원→847.8억원)됨에 따라 가급적 전략사업비를 인도적 지원 목적으로는 추가 활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전략사업비			해외긴급구호지원		
	사업명	집행액	지원 방식	재난명	지원액	지원 방식
2015	필리핀 태풍피해 재건(동부사말 기안 펠리페 아브리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재건사업)	243	프로 젝트 사업	필리핀 태풍 피해 인도적 지원	1,101	국제기구지원/ 양자현금
	터키, 요르단, 레바논 내 시리아 난민 지원	5,150	국제 기구 지원/ 양자 지원	시리아 난민 지원	6,438	국제기구지원/ 양자현금
2016	터키 내 시리아 난민 지원	5,700	양자 지원	시리아 및 주변국 난민 인도적 지원	8,550	국제기구지원/ 양자현금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한국국제협력단은 2015년도 하반기에 6개 지방자치단체 및 해당 지자체 소재 국공립 대학교와 국제개발협력센터를 개설하는 MOU를 체결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6개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운영을 시작하였다. 국제개발협력센터는 비수도권지역의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참여 독려 및 교육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① 지역 기관·기업·일반인·학생 대상 ODA 교육, 설명회, 홍보, ② WFK 귀국 봉사단의 지역사무소 역할, ③ 지역 기업 및 기관의 ODA 사업 컨설팅 및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국제개발협력센터 추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국제개발협력센터	1,488	0	△251	0	1,237	1,237	0	0
- 사업관리비	12	0	0	0	12	12	0	0
- 거점지역별 대학 국제개발협력센터 지원	1,476	0	△251	0	1,225	1,225	0	0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2016년도에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관리비 및 지원예산은 협력사업지원(ODA) 사업¹⁾에 편성되었으며, 사업관리비와 거점지역별 대학 국제개발협력센터 지원 내역사업으로 구분되어 12억 3,700만원이 집행되었다.

국제개발협력센터는 MOU를 맺은 KOICA-지자체-국공립대학이 공동으로 운영하되, 세부 프로그램은 국공립대학 또는 지자체에서 주도하게 된다. 이 때 한국국제협력단은 제반 비용 지원 및 ODA 콘텐츠 제공 등의 역할을 한다. 지자체는 행정적 지원과 지역사회 참여기반 확대 역할을, 대학은 센터인력 고용, 사무공간 제공, 사업 운용 등의 역할을 한다.

2016년부터 운영을 시작한 곳은 경북대(대구시), 제주대(제주도), 전북대(전북도), 인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636-401

천대(인천시), 강원대(강원도), 한경대(경기도) 등 총 6곳이다. 각 2억 423만원 씩 총 12억 2,400만원 지원되었으며, 실집행액은 총 10억 7,766만원이다.

[국제개발협력센터 현황]

(단위: 백만원)

지 역		대 구	제 주	전 북	인 천	강 원	경 기
MOU	지자체	대구시	제주도	전북도	인천시	강원도	경기도
파트너	대학교	경북대	제주대	전북대	인천대	강원대	한경대
대학 센터장	성명	옥이호	홍승목	이옥현	장현식	이해균	이종선
	경력	KOICA 전 부장	KOICA 전 이사 (외교부 과건이사)	KOICA 전 부장	KOICA 전 이사	KOICA 전 이사	KOICA 전 이사
예산	배정액	204	204	204	204	204	204
	집행액	191	164	194	175	159	196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국제개발협력센터장에게 센터 별 평균 집행액의 48.5%에 달하는 8,712만원의 연봉이 지급되었다.

국제개발협력센터는 근무 인력으로 각 센터마다 센터장 1명²⁾과 직원 1명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인턴 제도인 영프로페셔널(YP) 인력 2~3명을 두고 있다. 센터장은 센터 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센터가 주최하는 교육 및 특강 등에서 강의하는 역할 등을 맡는다.

이 중 YP 인건비는 협력사업지원 내의 ‘ODA 수행기관 청년인턴 관리비/교육훈련/수당 및 출장경비’ 등에서 집행되었고, 센터장 및 직원 인건비는 협력사업지원 내의 ‘거점 지역별 국제개발협력센터 지원’에서 집행되었다.

그런데 2016년에 센터장의 연봉으로 1명당 8,712만원이 지급되어, 센터별 평균 예산 집행액인 1억 7,961만원의 48.5%에 달한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이에 대해 「KOICA 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경력에 따라 1급 또는 2급 전문가의 연봉을 지급할 계획이었고, 센터장 선발 결과 모두 1급 기준을 충족하여 1급 전문가에 해당하는 8,712만원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2) 센터장의 계약기간은 2년이며, 비전임교원의 직위를 갖는다.

「KOICA 전문가파견사업에 관한 기준」상 전문가 직접인건비 기준

(1일 지급액, 단위: 원)

구 분	1 급	2 급	3 급	4 급	5급
지 급 액	330,000	270,000	220,000	190,000	120,000

주: 1. 1개월 이상 파견자는 월 22일을 기준으로 지급

2. 2016년도 센터장 연봉은 1급 기준 1일 지급액X22(일)X12(월)을 계산하여 지급함

한국국제협력단은 2017년 7월 중으로 2018년도부터는 센터장에게 「KOICA 전문가 파견사업에 관한 기준」상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국제개발협력 센터사업 시행 세부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KOICA 전문가와 센터장은 역할이 상이하여 「KOICA 전문가파견사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ICA 전문가는 해외에 파견되어 파견분야의 ODA 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데, 센터장은 국내의 센터에서 센터 업무의 총괄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역할이 상이하다. 따라서 경력 조건이 유사³⁾하다는 사유로 센터장의 인건비 지급 시 「KOICA 전문가파견사업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둘째,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센터의 사업은 ① ODA 이해증진교육, ② 해외봉사단 관련 사업(모집설명회 등), ③ ODA 조달 및 민관협력사업 설명회, ④ ODA 홍보, ⑤ 지역 ODA 사업 평가

3)[2016년도 센터장 및 KOICA 전문가 자격기준 비교(1급 상당 기준)]

센터장 자격 기준	KOICA 전문가 자격 기준
○ 국제개발협력분야 경력 20년 이상 - 석사·박사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 동 분야 15년 이상 경력자 중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한 경우 - 3급 이상 공무원 3년 이상 경력 - 4년제 대학 정교수 3년 이상 경력 - 공공기관 임원 2년(또는 책임연구원 8년) 이상	○ 해당분야 경력 20년 이상(석사 및 박사학위 소지자는 각 2년, 5년을 경력으로 합산) 또는 아래의 경력 요건을 충족하는 자 ○ 3급 이상 공무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 ○ 4년제 대학 정교수로 3년 이상 경력자 ○ 공공기관 임원으로 2년 이상 경력자 또는 책임연구원 상당으로 8년 이상 경력자 ○ 민간 사장·등록기업 임원으로 3년 이상 경력자로 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인 자 ○ 기술사(건축사) 자격 취득 후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 특급기술자로 해당분야 10년 이상 경력자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및 모니터링, ⑥ 기타 포럼 및 행사 개최 등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들 사업의 경우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의 유사·중복 및 필요성 저조 등의 문제가 있다.

[국제개발협력센터와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의 유사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국제개발협력센터 사업	외교부 및 한국국제협력단 유사 사업		
	세부사업	내역사업	2016 집행액
ODA 이해증진교육	해외긴급구호지원(ODA)	민관협력사업(ODA) 내의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969
해외봉사단 관련 사업 (모집설명회, 사후관리)	해외봉사단(ODA)	대국민 인식 증진비	1,951
ODA 조달 및 민관협력 사업 설명회	협력사업지원(ODA)	홍보	1,796
ODA 홍보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우선 ODA 이해증진교육의 경우 대학교에 ODA 관련 교과목 및 특강을 개설하는 것인데, 외교부의 해외긴급구호지원(ODA) 사업⁴⁾의 내역사업인 민관협력사업(ODA)⁵⁾의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에서도 각 대학에 국제개발협력 교과목을 개설하고 국내외 현장활동 실시를 지원하는 사업⁶⁾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별도로 교육을 진행할 필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해외봉사단 관련 사업(모집설명회 등)·ODA 조달 및 민관협력사업 설명회·ODA 홍보 등은 이와 관련된 예산이 한국국제협력단의 다른 출연사업에 편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이를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해외봉사단의 경우 해외봉사단(ODA) 사업⁷⁾에 대국민 인식증진비로 18억 6,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한국국제협력단은 조정 등을 통해 총 19억 5,058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협력사업지원(ODA)에 한국국제협력단이 직접 집행하는 ODA 홍보 예산으로 17억 9,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를 대부분 집행하였다.

4) 예산코드: 일반회계 1638-402

5) 동 사업은 2017년부터 별도의 세부사업인 ‘민관협력사업(ODA)(일반회계 1638-403)’으로 편성되었다.

6) 민관협력사업(ODA)에서 한국국제협력단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한국국제협력단이 각 대학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7) 예산코드: 일반회계 1635-402

특히 ODA 조달 설명회 등은 지역 특성 상 일부 국제개발협력센터의 경우 개최 실적이 저조한 경우가 있어 사업 효과가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2016년 결산 결과 강원지역 국제개발협력센터는 당초 2회 계획되어 있던 ODA 조달 참여설명회를 1회만 개최하였는데, 운영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강원 지역의 경우 관심이 있거나 실제 ODA 조달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도 2회를 계획하였으나 1회만 개최하였고, 제주 지역은 1회를 계획하였으나 한 번도 개최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이 출연 예산으로 홍보나 교육을 직접 수행할 수 있음에도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각 지역의 국제개발협력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관련 지원 및 홍보 등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하는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16년에는 재외동포재단 출연 사업¹⁾에서 531억 6,200만원을 출연하였고, 7개 세부사업과 18개의 내역사업을 수행하였다.

[재외동포재단 출연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재외동포재단 출연	53,162	0	0	0	53,162	53,162	0	0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재외동포재단 사업 중 중국·러시아·CIS 지역과 관련한 동일 내용의 사업들을 여러 사업 예산으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사업간 통·폐합이 필요하다.

재외동포재단은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예산을 여러 사업에서 집행하였다. 예를 들어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교원 초청연수’를 7.13. ~ 7.27. 동안 국립공주대학교에서 개최하면서, 재외동포 교육사업에서 1억 9,700만원을 집행하고,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에서 9,700만원을 각각 집행하였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832-401

[동일 건을 위해 여러 사업에서 집행한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내용	세부사업		집행액	세부사업		집행액
	내역사업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내내역사업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교원 초청연수 (7.13~7.27, 국립공주대학교)	재외동포 교육사업		197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97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특수지 동포지원 특별사업 (조선어교원 초청연수)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재외동포 교육사업		204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86
	중국 및 CIS지역 민족교육 육성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CIS지역 한국어교사 초청연수			특수지 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 (CIS지역 한국어교사 장기 초청 연수)		
CIS지역 고려인 초청 사업 (6.20~6.24, 서울·천안 등)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67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66
	동포사회 지도자 초청사업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CIS지역 고려인 초청사업			특수지 동포지원 특별사업 (CIS지역 고려인 초청사업)		
중국 및 러시아·CIS 지역 초청 장학사업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2,951 (중남미 및 기타 지역포함)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835
	재외동포 장학사업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재외동포 초청장학사업			특수지 동포지원 특별사업 (중국 및 러시아·CIS지역 초청 장학사업)		
재중동포 차세대 직업 교육	재외동포 차세대사업		160	재외동포 교류지원사업		50
	재외동포 차세대 직업교육			동포단체 활성화 사업		
	재외동포 차세대 IT교육 (중국 연변, 중국 청도)			특수지 동포지원 특별사업 (재중동포 차세대 직업교육)		

자료: 재외동포재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재외동포재단에 따르면 중국·러시아·CIS 지역의 사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특수지 동포지원 특별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사업을 여러 사업 예산으로 집행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행사 및 사업을 위해 여러 사업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회계 관리 및 사업의 성과 평가를 어렵게 하므로, 사업 규모를 증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해당 사업 예산을 증액하여 수행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재외동포재단은 2018년 예산부터는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와 남북협력기금으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418억 3,300만원(33.8%) 감소한 1조 621억 6,4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938억 3,200만원(9.7%)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2,071	2,612	2,612	1,498	△1,114	△573
기 금	966,261	1,601,385	1,601,385	1,060,666	△540,719	94,405
합계(총수입)	968,332	1,603,997	1,603,997	1,062,164	△541,833	93,832

자료: 통일부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4,985억 9,800만원(25.4%) 감소한 1조 4,658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982억원(15.6%)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현액			
예 산	301,397	363,071	363,071	462,343	405,192	42,121	103,795
기 금	966,261	1,601,385	1,601,385	1,614,134	1,060,666	△540,719	94,405
합계(총지출)	1,267,658	1,964,456	1,964,456	2,076,477	1,465,858	△498,598	198,200

자료: 통일부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6억 1,200만원이며, 15억 9,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3.9%인 14억 9,800만원을 수납하고 9,7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612	2,612	2,612	1,595	1,498	97	0	57.3

자료: 통일부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4,623억 4,300만원이며, 이 중 87.6%인 4,051억 9,200만원을 지출하고 60억 7,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510억 7,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63,071	363,071	462,343	405,192	6,073	51,078	87.6

자료: 통일부

다.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수정수입계획액은 1조 6,013억 8,500만원이며, 1조 606억 6,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A)					
남북협력기금	1,601,385	1,601,385	1,060,666	1,060,666	0	0	66.2

자료: 통일부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수정지출계획액은 1조 6,013억 8,500만원이며 계획현액은 1조 6,141억 3,400만원이다. 이 중 1조 606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24억 4,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477억 3,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지출계획액		계획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A)					
남북협력기금	1,601,385	1,601,385	1,614,134	1,060,666	2,443	747,735	66.2

자료: 통일부

라. 재정구조

2016회계연도 통일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925억원 전출되었다.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사업, ② 평화통일상 운영 사업, ③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 ④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 사업 등이 있다.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사업은 분과별 토론회 등 기존 통일부 사업과의 일부 중복을 감안하여 운영비 1억 7,000만원이 감액(40.7억원 → 39억원)되었고, 평화통일상 운영 사업은 법적 근거 마련이 우선 필요함을 고려하여 전액 감액(2.8억원 → 0원)되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사업은 경상비에서 1억원이 감액되었고,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사업은 남북간 협의 미진행 등을 고려하여 24억원이 감액(324억원 → 300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 ②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개설 지원 사업, ③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 등이 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은 탈북민들의 심리·정서적 고립을 해소하고 일반주민과의 소통과 통합을 돕기 위해 100억원이 증액(신규)되었고, 대학의 통일교육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해 옴니버스 특강 및 통일·북한 강좌 개설 지원 사업이 5억원(5억원 → 10억원), 통일교육 선도대학 육성 사업이 18억원 증액(신규)되었다.

통일부는 올바른 남북관계 정립과 실질적인 통일준비를 목표로 ①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②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해결 추진, ③ 교류협력 중단 상황의 안정적 관리, ④ 창의와 융합의 통일준비를 2016년도 주요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 개성공단 관련 기업의 피해 지원 목적으로 예비비 및 남북협력기금 등 총 5,757억원이 집행되었다. 이 중 4,892억 9,600만원이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인데, 경험·교역보험이 투자자산과 유동자산에 대한 피해 지원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함에 따라 지원액의 39.8%에 달하는 1,947억 7,700만원이 보험의 보장한도 외로 지원되었다.

둘째,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2016.3.3.에 제정됨에 따라 북한 인권 관련 실태조사 및 각종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추진 과정에서 국회의 재단 이사 추천 지연으로 배정받은 예비비 46억 7,600만원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설립준비 과정에서 예산의 배정 전에 계약하는 등 「국고금 관리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

셋째, 통일 대비 연구 및 민간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는 통일정책추진 사업의 내실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 관련 학술단체 지원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비목으로 집행하였으며, 예산 편성 시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DB 시스템을 연례적으로 구축하는 등 집행 상의 문제점이 다수 발생하였다.

가. 현 황

개성공단은 북한의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봉동리에 위치한 공업지구로, 2000.8월 현대 아산-북한간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 채택을 시작으로 2003.6월 1단계(100만평)를 착공하고 2005년에 입주기업 분양을 시작하였다. 입주 후 개성공단은 두 차례 중단되었는데,¹⁾ 2017.6월 현재에도 중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 당시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3개사로, 2016.2.11.부터 정부합동대책반을 가동하여 개성공단 피해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을 시작하였다. 정부합동대책반에는 국무조정실·통일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 등 12개 부·처·청 및 관계 공공기관이 참여하였다.

[개성공단 피해지원의 분야별 내용]

분야	지원내용
직접피해지원	· 경험보험금 104개사 지원(2,954억원) · 경험보험 미가입 142개사 투자자산 지원(705억원) · 교역보험 미가입 156개사 유동자산 지원(1,239억원) · 개성 현지주재원 위로금 804명 지원(124억원)
자금지원	· 기존대출 상환유예·만기연장(4,552억원) · 신규·특별대출(2,726억원)
세제/보험지원	· 국세/지방세 납기 연장(797억원) · 고용/산재보험료 148개사 14.3억원 경감 · 건강보험료 748명 대상 50% 경감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2013.3월 시작된 키리졸브 훈련을 계기로 2013.4.3. 북한은 대한민국으로의 출경은 허용한 채 개성공단으로의 입경을 차단하였다. 이후 2013.5.2. 남아있던 대한민국의 관리인력이 모두 철수하였다. 이후 2013.8.14. 개성공단 재개 합의가 이루어지며 2013.9.16.부터 정상가동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2016.2.7. 북한의 광명성호 발사 사건을 계기로 2016.2.10. 국가안전보장 상임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었다.

분야	지원내용
대체생산지원	· 지식산업센터 대체공장 8개사 13호실 입주계약 체결 · 지자체 투자 MOU 등 13개사 협약 체결 · 지방투자촉진보조금(170억원)
고용안정지원	· 고용유지지원금(29.4억원) · 휴직수당 기업부담분 지원(9.9억원) · 실업급여 374명(15.4억원) · 긴급생계비(2,700만원) · 외국인 고용 106명 지원 · 취업알선 77명(구인알선 99명/구직알선 54명)

주: 2017.1월 말 기준
자료: 통일부

이 중 통일부 소관은 직접피해지원, 자금지원, 고용안정지원 중 휴직수당 기업부담분 지원으로, 2016년에 총 5,757억원을 집행하였다.

[개성공단 피해지원 관련 통일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회계/ 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예산/ 계획 (당초)	예산 (계획)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비고
일반 회계	개성공단 피해지원	유동자산 피해지원	0	79,400 (예비비)	79,074	168	158	유동자산 피해지원
		근로자 위로금	0	13,000 (예비비)	12,381	0	619	개성 현지주재원 804명 위로금
남북 협력 기금	교역·경협 보험	교역·경협 보험	50,000	309,600	295,353	0	14,247	경협가입 104개사 투자자산 지원
	경협기반 (무상)	투자자산 피해지원	0	65,092	64,062	1,027	3	경협보험 미가입 142개사 투자자산 지원
	개성공단 운영대출	긴급경영 자금대출	0	72,820	72,806	0	14	123건 집행
	개성공단 기반조성	개성공단 근로자 고용지원	0	3,315	987	364	1,964	88개사 381명 근로자 휴직수당
		유동(재고) 자산 등 피해지원	0	52,308	51,075	933	300	64억원: 경협보험 미가입 142개사 투자자산 지원 447억원: 유동자산 피해지원
계			50,000	595,535	575,738	2,492	17,305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통일부는 남북한 거래 시 계약당사자에게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한 사유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남북협력기금에서 보상해주기 위해 경협(경제협력사업)보험과 교역보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협보험제도는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당국간 합의파기 등으로 인하여 영업 불능·사업 중단·권리 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이다. 보험계약한도는 70억원이며, 보험금은 보험가액(순손실액)에 부보율²⁾ 90%(개성공단을 제외한 기타 지역은 70%)를 곱하여 지급된다. 공단 중단 당시 개성공단 입주·협력업체 중 112개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하였다.

교역보험제도는 북한기업과 교역을 하는 국내기업 또는 개성공단에 설립한 현지법인과 위탁가공교역을 하는 개성공단 투자기업이 교역 당사자 간에 책임지울 수 없는 비상위험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보험계약한도는 10억원이며, 부보율은 납품이행보장(10%)을 제외하고는 70%이다. 교역보험에 가입한 기업은 없다.

이번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기업의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 신고 피해액은 8,182억원이다. 이 중 전문 회계법인의 검증을 마친 피해액은 7,089억원이며, 통일부는 이 중 4,911억원을 지원결정하고 4,893억원을 지원하였다.³⁾

[경협·교역보험 관련 투자자산 및 유동자산 지원액]

(단위: 백만원)

구분	신고 피해액	검증완료 피해액	보상 지원결정액			보상 지원액		
			보험 가입 기업		보험 미가입 기업	보험 가입 기업		보험 미가입 기업
			보장범위 내	보장범위 외		보장범위 내	보장범위 외	
투자자산	573,778	511,978	294,519	20,489	51,263	294,519	20,404	50,354
유동자산	244,446	196,896	0	0	124,841	0	0	124,019
계	818,224	708,874	294,519	20,489	176,104	294,519	20,404	174,373

주: 1. 투자자산의 보험은 경협보험을, 유동자산의 보험은 교역보험을 의미

2. 교역보험의 경우 가입기업이 없어 보험 가입기업에 대한 보상 지원결정액 및 보상 지원액을 0으로 표시

3. 보상 지원결정액 및 보상 지원액에는 2017년도로의 이월분 포함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부보율이란 보험가액 대비 보험금액 비율을 의미한다.

3) 통일부로부터 지원결정은 되었으나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않는 등의 사유로 지원결정액과 지원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4,893억 원은 2017년도의 이월분을 포함한 수치이다.

나. 분석의견

현재의 경협·교역 보험제도는 개성공단 진출 기업의 피해 보장에 한계가 있으므로 보험제도 개편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협보험의 경우 부보율 90%, 최대지원한도 7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피해 규모가 7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의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교역보험의 경우 가입대상 기업은 303개이나 가입 기업이 없는 상황이다.⁴⁾ 이에 따라 개성공단 중단 이후 경협보험 가입 기업의 보장범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한 지원과 경협보험 및 교역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16.2.11.부터 운영한 정부합동대책반에서 기본적인 피해 지원 방침에 대해 결정하고,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⁵⁾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⁶⁾의 의결을 거쳐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직접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을 결정하였다.

[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직접피해에 대한 지원 기준]

(단위: %, 억원)

구분			지원율	기업 당 지원한도
투자자산	경협보험 가입 기업	보장한도 내	90	70
		보장한도 초과	22.5	17.5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		45	35
유동자산	교역보험 미가입 기업		70	22

주: 지원율은 손실액 대비 지원액의 비율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통일부에 따르면 현재 교역보험 제도는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출입시마다 원부자재 반출입 품목을 입력해야 하는 행정상 비용이 크고, 개성공단의 경우 위탁가공 거래기간이 단기간이어서 기업들이 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게 예견하는 등의 사유로 가입을 기피하고 있다.

5) 「남북협력기금법 시행규칙」 제5조(협의회 의결사항)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남북한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지원

10.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해 위원장(통일부장관)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각 부처 차관/차관급 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국무총리가 임명)으로 구성

결정된 기준에 따라 경험보험 및 교역보험의 보장범위 외로 총 1,947억원이 지원되었는데, 이는 전체 지원액 4,893억원의 39.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즉, 현재의 보험제도로는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불충분하여 정부는 보험 담보 범위를 벗어나는 추가 지원 방안을 피해가 발생한 후에 정책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지원 수준 등에 대해 정부와 기업 간의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통일부는 보다 실효적인 보험제도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북한인권법」(2016.9.4.시행)은 통일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¹⁾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관련 실태조사·각종 연구·시민사회단체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2016년도에 북한인권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운영 사업²⁾에 예비비 46억 7,600만원을 배정하였으나, 국회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재단 출범이 불가하여 예비비 전액이 불용되었다.

[북한인권재단 운영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북한인권 재단 운영	0	0	0	0	4,676	4,676	0	0	4,676

자료: 통일부

한편,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사업³⁾과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⁴⁾에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⁵⁾으로 10억 4,200만원을 전용하여 북한인권재단 설립 준비를 추진하였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북한인권법」 제10조(북한인권재단의 설립) ① 정부는 북한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남북인권대화와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증진과 관련된 연구와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북한인권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예산코드: 일반회계 2135-304

3) 예산코드: 일반회계 2337-301

4) 예산코드: 일반회계 2337-302

5) 예산코드: 일반회계 2331-300

2-1. 예비비 신청 및 배정의 문제점

가. 현 황

통일부는 2016.8.8. 북한인권재단 운영을 위해 기획재정부에 예비비 109억 496만원을 신청하였다. 통일부가 신청한 예비비는 인건비·경상비 등 기관운영비 96억 1,100만원과 실태조사 및 연구·정책대안 연구·시민사회단체 지원 등 사업비 12억 8,400만원 등이다.

이후 2016.8.24. 기획재정부로부터 기관운영경비 39억 4,000만원과 사업비 7억 3,600만원 등 총 46억 7,600만원의 예비비를 배정받았다. 그러나 배정받은 예비비는 전액 일반출연금(350목)으로, 국회의 이사추천 지연으로 북한인권재단이 출범되지 않음에 따라 집행이 불가능하였다. 일반출연금은 북한인권재단 출범 이후 동 재단이 집행 가능한 비목으로 통일부 본부에서 재단 출범 준비 등을 위해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비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분석의견

재단 설립을 상정하여 예비비를 신청·배정하였고 이에 따라 전액이 불용되었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부칙에서 북한인권재단 설립 준비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고,⁶⁾ 법 시행 직후 재단이 출범될 것으로 보아 설립 준비를 조속히 시작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2017.7월 중순 현재까지 북한인권재단 출범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2016년 하반기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이유로 예비비를 신청한 것은 검토가 미흡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인권재단 운영이 가능한 기간에 비해 예비비가 과다하게 신청된 측면이 있다. 북한인권재단의 출범 근거가 되는 「북한인권법」의 시행일이 2016.9.4.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2016년에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었다 하더라도 운영이 가능한 기간은 최대 4개월에 불과했다. 그런데 통일부는 109억 496만원의 예비비를 신청하고, 이의 절반 수준인 46억 7,600만원의 예비비가 배정되었는데, 이는 2017년도 북한인권재단 예산이 117억 5,600만원인 점을 감안할 때 과다한 측면이 있다.

6) 「북한인권법」(법률 제14070호) 부칙 제2조(북한인권재단 설립준비) ① 통일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30일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2-2. 북한인권재단 설립 준비과정 상 집행의 문제점

가. 현 황

통일부는 예비비를 집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재단의 설립 준비를 위해 2016.11.24.에 다른 사업으로부터 10억 4,200만원을 전용하였다.

[북한인권재단 설립준비를 위한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전용 승인 (11. 24.)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2337-301)	310-01	44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110-02	북한인권재단 설립비용 총당 (사무실 임차료, 공공요금, 공사비, 설립준비인원 인건비 등)
			18		210-01	
			1		210-02	
			192		210-07	
			11		210-15	
			4		320-03	
			2		420-01	
			413		420-03	
			8		420-04	
			336		430-01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110-02	11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2331-300)	110-02	북한인권재단 설립준비인원 인건비 부족분 총당
			2		320-03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재단 설립 준비 과정에서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계약을 수행하였다.

「국고금 관리법」은 배정된 예산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⁷⁾ 그러나 통일부는 북한인권법이 2016.9.4.에 시행됨에 따라 북한인권재단 설립이 자명한 것으로 보고, 북한인권재단 설립 준비에 필요한 예산이 배정되기 전에 각종 계약을 체결하였다.

북한인권재단 건물 임대차 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2016.8.19.에, 재단 설립 준비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의 채용 계약을 2016.9.2.에 실시하였다. 그러나 북한인권재단 준비를 위한 기획재정부의 전용 승인은 2016.11.24.에 이루어졌으므로, 예산 확보 전에 지출원인행위를 수행한 것이다.⁸⁾

이에 따라 계약에 따른 비용 지급이 지연되었다. 구체적으로 10~11월 분 건물 임대료는 2016. 11.29.에, 기간제근로자의 9~10월분 보수는 2016. 11. 25.에, 인테리어 공사대금은 2016. 11. 28.에 각각 지급되었다.⁹⁾

[북한인권재단 설립 준비 관련 계약 체결 및 예산 집행 현황]

구분	계약 일시	계약 기간	지급 일시	비고
건물 임대차	2016.8.19.	2016.8.19.~ 2021.8.31.	2016.11.29.	10~11월분
			2016.12.20.	12월분
인테리어 공사	2016.8.19.	2016.8.20.~ 2016.9.13.	2016.11.28.	
기간제근로자 채용	2016.9.2.	2016.9.5.~ 2016.12.31.	2016.11.25.	9~10월분
			2016.12.5.	11월분
			2016.12.29.	12월분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결국 예산 배정 전에 계약을 하여 임대료와 보수 등이 연체되어 지급된 바, 향후 통일부는 「국고금 관리법」을 철저히 준수하여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7)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8) 통일부가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예상하고 예비비를 집행할 계획이었다고 하더라도 예비비 배정일은 2016.8.24.로, 일부 지출원인행위는 예비비 배정 이전에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2016.8.17.에 받았으므로 이를 근거로 계약을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9) 2017년도 북한인권재단 운영 예산이 일반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2017.6.말 현재까지 2017년도 건물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4인은 2016.12.월에 해고되었다.

통일부는 통일정책추진 사업¹⁾에서 통일대비 정책과제 연구, 독일 통일경험 연구, 민간부문의 통일역량 강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통일 대비 정책과제 개발 및 체계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계승·발전 공론화, 독일 통일·통합 경험 공유 및 활용, 통일법제 구축,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등 다섯 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²⁾

2016년도 예산현액은 22억 7,400만원이며 21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400만원이 불용되었다.

[통일정책추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통일 대비 정책과제 개발 및 체계화	442	442	44	0	0	486	422	0	64
민족공동체통일방안 계승·발전 공론화	42	42	0	△4	0	38	29	0	9
독일 통일·통합 경험 공유 및 활용	830	830	0	34	0	864	846	0	18
통일법제 구축	156	156	0	0	0	156	146	0	10
민간통일운동 활성화 지원	730	730	0	0	0	730	707	0	23
합 계	2,200	2,200	44	30	0	2,274	2,150	0	124

자료: 통일부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1-300

2) 2017년부터 독일 통일·통합 경험 공유 및 활용은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일반회계 1031-302)으로, 민간통일운동 활성화지원은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일반회계 1031-301)으로 조정되었으며, 신규 내역사업으로 북핵·평화구축 정책수립과 통일준비 협업체계 운영이 편성되었다.

3-1. 통일법제 관련 학술회의 지원 방식의 개선 필요

가. 현 황

통일부는 통일법제구축 내역사업에서 민간단체가 주관하고 통일부가 후원하는 2개 학술회의에 총 640만원을 지원하였다.

[통일법제구축 사업 내 학술회의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지원내역	목명	집행액
아주대 국제학술대회 토론자 사례비	일반수용비	1,200
서울대 학술대회 토론자 사례비	일반수용비	3,600
서울대 학술대회 자료 인쇄비	일반수용비	1,200
서울대 학술대회 만찬비	업무추진비	400
합 계		6,40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세미나 등에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통일부는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세미나 등의 토론자 사례비와 만찬비 등으로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였다. 그러나 일반수용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인 행정사무비 및 물품구입비 등에 집행되며, 업무추진비는 정부의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세미나 등에 통일부가 직접 일반수용비와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연례적으로 동일한 민간단체의 세미나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향후 다양한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최근 5년간 통일법제구축 사업의 학술회의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도	단체 명	지원액	연도	단체 명	지원액
2012	서울대학교	9,740	2015	서울대학교	4,200
2013	서울대학교	5,400		북한법연구회	8,200
	북한법연구회	8,000	2016	서울대학교	5,200
2014	서울대학교	4,140		아주대학교	1,200
	북한법연구회	6,240			
	통한법전	2,78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2. 적합한 비목으로 연구용역 수행 필요

가. 현 황

통일부는 통일정책추진 사업에서 업무용역비(260-01목)로 10억원을 집행하였다. 이를 통해 독일통일 문서이관 관련 용역 4건, 통일준비연구 종합DB시스템 구축, 통일 대비 정책과제 개발 및 체계화 연구용역 15건 등을 집행하였다.

[통일정책추진 사업 내 업무용역비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공개 여부	계약 방법
독일통일 문서이관 용역	220	220	211~12.10	베를린자유대	-	수의
독일통일 자료번역 사업	163	163	5.3~10.1	(주)렉스코드	-	경쟁
독일통일총서 집필	48	48	7.7-10.6	(사)통일경제사회 연구회	-	수의
독일통일 아카이브 개선 용역	68	68	9.6~12.10	(주)학술교육원	-	경쟁
한반도 국토개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총괄 연구	43	43	'15.4.29~ '16.2.29	국토연구원	비공개	경쟁 (국토부 주관)
공동체 형성 촉진을 위한 분야별 계획(농림, 축산, 식품)	45	45	7.19~12.18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비공개	경쟁 후 수의
비핵 검증 사례분석을 통한 북한 비핵 검증 전략 마련	20	20	5.17~10.16	한국세계지역학회	비공개	수의
통일준비연구 종합DB시스템 온라인 구축	28	27	5.17~7.31	크림하우스	공개	수의
분야별 통합과제 연구	20	18	6.15~9.14	한국표준협회	비공개	수의
	20	20	6.1~8.31	부산대학교	비공개	수의
	20	20	6.1~8.31	국민대학교	비공개	수의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공개 여부	계약 방법
최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 및 이에 대한 전략방안	20	20	7.29~10.28	북한대학원대학교	비공개	수의
당 대회 이후 전환기의 남북관계: 평화와 전략	10	10	9.13~11.12	경남대학교	공개	수의
김정은 정권 안정화 관련 연구 (제9차 청년동맹대회 평가를 중심으로)	15	15	11.3~12.16	북한연구소	공개	수의
북합 대북정책 연구	50	50	7.21~11.20	동아시아연구원	비공개	경쟁 후 수의
사회통합형 탈북민 지원방안 모색	20	20	8.8~12.7	그리스도대학교	공개	수의
북한 민생인프라 분야 실태분석 및 단계별 통합전략 연구	50	49	6.5~11.4	극동문제연구소	비공개	경쟁
북한 산업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통일 전후 북한산업 회생 방안	20	20	6.16~10.15	산업연구원	공개	수의
범정부 통일역량 진단 및 제고방안 연구	30	30	10.14~12.13	북한연구학회	비공개	수의
북한 내 남한재산	10	10	5.12~7.27	법무법인 태평양	비공개	수의
과거사법 분석 등을 통한 사회통합방안	20	20	5.16~9.15	서울대학교	비공개	수의
체제불법행위자 처리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와 시사점	20	20	6.9~9.8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비공개	수의
북한인권기록센터 운영방안 제도화 연구	30	30	7.13~11.12	고려대학교	비공개	수의
통일한국의 선거제도와 정당제도 방안 연구	20	20	9.13~12.12	통일미래포럼	비공개	수의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 대비 정책과제 개발 및 체계화 연구용역 15건은 업무용역비(260-01목)가 아닌 정책연구비(260-02목)로 편성·집행해야 한다.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존에 하나의 비목으로 되어있던 연구개발비(260목)를 연구용역비(260목)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용역비(260-01목)와 정책연구

비(260-02목)으로 세분화하였다.³⁾ 이에 따라 정책 개발에 관한 연구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은 정책연구비(260-02목)로 집행하도록 변경되었다.

그러나 통일부는 동 사업에서 통일 대비 정책과제와 관련한 연구용역 15건을 추진하면서 업무용역비(260-01목)로 집행하였다. 예산 편성 후 비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전용 또는 조정 절차를 거쳐 적절한 비목에서 집행하여야 하므로, 동 사업에서도 통일준비연구 종합DB 등 업무용역비(260-01목)로 집행해야 할 일부 사업을 제외하고는 업무용역비(260-01목)를 정책연구비(260-02목)로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여야 했다.

한편,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은 업무용역비의 목적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업무용역비를 ‘일반연구비’로 이름을 바꾸었다.⁴⁾ 그러나 통일부는 2017년 예산에도 동 사업의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편성하였으므로, 적절한 비목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주요 개정내용,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6. 1., p.4.

4) 연구용역 중 정책개발 성격을 띠는 것은 정책연구비(260-02목)로, 정책 개발 외의 실태조사, 전산개발, 시운전 등 연구용역은 일반연구비(260-01목)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3-3. 성과가 저조한 DB시스템 구축

가. 현 황

통일부는 통일정책추진 사업에서 ‘통일준비연구 종합DB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업무용역비 2,788만원을 집행하였다. 통일준비연구 종합DB시스템은 통일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수집하고 분류하여 홈페이지(<http://udbs.unikorea.go.kr>)에 등록·운영하는 것으로, 정치·행정/외교·안보/법제/경제/사회·문화 등 5개 분야에 총 1,159건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

나. 분석의견

통일준비연구 종합DB시스템은 구축 이후 활용도가 저조하며, 예산에 구체적으로 편성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통일준비연구 종합DB시스템은 업로드가 완료된 연구과제의 조회수가 낮은 등 시스템 활용도가 저조한데,⁵⁾ 이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가 부족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대부분의 연구용역 자료를 시스템 상에서 바로 열람할 수 없다는 데에 DB시스템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전체 자료 중 통일부가 저작권을 소유한 자료만 시스템에서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이외의 다른 자료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원소재지 홈페이지로 링크가 연결된 상태이다. 따라서 동 시스템은 자료의 목록을 보여주는 기능만을 할 뿐, 실질적인 열람 기능은 미흡하다.⁶⁾

또한, 통일준비연구 종합DB시스템 구축은 2016년도 예산 각목명세서 상 계획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업이다. 통일부의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각목명세서에는 ‘부처별 정책과제 개발 및 체계화’로 1억 2,000만원, ‘남북간 통합 대비 주제별 연구’로 2억 8,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통일부는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5) 연구과제별 이용건수에 편차가 있긴 하나, 2017.5월 초 기준으로 연구과제별 이용 건수가 대부분 10건 이내에 그친다.

6) 한편, 통일부·법제처·법무부가 공통으로 관리하는 ‘통일법제 데이터베이스(<http://www.unilaw.go.kr>)’는 필요한 자료의 경우 저작권자에게 동의를 받아 원문을 첨부파일 형식으로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입장이다.

그러나 시스템 구축은 정책연구용역 발주와 성격이 상이하며, 구축 후에도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등 예산 소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시스템 구축 시에는 보다 엄밀하게 계획을 세워 예산에 명확히 반영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구축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⁷⁾

7) 통일부는 2015년에도 예산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독일통일 아카이브 시스템’을 구축한 바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내실화 필요

가. 현 황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¹⁾은 통일에 대한 대국민 소통 강화 및 국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사업이다. 2016년도에는 예산현액 38억 3,700만원 중 36억 1,900만원이 집행되었다.

내역사업으로는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통일문화 진흥, 민간통일사료 수집이 있다.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는 통일에 대한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홍보자료, SNS, 인터넷 통일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통일에 대한 정책을 홍보하는 사업이다. 통일문화 진흥은 매년 통일박람회와 통일문화주간이라는 통일 관련 행사를 개최하고, 통일 문화콘텐츠에 대한 공모전을 실시하여 통일문화를 매개로 공감대를 확산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민간통일사료 수집은 통일과 관련한 다양한 기록을 수집·보관·관리하는 사업이다.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합 계	3,833	3,883	0	4	0	3,837	3,619	0	218
① 통일정책 대국민 소통 활성화	2,083	2,083	0	△46	0	2,037	1,834	0	203
· 홍보자료 제작	76	76	0	0	0	76	67	0	9
· 온라인 소통	521	521	0	0	0	521	472	0	49
· 뉴미디어 소통	137	137	0	145	0	282	282	0	0
· 매체활용 홍보	434	434	0	△191	0	243	198	0	45
· 공보기능 강화	92	92	0	0	0	92	88	0	4
· 인터넷 통일방송 운영	823	823	0	0	0	823	727	0	96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1-301

내역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② 통일문화 진흥	1,350	1,350	0	50	0	1,400	1,400	0	0
· 통일박람회 운영	490	490	0	0	0	490	490	0	0
· 통일문화주간 운영	510	510	0	32	0	542	542	0	0
· 통일문화콘텐츠 창작 활성화	350	350	0	18	0	368	368	0	0
③ 민간통일사료 수집	400	400	0	0	0	400	385	0	15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통일문화주간이 통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인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구성 및 진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매년 특정 주간을 선정하여 ‘통일문화주간’으로 운영하고 문화·예술 행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통일문화주간은 10월 21일부터 10월 29일까지로,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관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통일문화주간의 운영 방식은 개선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통일문화주간의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일부 프로그램에 일반인의 참여가 미흡하고 규모가 매우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일 국악연주회’나 ‘평화통일 미술전시’의 경우 통일이라는 주제와 연계가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었다.²⁾ 한편, ‘민통선 평화통일 걷기대회’도 통일부가 5월에 개최한 통일박람회 프로그램 중 하나인 ‘라디엔티어링 걷기대회’나, 유관 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DMZ 걷기대회’와 유사한 행사로, 통일문화주간의 특징을 찾기 어려우므로 차별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 「통일문화주간 2016 평가연구용역」, 2016. 12., (주)쥬스컴퍼니

[2016 통일문화주간 행사 내용 및 평가]

프로그램	일시	장소	평가
개막식	10.21.(금) 15:00~16:20	한강 세빛섬 컨벤션홀	일반인 참여자 미흡
평화통일음악회	10.23.(일) 19:00~20:30	안산 문화예술의전당	
통일영화 '보고싶다'	10.21.(금) 19:00~21:00	한강 세빛섬 컨벤션홀	규모 협소
DMZ사진전	10.22.(토)~12.31.(토)	파주 도라산역	
청춘토크	10.25.(화) 14:00~ 10.26.(수) 13:00~	강화 평화빌리지	
통일사료전시	10.22.(토)~12.31.(토)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	
통일 국악연주회	10.27.(목) 19:00~20:00	여의도 KBS홀	통일이라는 주제와 연계 저조
평화통일 미술전시	10.19.(수)~12.2.(금)	남산 주한독일문화원	
민통선 평화통일 걷기대회	10.29.(토) 09:30~12:00	강화 교동도	민주평통 'DMZ 걷기대회' 및 통일박람회(5월)의 라디 엔터테인먼트 걷기대회와 유사
KBS 불후의명곡	10.24.(월) 18:00~22:00	여의도 KBS홀	

주: 「통일문화주간 2016 평가연구용역」, 2016. 12., ㈜뉴스컴퍼니를 바탕으로 작성

따라서 통일부는 일반 국민들의 접근가능성이 높은 시간과 장소를 선정하고, 통일과 연계성이 높은 프로그램 위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통일문화주간 평가 설문 응답자 461명 중 약 91.3%가 서울·경기·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나타나 통일문화주간이 전국적인 행사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통일교육원에서 수행하는 통일교육주간³⁾과의 연계 운영을 고려할 수 있다. 통일교육주간에는 통일 관련 문화행사가 각 지역의 지역통일교육센터 및 지역통일관에서 개최되므로 통일교육주간과 통일문화주간을 통합하여 운영한다면 통일문화주간이 갖는 장소적 한계 및 참여 저조 등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⁴⁾

둘째, 동 사업에서 당초 예산상 계획에 없던 다양한 홍보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사업 추진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정책홍보사업 위탁, 통일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주한외국인 유학생 기자단

3)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예산코드: 일반회계 5031-304)에서 매년 주최하는 행사로, 전국 초·중·고의 계기수업 실시 및 통일 관련 문화행사 진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4) 이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교육주간과 통일문화주간의 개최 시기가 각각 5월과 10월로 상이하여 두 행사를 통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운영 등 당초 예산 편성 시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사업을 다수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정책홍보사업 위탁의 경우 (주)인포마스터에 통일부 홍보사업 전반을 위탁 (4억 6,100만원)하였는데, 집행 과정에서 위탁업체의 귀책 사유에 의해 위탁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하였다. 통일 정책홍보 사업은 전문성 뿐만 아니라 홍보의 지속성과 안정적인 운영도 중요한 만큼, 향후 홍보사업 전반을 위탁 사업으로 진행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통일창업 아이디어 공모전의 경우 수상작 전시회에 5,200만원, 상금 등 시상식에 2,100만원 등 총 1억 1,216만원이 집행되었다. 그러나 공모전 시행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낮은 청년층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 확산에 어느 정도 기여할 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질적 통일준비로서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주한외국인 유학생 기자단 운영은 기존에 통일부가 운영하는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유니콘)’과 별개로 주한외국인 유학생을 기자단으로 선발하여 통일정책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2016년에 총 3,994만원이 집행되었다. 주한외국인 유학생 기자단은 1년 간의 활동 후 사업이 종료되었다. 2017년도부터는 기사의 질적 측면을 고려하여 기존 통일부 대학생 기자단 내에 관련 인원을 소수로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사업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에 대해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통일부는 통일업무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은 2016년도에 신규 내역사업으로 편성되었는데, 민간 부문의 통일운동 활동을 민관협업 방식으로 지원하여 국민적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고 민간의 평화통일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은 ①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 ② 탈북민 자원봉사 단체 운영, ③ 의료상담실 운영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2016년도 예산현액 8억 4,000만원 중 집행액은 7억 7,900만원이다.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행정효율성 증진 및 능력개발	224	224	0	△16	0	208	193	0	15
통일부 기록관 운영	115	115	0	0	0	115	103	0	12
비상안전기반 구축	50	50	0	0	0	50	47	0	3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840	840	0	0	0	840	779	0	61
합 계	1,229	1,229	0	△16	0	1,213	1,122	0	91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첫째,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은 통일업무지원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

통일업무지원 사업은 통일부 직원의 행정효율성 강화 등 통일부 내부의 업무 효율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통일행정지원 프로그램(예산코드 7000) 내의 사업이다. 그러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7032-303

나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는 민간단체를 지원하여 국민적인 통일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일업무지원의 사업 목적 및 사업 수행 방식과 부합하지 않는다.

하나의 세부사업에서 이질적인 내역사업들을 운영하는 것은 사업의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민간의 통일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은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²⁾에서도 추진하고 있으므로³⁾ 해당 사업으로 이관하거나, 별도의 세부사업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동 사업은 기존 민간 공모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당초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통일부는 소액 단순지원 위주의 통일운동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동 사업을 구상하였다.⁴⁾ 구체적으로 통일부가 1~2억원 규모의 위탁사업을 구상·발주하면 민간 통일운동 단체들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기획하였다.

그러나 동 사업에서 추진한 ‘통일 공감 더하기 지원사업’의 경우 2억 2,800만원의 예산을 24개의 민간단체에 공모를 통한 방식으로 집행하였다. 이는 통일부가 사업 방식을 바꾸고자 한 취지와 달리 기존의 민간단체 지원 방식과 동일하게 수행한 것이다.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사업의 집행 내역]

사업 구분		사업 방식	비고
① 통일 공감대 확산	통일 공감 더하기 지원사업	통일부가 직접 24개 민간 단체 선정·지원	기존 민간보조 사업과 유사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	통일부가 사업 구상하여 개별적으로 위탁	당초 계획한 방식과 동일
② 탈북민 자원봉사단체 운영			
③ 의료상담실 운영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셋째, 통일 공감 더하기 지원사업은 민간경상보조 성격의 사업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

2)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1-301

3) 2016년도까지는 통일정책추진 사업에서 수행하였다.

4) 통일부에 따르면 기존 방식은 다수의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소액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어 효과가 크지 않으며, 공모 방식에 의하게 되므로 통일부의 정책 방향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통일 공감 더하기 지원사업에서는 통일부가 24개의 민간단체에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등 2억 2,827만원을 지급하였다. 대부분 민간단체의 행사 홍보비, 장소 임차료, 행사 사례비 등을 위한 것이다.

[통일 공감 더하기 지원사업의 단체 지원 현황]

(단위: 천원)

연번	단체 명	사업 콘텐츠	예산	
			신청액	지원액
1	(사)1090평화와통일운동	대학생 대상 토크콘서트 및 DMZ 투어	18,000	2,648
2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통일주제 국악경연대회	20,000	10,000
3	민족통일경상남도협의회	대학생 대상 통일문제 토론대회 개최	24,990	14,110
4	사단법인 북한민주화 네트워크	청년 통일 대토론회 및 전국주요도시 통일캠페인	16,680	9,940
5	사단법인 북한발전연구원	청년통일원정대캠프	10,000	5,620
6	사단법인 북한인권시민연합	북한인권, 탈북민 관련 음악회	20,000	15,000
7	(사)남북사회통합연구원	통일포럼 및 통일국악콘서트	25,000	16,763
8	(재)새누리좋은사람들	청소년대상 서울-부산 통일탐방	19,942	11,412
9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통일관련 연극 제작 및 보급	20,000	10,000
10	(사)선진통일건국연합	남북한 전통음악 통일콘서트	18,150	10,000
11	(사)세계평화여성연합	남북한 시민 화합, 분단현장 투어	11,392	7,304
12	사단법인 세계평화청년연합	통일 콘텐츠 공모 제작 및 전시회	20,000	7,054
13	청년지식인포럼 story K	북한인권 관련 칼럼, 에세이 공모전	19,900	10,000
14	위메이크코리아	새터민 한국사회 정착 성공 사례집 제작 및 토크콘서트	18,600	5,000
15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국제 NGO 초청 평화 토크쇼	20,000	20,000
16	청소년통일문화	통일도서 제작 보급 및 독후감	20,000	10,000
17	트리플래닛	통일을 준비하는 국민 참여형 통일 숲 조성 사업	20,000	9,846
18	(사)평화문제연구소	통일 미래비전 청소년 콘텐츠 공모전	15,200	10,000
19	(사)느헤미야코리아 다음학교	남북청소년 합창단 운영	20,000	9,997
20	한반도 미래재단	통일 하모니 오케스트라	20,000	9,144
21	통일양상블	남북한 합동 공연단 운영	20,000	10,000
22	(사)한반도평화포럼	축구를 통한 통일 공감 더하기사업	6,850	5,000
23	(사)새우리누리 평화운동	강화도 지역 통일문화축제 개최	10,000	4,500
24	북한체제트라우마 자유상담센터	청·장년 대상 세미나 및 시네마 토크쇼	14,550	4,938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는 민간단체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의 성격에 해당한다.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타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⁵⁾ 민간경상보조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한 것은 지침에 반한다.

넷째, 통일 공감대 확산 사업 내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는 통일부의 다른 사업들과 유사하였다.

“민간 통일준비 역량강화”는 10월 28일~29일 양일간 서울마당과 서대문 독립공원에서 진행된 사업으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서울신문의 컨소시엄으로 추진되었다. 동 행사는 ① 통일공감 콘서트&전시회와 ② 통일공감 걷기대회로 구성되었다.

통일공감 콘서트&전시회는 통일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이 부스에서 각자의 활동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통일부가 매년 직접 수행하는 ‘통일박람회’ 행사 일부와 그 목적 및 방식이 동일하다. 특히 통일공감 콘서트&전시회와 통일박람회 2016에 참여한 단체 중 일부((사)선진통일건국연합, (사)민족통일불교중앙협의회, 한반도미래재단)가 중복되기도 하였다.

통일공감 걷기대회는 10월 29일 서대문에서 진행되었는데, 위탁사업자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는 일주일 전인 10월 22일에 통일부 보조사업으로 통일공감 걷기대회(과주시)를 진행한 바 있어, 보조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5)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6. 1., p.141

가. 현 황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사업¹⁾은 평화통일공감대 확산 및 통일준비를 위한 민·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14.2.25. 대통령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담화 시 대통령이 통일준비위원회 발족을 발표하고, 같은 해 3.21.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규정(대통령령)」이 공포되며 출범되었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부위원장(민간/정부 각 2명)·민간위원 27명·국회/정부/국책연구기관 대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이다.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으로는 위원회 회의운영, 위원회 활동지원, 통일준비 연구·조사, 홈페이지·정책홍보, 경상적 기관운영 등이 있다. 2016년에는 예산현액 39억원 중 30억 7,900만원을 집행하고 8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다.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3,900	3,900	0	±49	3,900	3,079	0	821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첫째, 전체회의 운영 실적이 저조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르면, 전체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가 원칙이다.²⁾ 그러나 2016년의 경우 전체회의는 7차 회의(2016.6.30.)와 8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2-300

2)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회의) ③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차 회의(2016.12.14.) 두 차례만 개최되었다.

또한 위원장이 의장이 되어야 하나,³⁾ 지난해 두 차례의 전체회의 모두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았다. 전체회의 시 민간위원의 불참도 2015년 이전에는 2~4명에 불과하였던 반면, 지난해 7차 회의는 7명, 8차 회의는 8명이 불참하였는데, 전체 민간위원 수가 27명임을 고려할 때 참여율이 크게 낮아졌다.

전체회의는 전체 위원들이 모여 통일 준비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는 통일준비위원회의 대표 회의이므로, 통일준비위원회의 동력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당초 계획에 없던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나 그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이고, 부적절한 비목으로 집행하였다.

통일준비위원회는 카드뉴스 및 E-Book 제작을 위한 프로그램 구축 용역을 연말에 추진하고, 2016.11.14. 디자인 크립엔치즈에 자산취득비 1,980만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나 동 용역은 당초 예산 편성 시 계획에 없던 것으로 구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

카드뉴스 제작의 경우 동 용역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을 바탕으로 2017.6월 중순 현재 까지 10건의 카드뉴스를 제작하였다. 그러나 이는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청소년 지식사전(북한편)’⁴⁾의 내용을 카드뉴스로 제작한 것으로, 통일부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는 단순 흥미 위주의 북한 관련 지식을 통일준비위원회가 형태를 바꾸어 별도로 제공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E-book 제작 또한 홈페이지에 E-book 메뉴를 신설하고 E-book을 제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나, PDF 형식으로 제공되는 내용들을 굳이 E-book으로 구축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⁵⁾

더욱이 통일준비위원회는 동 예산을 자산취득비(430-01목)에서 집행하였으나, 동 용역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전산 용역이지 상용 SW의 구입이 아니므로 「2016년 예산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⁶⁾에 따라 업무용역비(260-01목)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통일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http://www.uniedu.go.kr/uniedu/home/brd/bbsatcl/dict2017/list.do?mid=SM00000704>

5) 동 시스템을 활용하여 2017.5월 발행한 「통일준비백서」를 PDF 형식과 더불어 E-book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6)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6. 1.

셋째, 워크숍 개최 시 숙박비를 임차료로 집행하였는데, 공무 출장에 소요되는 경비
이므로 여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통일준비위원회는 2016년에 전체 워크숍 3회, 분과위원회별 워크숍 7회 등 총 10회
의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2016년도 워크숍에 소요된 총 예산은 1억 2,891만원이었다. 그런
데 일부 워크숍에서 숙박비를 부적절한 비목으로 집행하였다.

「공무원 여비 규정」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 수행을 위해 여비(운임·일비·
숙박비·식비 등)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 규정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⁷⁾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의 국내출장여비를 국내여비(220-01목)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⁸⁾
따라서 민간위원들이 통일준비위원회에서 주재하는 워크숍에 참여할 경우, 이들의 숙박비
및 식비 등은 국내여비(220-01목)로 집행해야 한다.

그런데 통일준비위원회는 일부 워크숍을 개최하며 위원들의 숙박비를 임차료(210-07
목)로 집행하였다.

[임차료로 집행한 숙박비 내역]

워크숍 명	일시	장소	숙박 인원	집행액 (단위: 천원)
제1차 정치·법제도분과 워크숍	1.14~15	글래드호텔	15명	900
제2차 경제분과 워크숍	4.13~15	제주 피닉스 아일랜드	10명	990
제6차 전체 워크숍	6.30~7.1	대전롯데시티호텔	51명	7,000
제4차 사회문화분과 워크숍	12.12~13	웨스턴 조선호텔 부산	15명	3,000

자료: 통일준비위원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향후 워크숍 개최 시 워크숍 행사 장소 임차에 필요한 비용만 임차료로 집행
하고, 위원들의 숙박비는 국내여비에서 집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 업무용역비(260-01목): 전산용역(행정 업무의 전산화와 관련한 Data 입력, Software 개발 등을 행하는 경
우의 용역)
- 자산취득비(430-01목): 전산자원 구입비(정보시스템구축에 필요한 HW, 상용 SW, NW(네트워크장비) 등
구입비)

7) 「공무원 여비 규정」 제30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
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이 영을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 구분은 별표 9에 따른다.

8)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6. 1., p.247.

가. 현 황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2010.3.26.에 공포됨에 따라, 같은 해 12.13.에 국무총리실 산하에 6·25전쟁남북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출범되고 6·25전쟁남북진상규명위원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 개소되었다. 관련 예산은 통일부의 전시남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¹⁾에 편성되어 있으며, 2016년에는 예산현액 115억 2,700만원 중 80억 3,700만원이 집행되고 31억 1,900만원이 이월되었다.

[전시남북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	1,775	1,775	0	△58	1,717	1,499	0	218
전시남북 진상 및 실태조사	443	443	0	△171	272	170	0	102
전시남북자 가족 단체 지원	100	100	0	0	100	100	0	0
통합관리시스템 및 홈페이지 운영	103	103	0	△55	48	33	0	15
남북피해기념관 건립	8,929	8,929	430	31	9,390	6,235	3,119	36
합 계	11,350	11,350	430	△253	11,527	8,037	3,119	371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첫째, 자치단체 보조금이 보조금의 목적을 벗어난 사업에 집행된 경우가 있다.

사무국은 전국 228개 시·군·구 및 재외공관을 통해 2011년부터 2015년 말까지 남북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137-301

피해자 신고 접수를 받았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5년간 총 33억 3,70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다.

2016년에는 신고 접수 종료 이후 접수된 신고에 관한 사실조사 및 실무위원회 운영을 위해 2016.1.1.~2016.3.31.을 사업기간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총 1억 210만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중 6,093만원을 집행하였다. 집행액이 적은 것은 신고 접수가 2015년도 말로 종료되어 2016년에는 신고 접수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에 예산이 주로 집행되었기 때문이다.

[2016년 지방자치단체별 납북피해 신고 접수 및 실태조사 보조금 결산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자치단체명	교부액	집행액	연번	자치단체명	교부액	집행액
1	경기	27,673	22,994	8	인천	6,443	2,333
2	서울	31,438	7,107	9	전남	2,168	2,168
3	충북	6,716	6,416	10	전북	2,014	2,014
4	경북	5,336	5,336	11	광주	1,963	1,963
5	강원	8,402	5,240	12	울산	1,810	1,810
6	대전	3,020	2,570	13	대구	2,866	450
7	경남	2,611	2,338	14	세종	1,452	0

주: 집행액이 큰 순으로 정렬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런데 경기도는 2016.3.23.~25.의 2박 3일 동안 제주도에서 ‘6.25전쟁 납북피해 담당 공무원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워크숍에는 경기도에서 8명, 경기도 내 시·군에서 17명 등 총 25명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 공무원 8명의 여비 244만원과 행사운영비 595만원, 오찬 및 석식 비용 143만원 등 총 983만원이 동 보조금에서 집행되었다.

하지만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인 지난해 3월 말에 사업 담당 직원 간 네트워크를 형성했어야 할 필요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참가 직원 중에는 6.25전쟁 납북자 담당 공무원 뿐만 아니라 북한이탈주민 업무 및 남북교류협력 담당자 등이 포함되어 있어, 납북피해자 신고 접수 업무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교부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사무국은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남북피해기념관 전시물의 자료 수집 및 복제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자료수집비 1억 1,044만원이 이월되었다.

위원회는 남북피해기념관²⁾ 전시물 자료 수집 및 복제 비용으로 공사비(420-03목)에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산취득비(430-01목)가 보다 적절한 비목이라고 판단하여 자체전용 하였다.

자산취득비는 예산현액 1억 8,200만원 중 3,600만원만 집행되었고 1억 1,100만원은 사고이월되었는데, 이는 (주)명진씨앤피와의 복제 계약이 2016.12.14.에 체결되어 사업비 1억 1,10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기 때문이다.

[자료 복제 관련 자산취득비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건)

계약일시	업체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복제 대상 물품 수	계약 방식
2016.4.18.	(주)예틀	20	20	0	39	수의
2016.7.20.	(주)예틀	13	13	0	19	
2016.12.14.	(주)명진씨앤피	110	0	110	63	경쟁

자료: 통일부

이에 따라 2016년도에는 복제 대상 물품 121점 중 52.1%에 해당하는 58점만이 복제가 완료되었다. 남북피해기념관이 올해 9월에 개관할 예정인 점을 감안할 때, 사무처는 내부 전시 콘텐츠 준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집행할 필요가 있다.

2) 남북피해기념관은 「6·25전쟁 남북피해 진상규명 및 남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기념사업)에 따라 경기도 파주시에 부지면적 11,155㎡(3,380평), 지상2층 4,521㎡(1,370평) 2개동 규모로 건립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이며, 총사업비는 179억 7,700만원이다.

가. 현 황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통일교육원이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¹⁾에서 2016년에 신규로 추진한 내역사업이다. 동 프로그램은 공직자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위해 통일부 및 유관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단기 교육을 진행하는 것으로, 2016년도 예산으로 7,700만원이 편성되어 전액 집행되었다.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	77	77	0	0	77	77	0	0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은 통일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통일부 공무원반’, ‘중견실무 공무원반’과 목적·대상·구성 등에서 유사·중복의 소지가 있다.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 통일부 공무원반, 중견실무 공무원반은 목적이 공직자의 통일준비 역량 강화라는 측면에서 동일하다. 다만 통일부 공무원반은 통일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통일과 관련된 실질적인 업무능력 배양에 초점이 있으며, 중견실무 공무원반은 전 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므로 정부 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측면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점에서는 차이가 있다.

교육 내용의 경우 통일부 공무원반과 중견실무 공무원반은 강의 수강·토론 등 활동과 현장 견학 등 5일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은 강의와 현장견학에 더하여 사이버교육과 해외 현장교육을 추가적으로 제공한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5031-304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과 유사 프로그램 비교]

(단위: 백만원)

	통일준비 공직역량강화 프로그램(신규)	통일부 공무원반 (계속)	중견실무 공무원반 (계속)
목적	공직자 통일준비 역량 강화	통일부 공무원으로서의 업무 능력 배양 및 가치관 확립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업무능력 배양
2016 집행액	77	11.2	10.7
대상	통일부 및 유관 부처 5급 이하 직원	통일부 5급 이하 공무원 60명	6급 이하 공무원
구성	사이버교육, 국내 현장견학(2일), 전문강의(3일), 해외 현장견학(7일)	기본과목 및 전문과목 수강, 토론 등 참여활동, 현장견학 등으로 구성되며 총 5일 간 비합숙으로 진행	
강좌 개설 횟수	1회	2회	3회
총 참여 인원	30인 (통일부 24명, 유관부처 6명)	64명	123명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그러나 사이버교육은 통일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상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과정과 실질적으로 차별화되는 부분은 해외 현장견학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 현장견학이 사회주의 체제전환국의 실상 체험 및 북한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제고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긴 하나, 이를 위하여 통일준비 공직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기존의 교육 과정과 별개로 운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통일교육원은 각 부처에서 인력을 선발하여 국내 교육 3개월, 국외 연수 3개월 과정을 통해 통일을 대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정책과제 연구를 수행하고자 통일교육 지원 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¹⁾에서 통일미래기획과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 사업은 1995년부터 시작되어 2013년까지 통일부 본부 통일정책실에서 주관하였으나, 2014년부터는 통일교육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도 예산현액은 4억 2,300만원이고, 이 중 3억 9,4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900만원이 불용되었다.

[통일미래기획과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통일미래 기획과정	423	423	0	0	423	394	0	29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첫째, 동 사업을 통해 작성된 정책과제 연구 결과물은 모두 비공개로 처리되고 있어 결과물의 활용 여부 및 사업에 대한 평가가 어렵다.

통일미래기획과정 운영의 주요 목표는 통일 대비 역량 강화를 위해 각 기관의 통일 대비 전문인력 양성과 함께 통일준비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정책과제 개발에 있다. 그러나 정책과제 연구 결과물이 비공개처리되고 있어 이를 활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사업의 성과 측면에 있어서도 연구의 전문성 및 적시성 등을 평가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통일부는 이에 대해 동 연구 결과물이 통일에 대비하는 계획이므로 민감한 내용을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5031-304

포함하여 대외 공개 시 남북간 불필요한 오해 발생의 소지가 있어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나, 필요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과 같은 방식으로 운영할 경우 산출된 결과물에 대한 외부의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없어 사업 시행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해외파견 시 규정보다 상향된 좌석 등급인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의 항공임을 적용하여 여비를 지급하였다.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항공운임과 관련하여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가목, 나목, 라목 해당자 이외에는 2등 항공임을 지급받게 되어 있다.²⁾ 이 때 통상적인 출장 시 이용하는 대한민국 국적기³⁾는 3등급 체계(퍼스트·비즈니스·이코노미)로 되어 있으므로, 2등 항공임은 이코노미 항공임을 의미한다. 「공무원여비업무처리기준(2016.1.25.)」도 국외항공운임 지급 기준의 2등 정액은 이코노미 클래스임을 명시하고 있다.⁴⁾

따라서 통일미래기획과정의 교육 대상인 4급 이하 공무원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2호에 속하므로 2등 항공임, 즉 이코노미석 항공임을 지급받아야 한다.

그러나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과정에 참여하는 다수의 교육생들이 해외파견 시 이코노미석보다 한 등급 상향된 좌석인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을 탑승하도록 항공임을 지급하였다.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은 3등급 체계(퍼스트·비즈니스·이코노미)에서 분화된 비즈니스와 이코노미 사이의 좌석으로, 이코노미석에 비해 좌석 간격이 더 넓고 정찬 제공 등 서비스가 제공되나 요금이 이코노미석에 비해 비싸다.⁵⁾

2)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6. 1., p.160.

- 국외여비중 항공운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1등 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제1호 가목 해당자 및 나목 중 통상교섭본부장

■ 비즈니스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 2등 항공임 : 1등 항공임과 비즈니스 항공임을 제외한 기타의 자

3)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및 「정부항공운송의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무국외여행 시 자국적 항공기를 이용함이 원칙이다.

4)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p.538.

5) 요금 차이는 발권 시기 등에 의해 상이할 수 있으나, 통상 ‘GTR 항공권 이코노미석>국적기 이코노미석>외항사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외항사 이코노미석’ 수준이다.

[2016년도 파견자 탑승 내역]

(단위: 원)

상반기(23기)				하반기(24기)			
연번	파견 국가	항공료 지급액	프리미엄 이코노미 여부	연번	파견 국가	항공료 지급액	프리미엄 이코노미 여부
1	독일	1,854,000	X	1	독일	1,804,100	X
2	중국	463,000	X	2	중국	478,200	X
3	독일	1,977,900	O	3	독일	1,823,200	O
4	독일	1,977,900	O	4	독일	1,481,300	X
5	독일	1,970,200	O	5	독일	1,725,200	X
6	독일	1,889,700	O	6	독일	1,823,000	O
7	독일	1,992,900	O	7	독일	1,827,600	O
8	독일	1,969,700	O	8	독일	1,823,000	O
9	독일	2,000,000	O	9	독일	1,823,000	O
10	독일	1,976,300	O	10	미국	2,500,000	X
11	독일	1,758,200	O	11	독일	1,822,500	O
12	독일	자체 예산		12	중국	363,500	X
13	독일	자체 예산		13	독일	자체 예산	
				14	미국	자체 예산	
				15	러시아	자체 예산	

주: 자체 예산으로 파견된 경우는 공공기관에서 교육에 참여한 경우이다.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즉,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4급 이하 공무원은 2등(이코노미석) 항공임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⁶⁾ 이에 따라 4급 이하 공무원의 출장시에는 통상적으로 이코노미석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코노미석보다 상향된 좌석등급을 이용하는 것은 예산낭비의 소지가 있다.⁷⁾

6)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대한민국 국적기의 3등급 체계를 기준으로 되어있어 새로운 좌석등급인 ‘프리미엄 이코노미’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7) 이에 대해 통일교육원은 외국 항공사의 프리미엄 이코노미석에 대해 규정이 없고, 정부가 국외 출장 시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GTR(정부항공운송의뢰)의 이코노미 항공 운임보다 저렴하므로 항공운임을 절감한 측면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은 4급 이하 공무원은 이코노미석을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공무원 여비 관련 주관 부처인 인사혁신처도 이코노미석 이외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가. 현 황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¹⁾에서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남북통합문화센터는 탈북민의 문화생활을 지원하고 남북 주민 간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건물로 서울시 강서구 마곡지구²⁾에 건립을 진행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246억 7,400만원이고²⁾ 부지면적 2,000㎡, 건물 연면적 8,000㎡(지하 2층, 지상 7층)로, 사업기간은 2016~2019년이다. 2016년에는 예산현액 100억원 중 64억 9,000만원이 집행되었다.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의 비목별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토지매입비	6,800	6,800	6,481	0	319
기본조사설계비	235	235	5	230	0
실시설계비	467	467	0	460	7
시설비	2,418	2,418	0	0	2,418
감리비	55	55	0	0	55
시설부대비	25	25	4	0	21
계	10,000	10,000	6,490	690	2,820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첫째,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부지 확보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못하여 전반적인 건립 일정이 지연되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331-300

2) 당초 총사업비는 250억원이었으나, 2017.5.22. 총사업비 자율조정으로 총사업비가 감소하였다.

통일부는 당초 부지를 2016.7~8월에 매입하고자 하였으나, 이보다 5개월 가량 지연된 12월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였다. 이에 따라 토지매입비 64억 8,100만원과 기본조사설계비 500만원 등 64억 9,000만원만이 집행되었다.

부지 확보가 지연된 것은 남북통합문화센터 건립 예정지인 마곡지구의 부지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부지로 확정되어 있어 이를 변경하는 행정절차³⁾에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⁴⁾ 대상 부지가 타 용도로 확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도 내에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시작하고자 했다면, 토지 매입 절차를 보다 조속히 진행했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둘째, 당초 집행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

「국가재정법」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와 공사비 순서에 따라 필요한 예산만을 단계별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⁵⁾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4조는 건축사업의 경우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사업을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동 사업은 편성 당시 총사업비가 250억원으로 대규모 개발사업에 해당하였다.

따라서 「국가재정법」 제39조에 따라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하였어야 하나, 통일부는 2016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기본조사설계비·실시설계비·시설비·감리비 등 여러 단계의 예산을 동시에 편성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률이 64.9%에 불과하다. 향후 대규모 건축사업 시에는 사업 규모 및 예산의 집행 가능성에 대해 충분히 고려하고 집행 가능한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3) 마곡 도시개발구역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2016.7.28.) → 마곡 도시개발사업 구역변경, 개발 및 실시계획 변경 신청(2016.10.17.) → 문화센터 건립부지 매입 협의(2016.10~12월) → 건립부지 매입계약 체결(2016.12.30.)

4) 또한 마곡지구 입주민들의 센터 건립 반대민원 해결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었다.

5) 「국가재정법」 제39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실시설계비·보상비(담수물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가. 현 황

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원 시설운영 사업¹⁾에서 통일교육원 건물에 대한 운영·관리를 하고 있다. 2015년부터는 동 사업에서 기존에 통일연구원이 사용하던 건물들을 통일교육원에서 사용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이다.²⁾

2016년도에는 통일연구원 건물 리모델링으로 예산현액 30억 3,256만원 중 15억 2,020만원을 집행하였다.

나. 분석의견

기존 통일연구원 사용 공간의 활용방안이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관련 예산이 이월되었다.

리모델링 대상인 기존 통일연구원 사용 공간은 통일연구원 본관 연구 2관·교육관 지하·후생관 건물 1개 층 등이다. 2016년도에는 연구 2관을 생활관 B동으로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마무리하고, 통일연구원 본관과 교육관 지하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그런데 지난해에 시작한 공사들의 경우 건물의 사용 목적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아 사업이 연말에 추진되어 이월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통일연구원 본관 공사의 경우 건물의 사용 목적에 대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에 시간이 소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비 등 15억원이 수시배정으로 지정되고, 본관에 대한 용도가 결정된 후인 2016.7.11.에 예산이 배정됨에 따라 공기 부족으로 이월이 발생하였다. 교육관 지하의 경우 통일연구원이 자료실로 사용하던 곳으로, 당초에는 통일교육원도 리모델링 후 자료실로 계속하여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교육관 안정성 강화를 위한 2017년 내진공사를 실시한 이후 해당 장소에 체력단력실을 조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이월이 발생하였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5033-308

2) 통일연구원은 2015년 상반기에 서초구로 청사를 이전하였다.

[기존 통일연구원 사용공간 활용계획 및 공사 현황]

장소	통일연구원 사용 용도	통일교육원 사용 계획	공사 기간
통일연구원 연구 2관	연구원 연구 2관	생활관 B동으로 리모델링	2015.12.24.~2016.3.3.
통일연구원 본관	연구원 본관	제2교육관으로 리모델링	2016.12.7.~2017.5.28.
교육관 지하	연구원 자료실	체력단련실 조성	2016.12.1.~2017.3.30.
후생관 건물 1개 층	연구원 연구 1관	용도 계획 중	

주: 2017.5월 기준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일연구원 이전이 2014년 말에 결정되었는데, 이전 결정 후 1년이 지난 시점에도 건물의 활용방안이 재정당국과의 협의과정에서 결정이 지연됨에 따라 행정재산이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통일교육원은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재산의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남북하나재단(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지역 적응·취업 지원·교육 사업 등을 수행하는 통일부 산하 기타공공기관이다. 2016년에는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운영 사업에서 212억 100만원을 출연하였다.

한편 남북하나재단은 기부금을 모집하고 있는데, 2016년도 기부금 수입은 14억 8,300만원이며, 지출은 15억 1,500만원이다.

[2016년 기부금 결산]

(단위: 백만원)

	현 금(지정+비지정기부)	현 물(지정기부)	계
수 입	1,413	70	1,483
지 출	1,446	69	1,515

자료: 남북하나재단

나. 분석의견

남북하나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관련 규정의 정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기부금품 모집이 불가하다.¹⁾ 다만 같은 법 제3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법률²⁾에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 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 등 기부금품 모집·접수 제한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기관·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
- 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치자금법」
 2. 「결핵예방법」
 3. 「보훈기금법」
 4. 「문화예술진흥법」
 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6.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따른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한편,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북한이탈주민법’)」은 남북하나재단이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법」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³⁾

그런데, 남북하나재단은 「기부금품법」 제5조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이 불가한 국가에서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북한이탈주민법」은 「기부금품법」 제3조에 열거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해 남북하나재단은 「북한이탈주민법」이 「기부금품법」에 대한 특별법이므로 이를 기부금품의 모집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⁴⁾ 그러나, 공공기관의 기부금품 모집을 금지한 「기부금품법」의 취지를 감안할 때, 두 법률 사이의 관계 및 남북하나재단의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7. 「재해구호법」

8.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9.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⑨ 재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4)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설립에 관해 김충환의원 등이 2009.9.25. 발의한 의안원문에는 기부금품의 모집에 대한 규정이 없으나, 대안 제안 과정에서 추가되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은 예산액과 동일한 6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5,600만원(90.3%)이 감소하였다.

[2016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일반회계	62	6	6	6	0	△56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6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은 예산액 대비 2억 1,900만원 (0.8%)이 감소한 264억 8,7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8억 6,000만원(3.4%)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일반회계	25,627	26,706	26,706	26,487	△219	86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600만원이며, 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6	6	6	6	6	0	0	10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16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67억 600만원이며, 이 중 99.2%인 264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1,9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16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6,706	26,706	26,706	26,487	0	219	99.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① 제17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활동 지원을 위한 전략적 자원 배분, ② 실천적 통일준비 성과제고 및 재정지출 효율화 추진을 2016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해외자문위원들의 국내 초청행사인 해외지역회의 행사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운영이 있었다. 행사 개최 전반의 위탁은 위탁사업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 또한 관서운영경비 지급 한도인 건당 500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하는 등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둘째,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무실이 시·도청 및 시·군·구청 등에 입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회의·지역협의회 246곳 중 58곳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였다.

1

해외지역회의 사업의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가. 현 황

해외지역회의 사업은 해외자문위원들의 공감대 형성 및 통일준비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자문위원들을 국내로 초청하는 사업이다. 해외지역회의 사업은 자문회의 운영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2016년에는 21억 300만원을 집행하였다.

[해외지역회의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목-세목 코드	세목명							
110-04	일용임금	6	0	0	6	6	0	0
210-01	일반수용비	213	0	145	358	358	0	0
210-07	임차료	202	0	△83	119	119	0	0
220-01	국내여비	3	0	0	3	3	0	0
220-02	국외업무여비	1,479	0	△22	1,457	1,457	0	0
240-01	사업추진비	159	0	0	159	159	0	0
320-03	연금지급금	1	0	0	1	1	0	0
합 계		2,063	0	40	2,103	2,103	0	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제17기(2015.7.~2017.6.) 해외자문위원은 3,278명으로,²⁾ 해외지역회의의 사업은 해외자문위원을 지역별로 나누어 3회, 각각 3박 4일씩 진행되었다. 프로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1-300

2) 해외자문위원은 해당 지역의 관할 공관장이 ‘해외자문위원 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작성한 최종 후보자 추천명부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사무처로 송부하고, 사무처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한다.

그럼은 간부위원회의/오리엔테이션/기조연설(1일차), 업무보고/외교정책설명/문화강연/통일대화/분임토의(2·3일차), 통일·안보현장 시찰(4일차) 등으로 구성되었다.

[2016년 해외지역회의 추진실적]

구분	기간	초청대상지역	참석률(참석인원/대상인원)
1차	5.16.~19.	미국	52.9%(697/1,318)
2차	6.20.~23.	일본, 중국, 캐나다, 중남미	46.3%(463/998)
3차	10.11.~14.	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대양주, 러시아, 중앙아	53.0%(499/942)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 분석의견

첫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해외지역회의 사업에서 위탁사업비와 사업추진비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집행지침’)은 타 비목에 해당하는 성격의 경비를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³⁾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해외지역회의를 개최하며 위탁사업비 성격의 경비 2억 3,295만원과 사업추진비 성격의 경비 692만 5,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집행지침은 행사 등을 외부에 위탁할 시에는 위탁사업비(210-15목)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제1~3차 해외지역회의의 기획·회의 준비·부대시설 운영 등 개최 전반을 (주)위컨플래닝에 위탁하면서 일반수용비 1억 8,55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프로그램 중 하나인 ‘통일대화’의 기획·진행·행사시설 제작 등을 (주)에스엔커뮤니케이션에 위탁하면서 일반수용비 4,745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집행지침은 공식 회의 및 행사에 특별히 소요되는 제경비는 사업추진비(240-01목)로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제1차 해외지역회의의 만찬 건배용 음료비 692만 5,000원을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였다.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해외지역회의 사업예산을 적절한 비목으로 편성하고 각 비목의 용도에 맞게 집행할 필요가 있다.

3) 기획재정부,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16. 1., p.141

[일반수용비를 타 비목 용도로 집행한 내역]

(단위: 천원)

집행 내용	수령인명	금액
해외지역회의 개최 관련 용역 위탁	(주)위캔플래닝	185,500
통일대화 기획, 행사시설 제작·설치 위탁	(주)에스엔커뮤니케이션	47,450
제1차 해외지역회의 만찬 건배용 음료비	장충마트	6,925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둘째, 관서운영경비 지급 한도인 건당 500만원을 초과 집행하여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위반하였다.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제1항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일반 지출의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를 ‘관서운영경비’라 하고, 집행절차를 간소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인 지출의 경우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에 따라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관의 지출결의를 거쳐 집행하나, 관서운영경비는 각 부서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일정 자금을 교부받아 자체적으로 집행하게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는 관서운영경비의 지급 상한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수용비(210-01목)는 건당 500만원 한도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로 지급 가능하다.

그런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관서운영경비로 제1회 해외지역회의의 만찬 건배용 음료비 지출을 위한 일반수용비 692만 5,000원을 집행한 과정에서 이를 375만원, 317만 5,000원으로 나누어 같은 날(2016. 5. 15.)에 분할하여 결제하였다. 따라서 향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범위 내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¹⁾에 따라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를 두고 있다. 국내에는 시·도 및 이북5도에 18곳의 지역회의와 기초자치단체에 228곳의 지역협의회 등 총 246곳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가 있다.

246곳 중 인천 지역회의, 성남시 지역협의회, 고흥군 지역협의회를 제외한²⁾ 243곳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가 행정재산인 시·도청 및 시·군·구청 등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이 중 58곳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는 2017년 5월 초 기준으로 해당 행정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으로부터 별도의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있다.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사무실 운영 현황]

(단위: 개)

행정재산(A)		사유재산(B)	기타(C)	합계 (A+B+C)
사용허가 받음	사용허가 없음			
185	58	2	1	246
243			(사무실 없음)	

주: 2017.5.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나. 분석의견

사용허가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에 입주하고 있는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사무실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지역회의 등) ① 통일자문회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북5도 및 재외동포별로 그 지역 출신의 위원으로 구성된 지역회의를 둘 수 있고, 시·군·구 및 해외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인천 지역회의 및 고흥군 지역협의회는 사유 건물에 사무실이 입주해 있으며, 성남시 지역협의회는 성남 시청 무상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6년 2월 이후 별도의 사무실이 없다.

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³⁾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⁴⁾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가 행정재산인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2017년 5월 초 기준으로 58곳의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가 사무실 사용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으나,⁵⁾ 이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개별 지역회의·지역협의회가 행정재산을 사용할 구체적인 근거 규정은 될 수 없다. 따라서 「공유재산법」상 절차를 준수하여 행정재산의 사용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허가 없이 사용하는 사무실 현황]

연번	구분	위치	연번	구분	위치
1	서울지역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201호	30	인천 강화군	강화군청 5층
2	서울 종로구	종로구청 본관3층	31	경기지역회의	경기도청 인재채용동 1층
3	서울 성동구	성동구청 5층	32	경기 고양시	고양시청 본관1층
4	서울 광진구	광진구청 제1별관 2층	33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시청 본관3층
5	서울 동대문구	동대문구청 4층	34	경기 군포시	군포시청 3층
6	서울 중랑구	중랑구청 2층	35	경기 파주시	파주시청 신관3층
7	서울 강북구	강북구청 4층	36	경기 김포시	김포시청 본관 지하1층
8	서울 도봉구	도봉구청 3층	37	경기 포천시	포천시 다목적 복지회관 3층
9	서울 서대문구	서대문구청 6층	38	경기 하남시	하남시청 본관4층

-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31조(관계 기관의 협조)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경비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 설치·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연번	구분	위치	연번	구분	위치
10	서울 마포구	마포구청 11층	39	경기 오산시	오산시 자원봉사센터 4층
11	서울 양천구	양천구청 4층	40	경기 여주시	여주시청 4층
12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7층	41	경기 동두천시	동두천시 시민회관 1층
13	서울 구로구	구로구청 본관5층	42	경기 연천군	연천군청 신관2층
14	서울 금천구	금천구청 2층	43	대구 달성군	달성군청 4층
15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구청 보건소 4층	44	강원지역회의	강원도청 신관7층
16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6층	45	강원 속초시	속초시 근로자복지회관 4층
17	서울 관악구	관악구청 8층	46	충남 논산시	논산시 부창동주민센터 2층
18	서울 서초구	서초구청 8층	47	충남 서천군	서천군청 본관2층
19	서울 강동구	강동구청 5층	48	경북 포항시	포항시 북구청 내
20	서울 용산구	용산구청 8층	49	경북 안동시	안동시청 본관1층
21	서울 성북구	성북구청 12층	50	경북 경산시	경산시청 시의회건물 4층
22	서울 노원구	노원구청 본관3층	51	경북 봉화군	봉화군 복지회관 장애인 분관2층
23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 본관2층	52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2층
24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 본관2층	53	광주 남구	남구청 9층
25	인천 남구	남구의회 4층	54	광주 광산구	광산문화예술회관 2층
26	인천 연수구	연수구청 5층	55	전북 전주시	전주시청 8층
27	인천 남동구	남동구청 5층	56	전북 고창군	고창군청 6층
28	인천 서구	서구의회동 중층	57	전남 목포시	목포시청 본관3층
29	인천 옹진군	옹진군 농업기술센터 3층	58	전남 영암군	영암군청 의회동1층

주: 1. 2017.5월 초 기준

2. 지역회의라고 표기되지 않은 곳은 지역협의회임

3. 서울지역회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장이 아닌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이므로 「국유재산법」에 따른 사용허가 필요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가. 현 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¹⁾의 내역사업으로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은 ① 청년위원 역량지원, ② 여성위원 역량지원, ③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로 구성된다.

[청년·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청년위원 역량지원	375	0	0	375	375	0	0
여성위원 역량지원	375	0	△5	370	370	0	0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428	0	0	428	428	0	0
합 계	1,178	0	5	1,173	1,173	0	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여성위원 역량지원은 국내 지역회의·지역협의회에 민간경상보조(320-01목)로 해당 지역회의·지역협의회 소속 여성위원들의 통일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6년에는 3억 7,026만원을 집행하였다.

이 중 지역협의회를 제외한 지역회의에 배정한 보조금은 1억 5,218만원으로, 총 16개 지역회의, 34개 사업에서 다음과 같이 집행되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1-301

[지역회의 별 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 보조금 집행 내역]

(단위: 천원, 개)

지역	경북	강원	부산	서울	충남	인천	경남	전북
금액	30,580	14,000	12,641	12,545	11,461	10,250	9,580	8,490
사업 수	2	3	4	4	3	1	3	2
지역	광주	경기	대전	충북	대구	울산	세종	전남
금액	7,600	7,598	7,401	7,200	6,480	3,850	1,800	700
사업 수	2	1	3	1	2	1	1	1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경북지역회의가 집행한 금액이 3,058만원으로 가장 큰데, 경북지역회의는 보조금을 ‘미국 시카고 여성컨퍼런스 참석(2,366만원)’과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통일 여성화합 한마당 행사(692만원)’에 집행하였다. 이 중 미국 시카고 여성컨퍼런스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개최한 해외 여성위원 컨퍼런스 중 하나로, 2016.7.28.~7.30. 동안 진행되었다.

나. 분석의견

각 지역회의 여성위원장 등의 미국 시카고 여성컨퍼런스 참석 여비를 지역회의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배정하여 집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역회의에 민간경상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각 지역 여성위원들의 통일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경북 지역회의에 대한 보조금 중 2,366만원이 전국 지역회의 여성위원장 12명과 성남시 지역협의회 여성위원 1명 등 총 13명이 미국 시카고 여성컨퍼런스에 참여하기 위한 왕복 항공료로 집행되었다.

[경북지역회의의 보조금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지출항목	집행내역	총액	사무처 보조금	자체부담
왕복 항공료 (인천↔미국)	$\circ 2,371,800\text{원} \times 12\text{명} = 28,461,600\text{원}$ $\circ 2,291,800\text{원} \times 1\text{명} = 2,291,800\text{원}$ - 지원액 $1,820,000 \times 13\text{명} = 23,660,000\text{원}$	30,753	23,660	7,09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해외 여성위원 컨퍼런스 사업은 해외지역과 주관 사업인데 국내 자문위원들까지 초청하기에는 해외지역과의 예산이 부족하고,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에 국외업무여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은 등의 예산 사정으로 인해 특정 지역회의에 민간경상보조금을 배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전 지역회의 위원 대상으로 경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회의의 보조금으로 전국의 여성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각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에 보조금을 배정하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욱이 이들이 참석한 미국 시카고 여성위원 컨퍼런스는 여성위원 역량지원 사업과 같은 세부사업 내의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사업의 내용이므로,²⁾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하나의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하나의 사업에서 집행하도록 사업 계획을 보다 면밀히 세울 필요가 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해외 청년·여성위원 컨퍼런스’ 사업비로 미국 시카고 여성위원 컨퍼런스에 99,860 미불(한화 약 1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다.

가. 현 황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¹⁾에서 「통일시대」와 「e-행복한 통일」이라는 두 종류의 기관지를 발행하고 있다. 2016년도 「통일시대」 발간을 위한 집행액은 5억 6,096만원이며 「e-행복한 통일」 집행액은 1억 6,133만원이다.

[기관지 발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통일시대 발간	622	0	△61	561	561	0	0
e-행복한 통일 제작	126	0	35	161	161	0	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 분석의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발간 목적과 내용 등이 중복되는 두 개의 기관지를 통합하거나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내용을 개편하는 등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통일시대」와 「e-행복한 통일」은 발간 목적과 주요 내용 등이 유사하다. 구체적으로 양 기관지는 기본적으로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각종 활동을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또한 「e-행복한 통일」이 「통일시대」에 비해 북한 문화 소개 등의 비중이 높은 점을 제외하면, 통일 관련 이슈 소개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활동 소식 전달 등 중복되는 내용이 다수 있다.

조가영 예산분석관(gycho@assembly.go.kr, 788-4642)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031-301

[통일시대와 e-행복한 통일 비교]

	통일시대	e-행복한 통일
발간 목적	○통일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자문위원의 자문 역량 강화 ○통일운동 공감대 형성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상 강화	○국민들에게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통일 공감대 확산 ○통일 미래세대의 통일 의지 제고
발간 시작년도	○2005년	○2013년
주요 내용	○통일 관련 이슈(55%) ○민주평통 및 자문위원 활동 소개(45%)	○통일 관련 이슈(30%) ○민주평통 활동 소식(15%) ○통일에 대한 다양한 시각 및 북한문화 소개(55%)
구독 대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유관기관 ○통일에 관심 있는 국민	
발간 형식	○인터넷 웹진 ○모바일 웹페이지	
	○오프라인 책자(매회 23,000부 발간)	○어플리케이션 ²⁾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이에 대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통일시대」는 자문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정보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고, 「e-행복한 통일」은 청년을 비롯한 일반 국민의 통일의식 고취를 주요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콘텐츠 면에서도 「e-행복한 통일」이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내용을 더 담고 있어 차이가 있다고 한다.

그러나 「e-행복한 통일」의 자문위원이 아닌 구독자는 약 13,000명이고 자문위원인 구독자가 19,947명임을 고려할 때 「e-행복한 통일」이 「통일시대」에 비해 일반 국민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또한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콘텐츠가 다수 있고³⁾, 두 종류의 기관지를 발간함에 따라 기획 및 편집비·취재 관련 여비·기획 및 편집회의 간담비 등의 지출이 각각 발생하고 있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e-행복한 통일」을 바로 볼 수 있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다운로드 수는 2015년 604건, 2016년 876건이다.

3) 「통일시대」와 「e-행복한 통일」 유사·중복 콘텐츠]

통일시대	e-행복한 통일	비고
<통일이슈-포커스>	<특집/진단>	미국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구상
<따뜻한 통일-당신이 통일주인공>	<With You>	북한이탈주민 인터뷰
<민주평통 365일>	<민주평통 소식>	민주평통 주요 활동 소식

주: 2017년 6월호 기준

[통일시대와 e-행복한통일의 세부 결산 내용]

(단위: 천원)

구분	통일시대	e-행복한 통일
기획 및 편집비 등	333,151	155,252
취재 관련 여비	2,190	2,604
기획 및 편집회의 간담비	6,183	3,081
우편 발송료	219,504	0
편집위원 워크숍 장소 임차료	330	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기관지를 하나로 통합하거나, 두 기관지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관지 운영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방위원회



국방부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국방·군사 시설이전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군인연금기금 및 군인복지기금으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923억 3,300만원(3.5%)이 증가한 5조 6,616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7,701억 3,200만원(15.7%)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1,244,495	1,223,657	1,223,657	1,361,517	137,860	117,022
기 금	3,647,016	4,245,653	4,245,653	4,300,126	54,473	653,110
합계(총수입)	4,891,511	5,469,310	5,469,310	5,661,643	192,333	770,132

자료: 국방부

2016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5,072억 4,600만원(1.7%)이 감소한 28조 4,816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조 38억 2,600만원(3.7%)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24,142,319	25,477,432	25,477,432	25,028,255	△449,177	885,936
기 금	3,335,495	3,511,454	3,511,454	3,453,385	△58,069	117,890
합계(총지출)	27,479,829	28,988,886	28,988,886	28,481,640	△507,246	1,003,826

자료: 국방부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2,236억 5,700만원이며, 1조 4,750억 3,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2.3%인 1조 3,615억 1,700만원을 수납하고 1,135억 1,5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80,913	180,913	180,913	209,470	155,030	54,440	0	85.7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15,462	715,462	715,462	881,395	837,069	44,326	0	117.0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27,282	327,282	327,282	283,039	268,290	14,749	0	82.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	0	0	101,128	101,128	0	0	0
합 계	1,223,657	508,195	1,223,657	1,475,032	1,361,517	113,515	0	92.3

자료: 국방부

2016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9조 2,916억 9,300만원이며, 이 중 94.9%인 27조 8,210억 2,900만원을 지출하고 6,728억 8,6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977억 7,8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출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7,159,740	27,159,740	27,930,584	26,790,784	493,715	646,085	95.9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15,462	715,462	827,416	666,724	104,927	55,765	80.6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327,282	327,282	348,368	228,943	23,497	95,928	65.7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64,675	164,675	185,325	134,578	50,747	0	72.6
합 계	28,367,159	27,651,697	29,291,693	27,821,029	672,886	797,778	94.9

자료: 국방부

다. 기금 결산

2016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수정수입계획액은 4조 2,456억 5,300만원이며, 4조 3,202억 9,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5%인 4조 3,001억 2,600만원을 수납하고, 3,000만원을 불납결손 처리하였으며, 201억 4,2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A)					
군인연금기금	3,086,682	3,086,682	3,034,594	3,029,973	4,621	0	98.2
군인복지기금	1,158,971	1,158,971	1,285,704	1,270,153	15,521	30	109.6
합계	4,245,653	4,245,653	4,320,298	4,300,126	20,142	30	101.3

자료: 국방부

2016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수정지출계획액은 4조 2,456억 5,300만원이고 계획현액은 4조 2,543억 5,700만원이며, 4조 3,001억 2,600만원을 지출하고 12억 4,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55억 5,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16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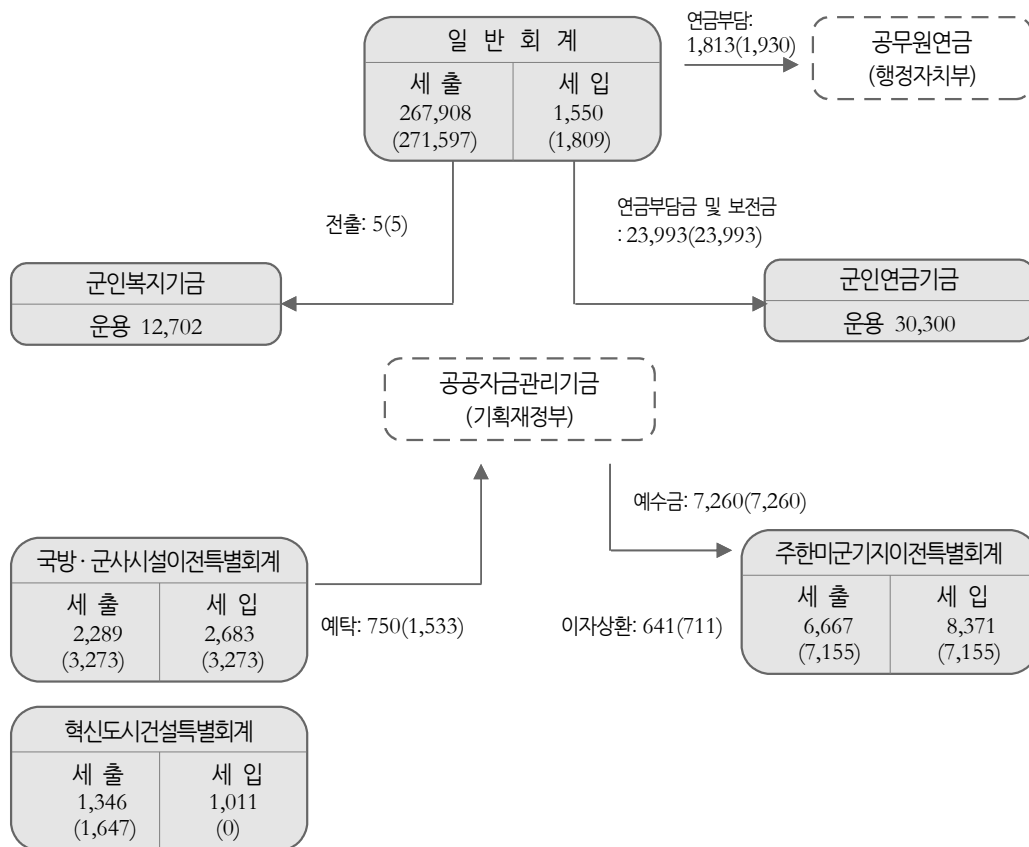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지출계획액		계획현액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A)					
군인연금기금	3,086,682	3,086,682	3,086,682	3,029,973	53	30,028	98.2
군인복지기금	1,158,971	1,158,971	1,167,675	1,270,153	1,196	35,529	109.6
합계	4,245,653	4,245,653	4,254,357	4,300,126	1,249	65,557	101.3

자료: 국방부

라.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 결산 기준

자료: 국방부

국방부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장비유지비 사업, ② 육군 병영생활관 신축 사업, ③ 공군 교육사령부 시설종합훈련장 사업 등이 있다.

장비유지비 사업은 집행 부진에 따라 200억원이 감액(2조 7,076억원 → 2조 6,876억원)되었고, 육군 병영생활관 신축 사업은 항공작전사령부 항공대대의 리모델링 전환으로 8억원이 감액(764억원 → 756억원)되었으며, 공군 교육사령부 시설종합훈련장 사업은 부지 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 가능성을 고려하여 30억원이 감액(66억원 → 36억원)되었다.¹⁾

1) 국방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5.10.
국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국방부는 ① 국민이 신뢰하는 **국방태세 확립**, ② 한미군사동맹 지속적 발전 등 **국방 외교협력강화**, ③ 장병 인건비 상승 등을 통한 **군 복무 여건 개선** 등을 2016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장비획득과 장비유지 사업에서 계약업체의 귀책 사유로 일부 장비 및 수리부속 등이 연내에 도입되지 못하여 각각 126억 6,900만원, 615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다. 물품 조달 등에 관한 업체 선정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능력 부족, 장비의 요구성능 미충족 등이 발생하여 군수물품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업체만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특히 장비 유지와 관련된 물품의 납품이 지연되면 장비를 적기에 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급 사단·함대·비행단의 군 전력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둘째, 국방부는 현재 민간조리원에게 최저임금만 지급²⁾하고 있으며, 별도의 교통비·격오지 수당 등은 지급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가 결산 심사 시 국방부에 대해 민간조리원에 대한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국방부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의 정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규모 이·전용 등이 발생³⁾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사업의 집행액을 살펴보면, 2013년 집행액은 309억 7,3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2016년의 경우 2013년 대비 83.3% 증가한 564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다.

2)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3) 2015년 232억 4,800만원, 2016년 215억 5,600만원

1

장비획득 및 유지사업 개선과제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¹⁾은 장비·물자·탄약 등을 획득·운영하고 필요 시 수리 보수 등의 유지활동을 통해 전투준비태세 확립 및 전투지원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2016년 예산현액 4조 7,931억 8,300만원 중 4조 2,187억 6,200만원을 집행하였고, 2,258억 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3,486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군수지원 및 협력 프로그램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군수지원 및 협력	4,602,133	4,602,133	203,152	△12,102	4,793,183	4,218,762	225,803	348,618
장비획득	402,193	402,193	27,790	10,243	440,227	387,848	44,429	7,950
장비유지	2,687,589	2,687,589	158,434	△27,436	2,818,587	2,577,154	158,314	83,119

자료: 국방부

동 프로그램은 8개의 단위사업과 3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단위사업 중 장비획득 사업²⁾은 기동장비, 화력장비, 통신장비 등의 장비를 도입하여 교체하기 위한 사업이며, 장비유지 사업³⁾은 획득된 장비에 대한 수리 부속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⁴⁾

국방부는 장비획득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4,402억 2,700만원 중 3,878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444억 2,9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79억 5,000만원을 불용하였다. 장비

조흥연 예산분석관(n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300

2) 예산코드: 일반회계 2331

3) 예산코드: 일반회계 2333

4) 이외에도 물자획득, 연료확보, 수송활동,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용탄약, 탄약관리 단위사업이 있다.

유지 사업의 경우 2016년도 예산현액 2조 8,185억 8,700만원 중 2조 5,771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83억 1,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31억 1,900만원을 불용하였다.

1-1. 업체의 능력부족, 납품 장비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장비보급 지연 문제

가. 현 황

2016년 장비획득, 장비유지 사업에서 업체 능력 부족, 검사 불합격, 업체 부도 등 업체의 귀책 사유로 일부 장비 및 수리부속 등이 연내에 도입되지 못하여 각각 126억 6,900만원, 615억 5,600만원이 이월되었다.

해당 이월액은 장비획득 사업의 경우 전체 이월액 444억 2,900만원의 28.5%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비유지 사업의 경우 전체 이월액 1,583억 1,400만원의 38.9%에 이르고 있다.⁵⁾

[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월액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단위사업	전체 이월액(A)	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월액(B)	비중(B/A)
2014	장비획득	23,874	9,899	41.5
	장비유지	54,878	26,515	48.3
2015	장비획득	27,790	8,061	29.0
	장비유지	158,434	65,195	41.1
2016	장비획득	44,429	12,669	28.5
	장비유지	158,313	61,556	38.9

자료: 국방부

최근 3년간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체 이월액 중 업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이월액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금액 자체는 오히려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그 외의 사유로는 계약 자체의 지연, 지불시기 미도래에 따른 지연, 행정절차 지연 등에 따른 이월이 있다.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군수물품에 대한 장비획득 및 유지 등과 관련하여 계약업체의 능력부족, 요구성능 미충족, 납품장비 검사 불합격 등에 따라 연내에 물품이 보급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장비획득 및 장비유지 사업은 국방부가 각급 사단, 함대, 비행단의 장비 보급 소요를 책정하여 필요 예산을 편성하고, 업체와 계약 후 해당 장비를 보급하는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다.

군수물품 조달은 일반경쟁으로 실시하고 있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 계약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러한 계약 방식으로 인해 일반경쟁에 따른 최저가입찰로 장비를 납품하는 신규업체 및 중소기업은 군수품 조달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약 후에야 기술력 부족을 인지하거나, 부품 조달 경로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장비 제작에 필요한 부품 확보를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로 납기 내에 납품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물품 조달 시 업체 선정 과정을 거쳐 계약을 진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업체의 능력 부족, 장비의 요구성능 미충족 등이 발생하여 군수 물품의 납품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업체만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다.

또한, 이와 같은 사유로 장비 유지와 관련된 물품의 납품이 지연되면 장비를 적기에 수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각급 사단·함대·비행단의 군 전력운용에 차질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에서 납품지연 발생문제는 부적정하다고 판단된다.

특히, 업체의 능력부족 등으로 2015년에 이월된 물품이 결국 2016년까지 납품되지 않아 8개 세부사업에서 59억 5,000만원이 불용되었다는 점에서도 업체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한 이월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2015년 업체 귀책사유 등에 따른 이월 후 2016년 불용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세부사업명	내역	불용액	사유
장비획득	함정장비 (2331-304)	냉동기세트	10	업체 능력부족
	통신전자장비 (2331-305)	통합전화기	200	업체 능력부족
	정비장비 및 전력화지원비 (2331-309)	3차원측정기	242	납품장비 성능미달 및 구성품 미납품으로 검사 불합격
		고압세척기	110	전기용품 안전인증(KC)을 받지 못해 검사 불합격
장비유지	기동장비 (2333-305)	2¼톤 차량 수리부속	522	납기 내 납품불가
		5톤 차량 수리부속	789	업체 부도로 납품불가
		다목적전술차량 수리부속	310	납기 내 납품불가
		자주포 수리부속	42	납기 내 납품불가
	함정장비 (2333-307)	박판, 금속제 등 25종	624	업체 경영악화
		공기압축기 등 21종	313	업체 도산
		회전식 연결관 등 9종	24	업체 능력부족
		스위치 등 13종	11	업체 능력부족
		유리 등 5종	28	업체 능력부족
		인쇄회로기판 등 7종	30	업체 능력부족
	통신전자장비 (2333-309)	지상전술전자전 전원공급기	1,306	업체 능력부족
		회로카드 조립체	206	업체 능력부족
	일반장비 (2333-310)	장갑전투도저 수리부속	237	업체 능력부족
		지뢰탐지기 헤드세트	434	업체 능력부족
	특수장비 (2333-311)	신궁 수리부속	94	업체 능력부족
		비호 수리부속	418	업체 능력부족
총계			5,950	

자료: 국방부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장비획득, 유지 등과 관련된 물품의 보급에 있어서 계약업체의 납품 가능성, 생산능력 등을 보다 철저히 검증하는 등 철저한 사업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내구연한 초과 중형표준차량 교체 위한 조속한 연구개발 필요

가. 현 황

국방부는 기동장비 사업⁶⁾을 통해 군에서 사용하는 차량의 부족물량을 확보하고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을 교체하고 있으며, 2016년 예산현액 1,909억 900만원 중 1,861억 1,800만원을 집행하였고, 45억 8,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억 400만원을 불용하였다.

[기동장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동장비	174,894	174,894	6,321	9,694	190,909	186,118	4,587	204

자료: 국방부

2016년 12월말 기준 국방부가 운영 중인 중형표준차량(2½톤, 5톤)⁷⁾은 총 12,467대인데, 이 중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 수는 4,114대로 전체 차량의 33.0% 수준이다.

[내구연한 초과 중형표준차량 현황]

(단위: 대, %)

장비명	내구연한	보유(A)	내구연한 초과(B)	내구연한 초과 비율(B/A)
2½톤 표준차량	18년	7,420	1,479	19.9
5톤 표준차량	20년	5,047	2,635	52.2
합 계	-	12,467	4,114	33.0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중형표준차량의 연구개발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내구연한이 초과된 중형표준차량을 조속히 교체하여야 할 것이다.

6) 예산코드: 일반회계 2331-301

7) 표준차량은 각 군에서 기본적으로 운용하는 차량을 의미하며 그 외에 전술차량, 민수차량 등이 있다.

국방부는 현재 내구연한이 초과되어 운영 중인 장비에 대해 중기계획과 연차별 재원 등을 고려하여 교체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2½톤 및 5톤 중형표준 차량의 교체계획에 따르면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들은 2023년 이후에야 대폭 교체될 예정이다.

[내구연한 초과 중형표준차량 확보계획]

(단위: 대)

장비명	내구연한 초과	확보 계획
2½톤 표준차량	1,479	'18~'22년(353대), '23년~(1,126대)
5톤 표준차량	2,635	'18~'22년(510대), '23년~(2,125대)

자료: 국방부

이미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으로 교체되는 것은 중형 표준차량에 대한 연구개발이 2022년에 종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015년 중형표준차량에 대한 연구개발 필요성이 제기되자 2017년부터 연구 개발을 추진하여 2019년에 완료한 후 2020년부터 신규차량을 도입할 계획이었다.

그런데 국방부는 2017년 6월부터 선행연구를 추진하고 2018년 6월까지 사업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후 2019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개발을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였다. 이는 성능, 수량 등 소요 분석 과정이 예정보다 장기간 진행되었고⁸⁾, 일부 추가 검토 사항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재검증하는 과정 등이 필요하게 되어 연구개발 착수가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중형표준차량 연구개발 계획]

장비명	최초 시점(2015년)	현재 시점(2017년)
연구개발추진	2017년~	2019년~
신형 중형표준차량 보급	2021년~	2023년~

자료: 국방부

결과적으로 현재 중형표준차량에 대한 연구개발은 약 2년 정도 지연된 상황으로 내 구 연한이 초과된 차량들을 해당 기간만큼 더 운용하게 되었는데, 이에 대해 국방부는 내

8) 통상 소요분석은 5~6개월 간 수행되나 중형표준차량 개발 관련 소요분석은 성능, 수량 등에 대한 분석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 11개월 동안 수행되었다.

구 연한이 초과되었다고 하여도 엄격한 상태검사를 통하여 안전한 장비만을 운용하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구연한이 초과된 장비는 노후화 등으로 인한 성능 저하로 유사시 즉각적 대응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특히 차량 등은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중형표준차량에 대한 연구개발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계획된 시기에 신규 차량이 도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급식비 사업¹⁾은 군 장병에게 급식 등을 제공하기 위한 단위사업으로, 기본급식 사업, 중/특식 사업, 특수식량 사업, 민간조리원운영 사업 등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방부는 급식비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1조 6,094억 2,900만원 중 1조 6,082억 9,7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10억 3,200만원을 불용하였다.

[급식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급식비	1,609,412	1,609,412	16	0	1,609,429	1,608,297	100	1,032
기본급식	1,451,880	1,451,880	0	8,557	1,460,437	1,460,090	0	347
중/특식	103,868	103,868	16	△8,557	95,328	94,745	100	483
특수식량	23,924	23,924	0	0	23,924	23,918	0	6
민간조리원운영	29,740	29,740	0	0	29,740	29,544	0	196

자료: 국방부

군 급식은 1일 3식의 기본급식, 훈련 및 특수업무 등을 수행하는 장병의 체력 보강을 위한 증식·특식, 전시 또는 유사시를 대비한 비상 급식(특수식량) 등으로 제공된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231

2-1. 내부 방침에 따른 기초훈련병 증식비 조정 부적정

가. 현 황

증/특식 사업²⁾은 훈련 및 특수 업무를 수행하는 장병에게 추가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경축일특식·특수근무자증식·기초훈련장병증식 등 7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³⁾ 국방부는 증/특식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953억 2,800만원 중 947억 4,5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8,300만원을 불용하였다.

[증/특식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증/특식	103,868	103,868	16	△8,557	95,328	94,745	100	483
기초 훈련장병 증식	9,059	9,059	0	△1,671	7,388	7,369	0	19
기초훈련병 증식	6,825	6,825	0	△1,396	5,429	5,429	0	0

자료: 국방부

내내역 사업인 기초훈련병증식 사업은 기초훈련장병⁴⁾ 중 훈련소에 입대하는 일반병사에게 지급하기 위한 증식 비용으로, 국방부는 기본급식 사업⁵⁾으로 조정한 13억 9,600만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54억 2,9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 예산코드: 일반회계 1231-302

3) 경축일특식 : 설, 추석, 국군의 날 지급 특식 소요
특수근무자증식 : 특수근무자에게 지급하는 증식 소요
기초훈련장병증식 : 기초훈련장병에게 지급하는 증식 소요
환자치료증식 : 군 병원 환자에게 영양 보충을 위하여 지급하는 증식
영내자증식 : 월 9회 사병에게 지급하는 증식
생일특식 : 영내대기 하사 이하 장병 대상으로 생일에 지급하는 특식
군외급식보조 등 기타 : 격오지 등 소규모부대 현지 부식구매 및 영외급식에 따른 부족소요 확보 등

4) 기초훈련장병은 기초훈련병(일반병사), 사관생도, 부사관훈련병 등을 포괄하는 의미이다.

5) 예산코드: 일반회계 1231-301

나. 분석의견

장병의 체력보강 등을 위해 편성된 기초훈련병 증식비 일부를 국방부 내부 방침에 따라 기본급식으로 조정하는 것은 절차상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국방부 급식방침」은 2014년부터 기초훈련장병 중 기초훈련병에 대해서는 증식비 1,000원 중 300원을 기본급식으로 조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급식정책을 결정하는 전군급양관계관 회의 결과, 고된 훈련을 하는 기초훈련병에게 간식보다는 질 좋은 급식을 제공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증식비 중 300원을 기본급식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14년부터 기초훈련병 증식비 1,000원 중 300원을 기본급식 사업으로 조정하여 왔으며, 2016년에는 13억 9,600만원을 조정하였다.

[기초훈련병 증식비 조정 현황]

(단위: 원(1인 1일))

구분		편성시	집행시
기초훈련병	기본급식	7,334	7,634
	증식	1,000	(300) 700
기초훈련병 외 모든 장병	기본급식	7,334	7,334
	증식	1,000	1,000

자료: 국방부

그러나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친 증식비 일부를 국방부 내부 방침에 따라 기본급식 사업으로 조정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기초훈련병에게 제공하는 기본급식 단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초훈련병 급식단가를 인상하여 예산을 편성한 후 국회의 심의 과정 등을 거쳐 집행할 필요가 있다.

2-2. 민간조리원 운영 내실화 노력 필요

가. 현 황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⁶⁾은 민간조리원(기간제근로자)을 채용하여 장병에게 제공하는 급식의 맛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동 사업을 1996년부터 실시하였으며, 2016년 12월 말 기준 총 1,767명이 민간조리원으로 근무 중이다.

국방부는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297억 4,000만원 중 295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9,600만원을 불용하였다.

[민간조리원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민간조리원운영	29,740	29,740	0	0	29,740	29,544	0	196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민간조리원의 처우개선 노력을 통해 민간조리원의 운영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 민간조리원은 각 군 부대에서 직접 채용하고 있는데, 자격기준이 나이, 공무원 결격 사유 해당 여부 등 일반적인 사항에 그치고 있으며 영양사·조리사 자격증 소지 등은 우대사항으로만 규정하고 있다.⁷⁾

국방부가 2016년 8월 조사한 민간조리원의 조리사 자격증 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721명 중 36.3%인 624명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6) 예산코드: 일반회계 1231-305

7) 민간조리원 자격기준(출처: 육군 제 0000부대 민간조리원 채용 공고 사례)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신원조회결과 이상이 없는 자
- 영양사,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 / 식당, 조리업무 유경험자 우대
- 연령은 18세 이상 ~ 만 57세 미만인 여성
- 신체건강하고 용모단정한 자
- 임무수행에 제한이 없는 장애인 우대(장애인 고용촉진법률에 의거)
- 응시지역 근무가능하며, 자체 출퇴근이 가능한 자

[민간조리원 조리사 자격증 보유 현황]

(‘16년 8월 기준, 단위: 명, %)

구분	인원	조리사 자격증 보유	비율
육군	1,517	562	37.0
해군	63	24	38.1
공군	41	15	36.6
해병대	100	23	23.0
합계	1,721	624	36.3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현재 민간조리원에게 최저임금⁸⁾이 지급되고 있고 별도로 교통비, 격오지 수당 등이 존재하지 않아 조리사 자격증 소지자의 지원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회가 과거 결산 심사 시 국방부에 대해 민간조리원에 대한 처우개선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⁹⁾하였으나, 현재까지도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국방부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방부는 급식의 맛을 개선하기 위하여 민간조리원을 운용하고 있는데, 2015년 급식만족도 조사 결과 ‘급식의 질’ 부문이 100점 만점 중 56.7점에 불과하자 ‘급식의 질’ 개선을 최우선 과제로, ‘음식의 맛’ 개선을 최우선 세부 과제로 선정하였으나, 2016년 최우선 세부 과제였던 음식의 맛은 53.3점을 받아 오히려 2015년(54.0점) 대비 점수가 하락하였다.

[급식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부문	2015년	2016년
급식의 질	56.7	58.9
음식의 맛	54.0	53.3
음식 온도 적정성	64.0	66.9
음식 분량 적정성	52.9	58.7
메뉴의 다양성	54.2	57.1
음식의 간	56.6	55.6

자료: 국방부

따라서 민간조리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전문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급식의 맛을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장병의 급식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동 사업의 목적에 부합할 것이라 판단된다.

8)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9) 2014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국방부에게 격오지 등의 민간조리원 채용실적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정요구 하였다.

가. 현 황

국방부는 국군인쇄창, 육군2보급창, 국군수도병원, 국군의학연구소 등 총 18개¹⁾의 군 책임운영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 예산현액 1,082억 6,300만원 중 1,036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8억 5,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7억 6,400만원을 불용하였다.²⁾

[군 책임운영기관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책임운영기관 운영	104,293	104,293	3,670	0	108,263	103,642	1,857	2,764

자료: 국방부

군 책임운영기관은 전투 및 작전 분야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비, 보급, 인쇄 등 비 전투 분야의 부대장 직위에 군 내·외부의 적임자를 채용하여 일정 기간 조직 및 인사와 재정상의 자율권을 가지고 조직을 운영하게 한 후, 그 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군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일정부분 자율성이 부여된 만큼 그에 부합하는 집행의 적정성 검토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 분석의견

군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예산 집행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국군인쇄창, 육군2보급창, 해군보급창, 국군수도병원, 육군3보급창, 해군1함대정비대대, 공군83정비창, 공군82정비창, 육군의학연구소, 해군정비창, 국군대전병원, 해군2함대정비대대, 육군종합정비창, 해군3함대정비대대, 공군종합보급창, 합동상호응용성기술센터, 육군1보급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2) 예산코드: 일반회계 3700

첫째, 편성 비목에 부합하지 않는 예산 집행이 발생하였다.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피복비(210-03)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근무 시 필요한 제복 등이 아닌 경우에는 일반수용비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군제83정보통신정비창은 제복으로 보기 어려운 창설기념 단체복을 제작하기 위하여 피복비 800만원을 집행하였다.

또한, 포상금(310-03)은 법령에 의하여 반대급부 또는 채권채무의 원인행위 없이 공무원 또는 기관에 대하여 급여하는 포상금, 상여금 및 상금을 의미함에도 공군제82항공정비창은 한국표준협회 연회비 150만원을 포상금으로 집행하였다.

아울러 급량비(210-04)는 의경, 재소자 및 유치인 등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나, 공군제82항공정비창은 ‘도시락 데이 행사’에 사용될 도시락을 구매하기 위하여 급량비 350만원을 집행하였다.

[군 책임운영기관 비목 부적정 집행 현황]

(단위: 만원)

책임운영기관	내역	비목	집행액
공군83정비창	창설기념 단체복 제작	피복비	800
공군82정비창	한국표준협회 연회비 지급	포상금	150
	도시락 데이 행사용 도시락 구매	급량비	350

자료: 국방부

둘째, 연말에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사항이 있었다.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요불급한 일상적·경상적 경비로 사용하는 것을 지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군인쇄창과 국군대전병원은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하여 12월 30일에 각각 2,000만원,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는 사무용의자, 텔레비전, 데스크탑 등의 구매를 위하여 12월 15일 이후 3,700만원을 집행하는 등 연말에 불가피한 상황으로 예산을 집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군 책임운영기관 연말 집행 주요 현황]

(단위: 만원)

책임운영기관	내역	비목	집행액	집행시기
국군인쇄창	작업용 의자, 책상 등 구매	자산취득비	2,000	12월 30일
공군83정비창	LED평판등 구매	자산취득비	2,200	12월 29일
국군대전병원	탁자, 의자 구매	자산취득비	1,600	12월 30일
합동상호운용성기술센터	사무용의자, 텔레비전, 데스크탑 등 구매	자산취득비	2,500	12월 29일
공군82정비창	대회의실 테이블 및 의자교체	자산취득비	1,300	12월 29일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시계 등 물품 구매	일반수용비	800	12월 30일
해군2함대정비대대	볼펜 등 사무용품	일반수용비	1,200	12월 30일

자료: 국방부

따라서 군 책임운영기관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국방부는 군 책임운영기관의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미조달된 방탄복 등의 조속한 확보 필요

가. 현 황

특수피복 사업¹⁾은 특수업무수행자의 전투임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탄복, 방탄헬멧, 항공피복, 특전피복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특수피복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1,493억 8,800만원 중 1,140억 4,4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3억 7,0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9억 7,400만원을 불용하였다.

[특수피복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특수피복	139,003	139,003	9,127	1,258	149,388	114,044	10,370	24,974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특수피복 중 연내에 조달되지 않은 방탄복, 방탄헬멧 셸(shell), 방탄헬멧 부유대 조립체²⁾를 조속히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다목³⁾과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94조제4항 및 제6항⁴⁾은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국산화)개발하여 시험평가를 충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241-302

2) 방탄헬멧 부유대 조립체는 방탄헬멧 내부에 머리가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의미한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 군용규격물자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족하는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해 수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방탄복, 방탄헬멧 셀, 방탄헬멧 부유대 조립체의 시험평가를 충족한 업체와 2012년도부터 수의계약으로 조달하여 왔으나, 해당업체가 2014년 성능이 낮은 방탄복으로 계약을 실시한 것 등이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져 2016년 3월 연구개발 확인이 취소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국방부는 계약방법 검토 및 타 업체 생산능력 확인 등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2016년 8월 연내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을 중단하였고, 그 결과 방탄복 3만 5,543개, 방탄헬멧 셀 5만 65개, 방탄헬멧 부유대 조립체 6만 2,166개가 조달되지 못하였다.

[2016년 방탄복, 방탄헬멧 셀, 방탄헬멧 부유대 조립체 조달 현황]

(단위: 개, 원)

구분	조달 예정 수량	단가	조달 결과
방탄복	35,543	773,765	미조달
방탄헬멧 셀	50,065	168,564	미조달
방탄헬멧 부유대 조립체	62,166	25,972	미조달

자료: 국방부

방탄복과 방탄헬멧 등은 특수임무 수행 시 꼭 필요한 물품이라는 점에서 국방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물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동 사업과 같이 특정 물품을 연구개발 등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조달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물품이 보급되지 못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방위사업관리규정」 제694조 ④ 군용규격물자에 있어서 관련규정에 의한 연구(국산화)개발 절차를 거쳐 시험평가 결과가 충족되고 국방규격이 제정된 단일 업체 생산품목에 대하여는 소관기관에서 발행한 연구개발확인서를 구비하여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연구개발 완료 후 계약연수 기준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가. 현 황

탄약정비사업¹⁾은 재래식탄약 및 유도탄약 정비를 통한 탄약 수명 증가 및 성능보강으로 탄약지속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탄약정비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817억 2,400만원 중 736억원을 집행하였고, 60억 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1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탄약정비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탄약정비사업	76,480	76,480	5,309	△65	81,724	73,600	6,006	2,118
시험연구비	342	342	0	0	342	246	0	96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탄약정비사업 내 시험연구비(210-13)²⁾를 활용하여 국방과학연구소를 통해 어네스트존³⁾ 로켓모터 비군사화 처리기술 선행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해 2016년도 예산현액 3억 4,200만원 중 2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9,600만원을 불용하였다.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탄약정비와 관련성이 다소 적은 ‘어네스트존 로켓모터 비군사화 처리기술 선행연구’를 시험연구과제로 선정하였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340-301

2)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험연구비는 국가시험 연구기관 및 방위력 개선사업에서 시험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경비로 ① 일용임금(110-03), ② 일반수용비(210-01), ③ 공공요금 및 제세(210-02), ④ 피복비(210-03), ⑤ 임차료(210-07), ⑥ 연료비(210-08), ⑦ 시설장비유지비(210-09), ⑧ 재료비(210-11), ⑨ 여비(220), ⑩ 연구개발비(260) 등 10개 경비를 통합한 비목이다.

3) 어네스트존은 길이 9.9m, 최대 지름 76cm, 무게 2,140kg, 사정거리 약 38km인 지대지 로켓포이다.

「국가재정법」 제45조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연구개발 및 시험연구 등의 수행 역시 세부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동 사업에서 실시한 시험연구과제는 ‘비군사화’를 주제로 하고 있고, 비군사화는 폐기 탄약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탄약수명 증가 및 성능보강을 목적으로 하는 탄약정비 사업과는 다소 차이가 있으며, ‘비군사화사업⁴⁾’은 별도의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다.

실제 예산 집행 및 예·결산심사는 단위사업이 아닌 세부사업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는 점⁵⁾에서 각 세부사업별로 목적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4) 예산코드: 일반회계 2340-302

5) 「국회법」 제84조제5항에 따른 삭감 세출예산 각항의 금액 증가 및 세비목 설치에 대한 상임위 동의 및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 및 결산 사업설명자료는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운영되고 있다.

가. 현 황

비군사화 사업¹⁾은 탄약의 적체물량을 해소하고 저장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여 매년 발생하는 폐기 대상 탄약을 안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처리하려는 것이다. 국방부는 비군사화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117억 4,900만원 중 49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고, 8,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6억 7,600만원을 불용하였다.

[비군사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비군사화	11,139	11,139	545	65	11,749	4,990	83	6,676

자료: 국방부

2016년 비군사화 사업의 예산이 절반 이상 불용된 것은 육군에서 사용하는 130밀리 다련장 탄약(모타 k30)을 비군사화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예산 62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기 때문이다.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130밀리 다련장 로켓탄 추진기관²⁾의 비군사화를 위하여 내열형 소각시설의 추가 확보를 위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012년 130밀리 다련장 로켓탄 추진기관의 장기 저장에 따른 위험성 증가와 저장공간 부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를 비군사화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결정 당시 국방부에서 운용 중인 탄약 비군사화시설은 소·중구경

조흥연 예산분석관(n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340-302

2) 다수의 로켓탄 발사통이 상자형 또는 원통형으로 배열된 발사기에 들어가는 직경 130mm의 로켓탄 추진기관을 의미한다.

탄약 등만 처리가 가능한 상황으로 추진 장약³⁾과 130밀리 다련장 로켓탄 추진기관 등은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방부는 민간 전문시설에 위탁하여 130밀리 다련장 로켓탄 추진기관을 처리하기로 결정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2015년 계약업체가 탄약 처리 후 발생하는 잔류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2016년 3월 31일까지 잔류물을 처리하도록 계약특수조건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감사원의 감사 결과 계약업체가 2016년 3월 31일까지 잔류물을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고, 이에 계약조건 미이행을 사유로 2016년 9월 최종적으로 계약이 해지되었다.

이에 따라 2012년 이후 연평균 약 1,200톤 수준으로 처리되어 오던 130밀리 다련장 로켓탄 추진기관의 비군사화가 중단되었고, 후속대책으로 국방부는 130밀리 다련장 로켓탄 추진기관을 처리하기 위한 내열형 소각시설 추가 확보를 2018년부터 착수하여 2021년부터 비군사화를 재개할 계획을 수립하였다

[130밀리 다련장 로켓탄 추진기관 비군사화 현황]

(단위: 톤)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130밀리 다련장 로켓탄 추진기관 비군사화	885	1,101	1,490	1,233	0

자료: 국방부

그러나 이 계획에 따르면 매년 1,200톤 수준으로 처리되어 오던 130밀리 다련장로켓탄 추진기관을 5년 동안 처리하지 못하게 되어 장기 저장의 위험성 증가 및 저장공간 확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⁴⁾

따라서 국방부는 향후 내열형 소각시설의 추가 확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130밀리 다련장 로켓탄 추진기관의 비군사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면밀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

3) 포신 내에서 포탄을 앞으로 밀어내는 역할을 하는 화약을 의미한다.

4) 2016년 말 기준으로 처리대상인 130밀리 다련장 로켓탄 추진기관은 총 3,041발이다.

가. 현 황

화생방물자 사업은 화학무기 공격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생방 보호의 등을 구매·보급하기 위한 것으로 화학물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국방부는 화생방물자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40억 4,000만원 중 33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6,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다.

[화학물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화학물자	11,139	11,139	545	65	11,749	4,990	83	6,676
화생방물자	3,985	3,985	93	△38	4,040	3,380	66	595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화생방물자 사업을 통하여 2016년 신형 화생방특수보호의 340벌을 도입할 계획으로 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구형 화생방특수보호의 340벌을 구매하여 1억 6,300만원만 집행하였다.²⁾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신형 화생방특수보호의를 도입하기로 계획하였음에도 구매요구서 수정에 따라 구매가 지연되자 예년과 같이 구형 화생방특수보호의를 구매하였다.

신형 화생방특수보호의는 구형과 달리 유해화학물질(15종)을 추가로 방호할 수 있고, 난연성 재질로 제작되어 생존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손상이 많은 장갑과 장화의 부분 교체가 가능하여 안정성과 내구성을 높였다.³⁾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332-304

2) 집행잔액은 공기호흡기(2억 9,900만원), 예비 실린더(1억 2,800만원) 구매에 활용하였다.

[화생방특수보호의 구형·신형 비교]

구 분	구형	신형
형태	• 상·하의 일체형 * 공기호흡기 외부 착용형 * 장갑·장화 교체 불가능	• 상·하의 일체형 * 공기호흡기 외부 착용형 • 분리형 장갑·장화 * 신제품으로 교체가 가능
주요특징	• 군사용 화학작용제 방호	• 군사용 화학작용제 방호 • 유해화학물질(15종) 방호 • 난연성 재질, 내구성 향상
주요 성능규격 (보호의)	• 국방규격 KDS 8305-0130-2 - 군사용 화학작용제 저항시험 인증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인증 level “A”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기준 인증 • 국방규격 KDS 8305-0130-2 - 군사용 화학작용제 저항시험 인증
주요 성능규격 (장갑)	• 국방규격 KDS 8415-1038 - 군사용 화학작용제 저항시험 인증	• 난연성 내화학장갑(분리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인증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인증 * 국방규격 KDS 8415-1038 - 군사용 화학작용제 저항시험 인증
주요 성능규격 (장화)	• 국방규격 KDS 8430-1010 - 군사용 화학작용제 저항시험 인증	• 난연성 내화학장화(분리형)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KFI인증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인증 * 국방규격 KDS 8430-1010 - 군사용 화학작용제 저항시험 인증
중량	• 2kg(장갑 포함) • 4.2kg(장갑, 장화 포함)	• 6kg 이하 (장화, 장갑 제외/ 크기 ‘L’ 기준)
부수 기재	• 수선용 TAPE 2개 • 운반용가방 1개	• 탈부착에 필요한 수리공구(1SET) • 운반용가방 1개 • 접촉식 천(보호의와 같은 재질) 2개

자료: 국방부

이에 국방부는 2016년부터 신형 화생방특수보호의를 구매하려 하였으나, 구매요구서에 명시한 색상(Olive Green), 재질(부틸), 지퍼길이, 구성품 규격(길이, 두께 등) 등이 특정 업체 제품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고 판단하여 구매요구서를 수정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구매요구서 수정에는 시장조사, 기술검토 등의 절차가 필요하여 장기간이 소

3) 이런 사유로 내구연한(5년)이 구형장비(1년)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방부는 연말까지 구매요구서의 수정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당초 계획과 달리 구형 화생방특수보호의를 도입하였다.⁴⁾

결국 국방부의 신형 화생방특수보호의 구매요구서 작성과정에 있어 준비 미흡으로 성능이 우수한 신형장비 대신 구형장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향후 국방부는 장비 도입 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수행과정에 보다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4) 2016년 9월초 구매요구서에 대해 관련업체의 민원이 제기되자 9월 말 재공고를 실시하여 구형 화생방특수보호의를 11월에 도입하였고, 신형 화생방특수보호의 도입을 위한 구매요구서 수정은 2017년 2월에서야 종료되었다.

가. 현 황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 사업¹⁾은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내에 각 군, 기관별로 분산운영되고 있던 국방정보시스템을 통합·구축하여 국방정보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137억 6,1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국방통합정보관리소 구축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방통합정보 관리소 구축	11,956	11,956	827	978	13,761	13,761	0	0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동 사업은 2015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2016년 예산이 7억 4,000만원 감액되었으나, 조정을 통해 감액된 부분을 증액하여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전문적인 사업관리를 통한 원활한 정보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한국국방연구원에 국방통합정보관리소 사업관리를 위탁하였으며, 1차 사업관리(13억 8,000만원)는 2015년 5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차 사업관리(13억 3,000만원)는 2016년 3월부터 12월까지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2013년 집행률이 30.2%(예산현액 164억 8,700만원 중 49억 8,300만원 집행)에 그쳐 매우 부진²⁾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5년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미흡’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131-306

2) 운영 인프라 구축 시 업체의 생산기간과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집행이 부진하였다.

판정을 받아 2016년 예산이 전년 대비 7억 4,000만원(△5.9%) 감액되었다.

7억 4,000만원은 전액 위탁사업비에서 감액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장기계속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던 위탁사업비가 부족하게 되자 국방부는 불용이 예상되는 ‘정보통신기반체계 구축 사업³⁾’ 예산 9억 7,8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조정하였다.

그러나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사업임에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결과에 따라 예산을 감액한 후, 실제 집행 단계에서는 계약에 따른 지급금 지급을 사유로 부족한 예산을 증액한 것은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재정사업자율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을 감액하는 경우 집행과정에서 조정 등을 통하여 감액된 예산을 증액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3) 예산코드: 일반회계 2131-301

가. 현 황

정보보호 사업¹⁾은 네트워크 중심의 작전환경을 구현하고 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여 국방정보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정보보호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453억 3,500만원 중 394억 6,300만원을 집행하였고, 36억 1,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2억 7,500만원을 불용하였다.

[정보보호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정보보호	43,223	43,223	682	1,448	45,353	39,463	3,615	2,275
사이버 대응	11,562	11,562	69	△140	11,491	9,023	1,933	534
국방사이버안보 대응체계구축	5,500	5,500	0	△102	5,398	3,722	1,592	84

자료: 국방부

정보보호 사업의 내내역 사업인 국방사이버안보대응체계구축 사업은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체계(기술)을 연구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2016년 예산현액 53억 9,800만원 중 37억 2,200만원을 집행하였고, 15억 9,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400만원을 불용하였다.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1년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용역 관련 예산을 연차별로 편성하지 않고 2016년에 전액 배정하였다.

국방부는 2016년 6월 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²⁾가 신설됨에 따라 국방사이버위협정보 능동

조흥연 예산분석관(ris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131-307

수집·대응체계 구축, 국방사이버포렌식 기반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연도 중에 신규³⁾로 추진하였는데, 대부분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국방사이버안보대응체계구축 사업 계약 및 집행현황]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현황	
				계약기간	계약업체
국방 사이버안보 대응체계 구축	5,314	3,722	1,592		
사이버위협정보 능동수집· 대응체계 구축	1,170	819	351	'16.7.29~'17.12.15	국방과학연구소
사이버전 능동대응 개념·전략·전술 연구	300	210	90	'16.7.29~'17.12.15	국방과학연구소
국방 사이버포렌식 기반체계 구축	650	455	195	'16.8.23~'17.12.31	국방과학연구소
무기체계 사이버 보안대책 개념연구 및 시범체계 구축	630	441	189	'16.10.12~'17.12.26	국방과학연구소
C-모의침투(취약점점검) 체계 구축	850	595	255	'16.8.12~'17.12.15	국방과학연구소
빅데이터 기반 C-Aegis 체계 구축	1,028	715	313	'16.12.9~'17.12.8	(주)리눅스테이터스시스템
	154	0	154	'16.11.25~'17.12.8	(주)페타바이트
	45	0	45	'16.12.13~'17.12.8	(주)아이티원
사이버 대침투작전체계 구축	487	487	0	'16.9.1~'16.11.29	(주)대신

자료: 국방부

그런데 이와 같이 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설정하는 경우 2016년도에는 1년차 연구
용역비만 배정하고, 2년차 연구용역비는 2017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합함에도
국방부는 관련 예산을 2016년에 전액 배정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의 사업에서 예산이 이
월되었다.

2)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설립되었다.

3) 국방사이버기술연구센터 설립이 2016년 2월에 결정되어 2016년 예산안 편성 당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였다.

또한, 해당 연구용역들이 중간검수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2017년 12월까지 종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의 재이월 금지 원칙⁴⁾에 따라 잔금을 다시 이월할 수 없어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연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연도별로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집행할 필요가 있다.

4)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가. 현 황

단기국내외시찰 사업¹⁾은 군사교류 확대를 위한 국제회의 및 훈련참가, 사관생도 교환방문 등을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단기국내외시찰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75억 2,000만원 중 72억 3,0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단기국내외시찰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단기국내외시찰	6,966	6,966	0	554	7,520	7,230	0	290
국외업무여비	2,173	2,173	0	157	2,330	2,278	0	52
국제화여비	3,123	3,123	0	397	3,521	3,401	0	120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국제화여비를 조정 절차 없이 국외업무여비로 집행하였다.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외업무여비(220-02목)를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로, 국제화여비(220-03목)를 장·단기 공무원 국외훈련여비, 해외연찬여비 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국외업무여비와 국제화여비를 목적에 맞게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화여비를 업무수행관련 여비 등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외업무여비로 조정한 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제예비전력협의 등 정기회의 참석, 한-미 안보지원회의, 다국적 합동실험참가 회의, 참모총장 군사외교활동 등 업무수행관련 여비를 조정 절차 없이 국외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439-303

업무여비가 아닌 국제화여비로 총 8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예산 비목의 용도에 맞게 구분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비목변경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집행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사업은 현역병이 휴가, 외출, 외박 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국방부가 공단부담금을 대신 납부하는 것으로, 진료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이다. 국방부는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564억 7,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진료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진료지원	52,399	52,399	49	21,176	73,624	72,930	520	173
현역병 건강 보험부담금	34,922	34,922	0	21,556	56,478	56,478	0	0

자료: 국방부

현역병이 민간병원 진료 후 본인부담금을 민간병원에 납부하면, 민간병원은 건강보험 공단에 공단부담금을 청구한다. 이후 건강보험공단은 민간병원에 공단부담금을 지급한 후 국방부에 공단부담금의 정산을 요청하면 국방부는 이를 정산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된다.

나. 분석의견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동 사업으로의 대규모 이·전용 등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사업의 집행액을 살펴보면, 2013년 집행액은 309억 7,300만원에 불과하였으나,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건수가 급증함에 따라 2016년의 경우 2013년 대비 82.3% 증가한 564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231-301

이와 같이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이 급증하고 있으나 예산액이 이에 미치지 못해 따라 2015년과 2016년에 다른 세부사업으로부터 각각 232억 4,800만원과 215억 5,600만원의 대규모 이·전용 등이 발생하였다.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이·전용 등	집행액	민간병원 이용 현황(건)
2013년	30,770	203	30,973	1,025,851
2014년	33,589	0	33,589	1,310,097
2015년	33,343	23,248	56,591	1,168,173
2016년	34,922	21,556	56,478	1,414,360

자료: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최근 병영문화혁신 등으로 현역병이 민간병원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문화가 군 내에 조성되었고, 병사들이 민간의료기관을 군 병원보다 선호하는 이유 등으로 현역병 건강보험부담금이 증가하였다고 설명한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국방부는 현역병의 민간병원 이용 수요 예측을 보다 정확히 하는 한편, 현역병이 민간병원 이용을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장기적으로 군 병원에 대한 신뢰회복을 위한 장비보강 및 의료진의 전문성 제고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가. 현 황

복지시설운영 사업¹⁾은 마트, 복지회관, 체육단련장 등 군 복지시설 운영을 위한 재료비, 공공요금 및 제세,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의 비용이다. 국방부는 복지시설운영 사업의 2016년도 계획현액 2,684억 9,400만원 중 2,546억 3,000만원을 지출하였고, 4억 5,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34억 900만원을 불용하였다.

[복지시설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복지시설운영	266,216	266,216	2,278	268,494	254,630	455	13,409
포상금 (310-03)	3,902	3,902	0	3,730	3,640	0	90

자료: 국방부

동 사업 중 포상금은 마트 관리관과 판매원 점장²⁾에 대한 영업활동포상금, 예산성과금, 우수기관포상금 등으로 국방부는 계획현액 37억 3,000만원 중 36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000만원을 불용하였다.

나. 분석의견

국방부가 마트 관리관과 판매원 점장에게 지급하는 영업활동포상금은 지급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며, 급여를 보전하는 형식으로 지급되고 있어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국방부는 2016년 포상금 전체 계획현액의 92.3%에 해당하는 34억 4,200만원을 영업

조흥연 예산분석관(n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군인복지기금 2237-641

2) 마트 관리관은 4~5곳의 마트를 관리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마트 관리관이 관리할 수 없는 격오지 등의 마트는 판매원 점장을 두어 마트를 관리한다.

활동포상금으로 집행하였고, 마트 관리관 419명과 판매원 점장 86명에게 매월 평균 53만원이 지급되었다.³⁾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지급근거가 법령에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영업활동포상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포상금은 그 취지상 업무 성과 등이 탁월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어야 하는데, 영업활동포상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마트 관리관 및 판매원 점장의 급여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마트 관리관 및 판매원 점장은 국방부가 채용한 민간근로자인데 이미 업무 성과 평가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매년 1회 이상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로 영업활동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성과금을 중복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마트 관리관 및 판매원 점장 봉급체계]

구분	항목
보수(매월 지급)	본봉, 직무수당, 업적급, 정액급식비(통상임금)
법정 수당(매월 지급)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
성과상여금(연 1회 지급)	시설별 업무 성과 평가에 기초하여 차등 지급

자료: 국방부

3) 영업활동포상금은 마트별 영업실적, 고객만족도, 관리상태 등을 분기별로 종합평가하여 차등 지급한다.
(최대 26% 차이)

가. 현 황

전직지원교육 사업¹⁾은 의무복무기간 이상 근무한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들에게 사회 적응능력 향상 및 사회진출에 필요한 전문기술 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전직교육원²⁾에서 실시한다. 국방부는 전직지원교육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37억 3,000만원 중 37억 1,4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 중 36억 8,000만원은 국방전직교육원에 대한 보조금이다.

[전직지원교육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직지원교육	3,730	3,730	0	0	3,730	3,714	15	1
민간경상보조금	3,680	3,680	0	0	3,680	3,680	0	0

자료: 국방부

국방전직교육원은 전년도 이월액 7억 9,500만원을 포함한 2016년도 예산현액 44억 7,500만원 중 38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5,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억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방전직교육원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시행주체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국방전직교육원	3,680	795	4,475	3,805	552	118

자료: 국방부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사업코드: 일반회계 2234-301

2) 국방전직교육원은 국방부방침에 따라 전역예정간부들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일에 경기도 성남시에 개원하였으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등 전역예정간부들을 대상으로 구인처개발, 취업정보 제공, 취업상담 등 취업지원활동과 진로설계, 단체교육, 주문식교육 등 맞춤형 취업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직지원교육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을 신규 사업인 군 복무설계교육 시범사업 용도로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군 복무설계교육 사업은 군복무 중인 초급간부에게 성공적인 군 복무설계를 포함한 인생전반에 걸친 인생설계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에 국방전직교육원은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 중 1억 730만원을 활용하여 군 복무설계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12월말에 계약을 체결하여 관련예산 전액(1억 730만원)을 이월하였다.

이와 같이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예산편성 시 계획되지 않았던 신규 사업을 연말에 추진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이월하는 것은 적절한 집행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보조기관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잔액으로 연말에 신규 사업을 수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¹⁾은 무등산 정상에 주둔하고 있는 방공포대를 광주광역시의 요구에 따라 이전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15억원 전액을 불용하였다.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1,500	1,500	0	0	1,500	0	0	1,500

자료: 국방부

광주광역시는 2014년 3월 국방부에 무등산 방공포대의 이전을 요청하였으나, 국방부가 이에 응하지 않자 2015년 5월 재요청하였고 국방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2016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2016년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예정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할 목적으로 기본조사설계비 15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하였는데, 이는 이전예정지가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등산 방공포대의 이전예정지는 먼저 광주광역시에서 이전후보지를 선정한 후 합동 참모본부와 공군이 해당 지역의 작전수행여건에 대해 검토하여 결정된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131-457

이에 광주광역시는 이전후보지 선정 작업을 진행 중이나,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

특히 국방부는 2017년에도 사업 진행을 위하여 2016년과 동일한 내역으로 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3월로 예정되었던 이전후보지 선정이 재차 연기되면서 현재까지도 집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방부는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사업 예산이 연례적으로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펴 예산을 편성하는 한편, 광주광역시와 협의하여 이전후보지가 조속히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황금박쥐 사업¹⁾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합의각서에 의해 서울시에 있는 정보사령부를 안양시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4,251억원 규모이다. 국방부는 황금박쥐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122억 3,100만원 중 76억 4,600만원을 집행하였고, 5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0억 8,400만원을 불용하였다.

[황금박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황금박쥐	20,874	20,874	3,969	△12,612	12,231	7,646	502	4,084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0	0	0	1,595	1,595	1,595	0	0

자료: 국방부

정보사령부는 2001년부터 이전을 시작하여 2015년 11월 부대이전을 완료하였으나, 부대이전에 따른 기반시설 공사와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한 보상·대책마련 등의 사업이 2019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자치단체 대행사업비 중 빌라 철거 관련 예산 9,400만원을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교부(11월)하여 지자체에서 관련예산이 전액 이월되었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로의 진입도로 공사현장 근처의 소음 및 분진대책과 공사로 인하여 안전성에 위험이 발생한 빌라의 철거 및 보상을 위하여 건설비(420목) 중 15억 9,500만원을 자치단체 대행사업비(330-04목)로 전용하여 전액을 지자체에 교부하였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131-351

지자체는 교부된 15억 9,500만원 중 9억 5,000만원을 집행하고 6억 4,500만원은 이월하였는데, 이 중 빌라 철거 관련 예산은 9,400만원 전액이 이월되었다.

[지자체대행사업비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1,595		0	1,595	950	645	0
빌라 철거	94	0	94	0	94	0
소음 및 분진대책	1,501	0	1,501	950	551 ²⁾	0

빌라 철거 사업은 진입도로 확장사업과 관련하여 도로 주변 빌라 2개동의 안전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주 및 보상이 완료된 후 빌라를 철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관련 예산은 주민의 이주 및 보상이 완료되어야 집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총 16세대에 대한 소유권 이전과 보상이 완료되기 전에 철거 예산을 교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는 전액을 이월하였다는 점에서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된다.³⁾

따라서 향후 국방부는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토 후 예산을 교부함으로써 지자체에서 예산이 과도하게 이월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소음 및 분진대책 사업은 공사기간 부족에 따라 이월되었다.

3) 참고로 2017년 5월 현재까지도 보상 및 이주가 완료되지 않아 철거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전체 16세대 중 2세대 미완료)

가. 현 황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사업¹⁾은 40년 이상 경과된 국방부 별관의 설비 교체, 보수 보강 등을 위한 것으로, 2012년부터 실시되어 2016년 4월 종료되었다. 국방부는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일반지원시설 사업²⁾으로 조정한 130억원 등을 제외한 예산현액 78억 7,500만원 중 70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 4,1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19,283	19,283	1,807	△13,215	7,875	7,019	16	841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각 세부사업의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상호 조정하여 집행하였다.

국방부는 2015년 일반지원시설 사업의 내역사업인 서북도서 요새화 2단계 사업이 2015년 3월 공사계약을 하였음에도 도서지역인 관계로 지역 하도급 업체 선정 등에서 지연이 발생하자 130억원을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조정하였다.

그런데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사업은 2014년 집행부진을 이유로 국회의 2015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감액³⁾된 사업이었고, 이와 같이 국방부가 국회 심사 시 감액한 사업을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2533-308

2) 예산코드: 일반회계 2533-303

3) 동 사업은 2014년 예산현액 153억 3,000만원 중 50억 9,500만원만 집행하고 101억 2,900만원을 이월하여 2015년 예산안 100억원 중 50억원이 감액되었다.

집행 과정에서 조정 증액한 것에 대해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주의⁴⁾를 받았다.

그런데 국방부가 2015년에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당초 편성된 예산보다 130억원을 초과 집행한 사항이 시기상 2016년 예산안 편성 및 심사 과정에 반영될 수 없었기 때문에 2015년 초과 집행분 감액 없이 당초의 연도별 계획에 따라 2016년 예산이 편성되었고, 결과적으로 130억원이 과다 편성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국방부는 2016년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사업비 중 불용이 예상되는 130억원을 2015년 당시 동 사업으로 130억원을 조정한 일반지원시설 사업으로 재조정하였다.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단위사업-세부사업)	목-세목 코드
2015년	일반지원시설 (2533-303)	420-03	13,000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2533-308)	420-03
2016년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 (2533-308)	420-03	13,000	일반지원시설 (2533-303)	420-03

자료: 국방부

그러나 이와 같이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세부사업 간 예산을 상호 조정하는 것은 연도별 계획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적절성에 대해 검토하여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 국회의 심의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4) 「2015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46) 국방부 별관 리모델링(국회감액) 사업의 부적절한 예산 증액 조정 (p792)

- 해당 사업은 집행을 부진 등의 사유로 국회 예산안 심사시 50억원으로 감액되었으나, 국방부는 서북도서 요새화 사업에서 130억원을 자체 조정하여 증액 집행하였는 바,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함.

가. 현 황

국방홍보원 기본경비¹⁾ 사업은 국방홍보원 기관운영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제반 운영비로, 국방홍보원은 국방홍보원 기본경비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9억 5,800만원 중 9억 5,500만원을 집행하였고,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국방홍보원 기본경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국방홍보원 기본경비	958	958	0	0	958	955	0	3
일반수용비	129	129	0	30	159	159	0	0
임차료	333	333	0	△25	308	308	0	0

자료: 국방부

국방홍보원은 시설유지 사업 내 편성된 정보시스템 교체관련 임차료 3억 3,300만원 중 3억 8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500만원을 일반수용비로 자체 조정하여 집행하였다.

나. 분석의견

국방홍보원은 집행지침을 위반하여 정보화사업 낙찰차액을 컨설팅 사업과 이벤트 추진 등에 집행하였다.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정보화사업²⁾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3118-251

2) 「2016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효율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해당기관의 정보시스템을 기획·구축·운영·유지보수하기 위한 사업을 의미한다.

불용 처리하고, 보안강화·감리비·조달수수료를 지원하는데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홍보원은 정보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2,500만원을 ① 대내외 고객 유형화로 매체별 소통전략 도출을 위한 컨설팅 용역사업(2,000만원)과 ② 차별화된 홍보기획으로 신규고객 창출 등을 위한 이벤트 추진(500만원)에 집행하였다.

[국방홍보원 낙찰차액 집행 현황]

(단위: 만원)

구분	목	집행액
대내외 고객 유형화로 매체별 소통전략 도출을 위한 컨설팅 용역사업	일반수용비(210-01)	2,000
차별화된 홍보기획으로 신규고객 창출 등을 위한 이벤트 추진	일반수용비(210-01)	500

자료: 국방부

컨설팅 용역사업과 이벤트 추진 등은 집행지침에서 규정한 보안강화·감리비·조달수수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국방홍보원은 정보화사업 낙찰차액과 관련하여 집행지침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제39조 및 제39조의2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군인연금기금으로 국가부담금과 보전금을 전출하고 있다.¹⁾ 2016년 예산액은 국가부담금 1조 327억 7,300만원과 보전금 1조 3,665억 3,700만원 등 2조 3,993억 1,000만원이며 전액 집행하였다.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보전금의 규모는 1995년 5,002억 1,000만원에서 연 평균 5.1% 증가하여 2016년 1조 3,665억 3,700만원로 증가하였다.

나. 분석의견

군인연금 보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타 직역연금과 비교하여 기여금 대비 연금수급액이 높아 국가 재정부담의 증가, 직역연금제도 운영의 형평성 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6년 1조 3,665억 3,700만원인 보전금의 규모는 연평균 4.8% 증가하여 2045년에는 5조 4,567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현재 국방부가 추진 중인 간부증원계획을 반영한다면 보전금 규모가 확대되어 재정에 더욱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²⁾

[군인연금의 연도별 일반회계전입금 현황]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2015	2016
일반회계전입금	2,166,391	2,258,052	2,329,600	2,332,718	2,399,310
국가부담금	916,442	888,864	956,317	989,623	1,032,773
보전금	1,249,603	1,369,188	1,373,283	1,343,095	1,366,537

자료: 국방부

이미연 예산분석관(myilee@assembly.go.kr, 788-4646)

1) 「군인연금법」 제39조의2(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2) 국방부는 2015~2019 중기계획에 계획된 간부증원만을 반영하고, 2020~2024년까지 간부증원은 추계에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을 2020년까지 9%로 확대하고 연금수급시기를 연장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나 군인연금은 기여율을 7%로 유지하고 연금도 퇴역 후 익월부터 수급할 수 있다. 그 결과, 군인연금의 1인당 기여금 납부액은 연간 302만원이고 1인당 퇴직연금월액은 255만원인 반면, 공무원연금의 1인당 기여금 납부액은 연간 385만원이고 1인당 퇴직연금월액은 233만원이다. 즉, 군인연금 가입자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더 적은 기여금을 내고도 더 많은 퇴역연금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비교: 2016년]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기여금	납부자 수	182,721명	1,107,972명
	기여금 수입	5,510억 8,700만원	4조 2,614억 1,200만원
	1인당 기여금	302만원	385만원
퇴직연금	수급자 수	67,586명	396,743명
	퇴직연금 지급	2조 679억 2,100만원	11조 1,059억 500만원
	1인당 퇴직연금월액	255만원	233만원

자료: 국방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이와 같이 군인연금 보전금 규모 증가, 공무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 대비 낮은 기여율 및 높은 연금수급액 등으로 국가 재정 및 연금제도 운영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국방부는 계급별 연령정년에 따라 조기퇴직이나 재취업이 어려워 직업안정성이 낮은 군인의 특징과 생명을 담보로 임무를 수행한 군인에게 보상적 성격을 갖는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³⁾

따라서 군인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되, 국가 재정부담을 최소화하고 직역연금제도의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3) 계급별 연령정년은 대령 56세, 중령 53세, 소령 45세, 대위 43세, 준위 55세, 원사 55세로 60세 정년을 유지하고 있는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 4~17년 앞서 퇴직하게 된다.



병무청

1

현 황

가. 총수입·총지출 결산

2016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16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6,500만원(33.7%)이 증가한 2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1억 4,700만원(92.4%)이 감소하였다.

[2016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3,405	193	193	258	65	△3,147

자료: 병무청

2016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81억 8,700만원(4.0%)이 감소한 1,961억 7,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2억 9,800만원(2.2%)이 증가하였다.

[2016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2015 결산액(A)	2016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액 (C)	추경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 산	191,880	204,365	204,365	196,178	△8,187	4,298

자료: 병무청

나. 세입·세출 결산

2016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억 9,300만원이며, 5억 3,7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5,800만원을 수납하고 2억 7,8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16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입 예산현액 (A)	징수 결정액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93	193	193	537	258	278	0	133.7

자료: 병무청

2016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045억 9,000만원이며, 이 중 95.9%인 1,961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고, 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4억 8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16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세출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04,365	204,365	204,590	196,178	4	8,408	95.9

자료: 병무청

병무청의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병무행정정보화사업이 있다. 병무행정정보화사업은 사무용 전산장비 교체로 인한 수리부속 등 유지관리 비용 감소를 고려하여 2,600만원 감액(91억 1,100만원 → 90억 8,500만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징병검사 사업, ② 병역의무자지원 사업이 있다. 징병검사 사업은 노후 병역판정검사 장비 교체를 위하여 3억 4,000만원이 증액(85억 8,300만원 → 89억 2,300만원)되었고, 병역의무자지원 사업은 교통비 단가 인상 및 입영적체해소를 위한 현역병 충원규모 증가로 17억 200만원이 증액(278억 8,000만원 → 295억 8,200만원)되었다.²⁾

1) 국방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5.10.
국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2) 국방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5.10.
국회,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15.12.

병무청은 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병역처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② 보충역 복무자에 대한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 강화**, ③ 징집·모집 등 **군 소요 적정충원 및 병력동원 업무 수행**을 2016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16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병무청은 보충역 소집 적체 문제 해소를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인원 수가 사회복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되는 인원 수 보다 많아 보충역 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병무청은 보충역 자원 증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보충역이 근무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수요를 발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병무청은 국외체재 인력에 대한 현지책임관의 원격실태조사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은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원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현지책임관의 경우 전체 37명 중 24명(64.9%)만 응답하여 응답률이 다소 낮은 상황이다. 국외에 체류하는 인원들을 모두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고려하였을 때 현지책임관을 통한 조사는 복무점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현지책임관이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보충역 대상자 증가에 따른 소집 적체 해소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2016년 신체검사를 받은 입영대상자 중 현역병과 보충역은 각각 30만 9,153명, 7만 2,409명이다. 그런데 최근 5년간의 추세를 살펴보면 현역병의 경우 2012년 35만명에서 2016년 31만명으로 감소($\Delta 11.7\%$)한 반면, 보충역의 경우 2012년 2만 7,497명에서 2016년 7만 2,409명으로 대폭(163.3%) 증가하였다.

[입영대상자 신체검사 결과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현역	350,276	87.6	352,556	87.9	349,020	86.3	330,006	80.4	309,153	75.7
보충역	27,497	6.9	25,975	6.5	28,916	7.1	55,237	13.5	72,409	17.7
면제	10,877	2.7	10,732	2.7	12,531	3.1	11,612	2.8	13,114	3.2
재신체검사	11,170	2.8	11,683	2.9	14,102	3.5	13,533	3.3	13,805	3.4
합계	399,820	100	400,946	100	404,569	100	410,388	100	408,481	100

자료: 병무청

이와 같이 보충역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현역병 입영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병무청의 정책 변화에 기인한다. 병무청은 현역병 입영 적체가 사회 문제시 되자 2015년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개정하여 질병 및 심신장애 평가기준을 강화¹⁾하였고, 이에 따라 보충역 입영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ekite@assembly.go.kr, 788-4639)

- 1) 평가기준을 강화하였다는 것은 과거에는 현역병 입영대상이었던 일부 기준이 보충역 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신체검사 시 현역병 입영대상으로 판정받기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주요 개정현황(2015.10.19.)]

과 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신장 · 체중	BMI 지수 ²⁾	저체중 16 미만, 과체중 35 이상	저체중 17 미만, 과체중 33 이상
내 과	고혈압	수축기 180 이상/ 이완기 110 이상	수축기 160 이상/이완기 90 이상 또는 이완기 100 이상
피 부 과	아토피성 피부질환	전체 표면의 30% 이상	전체 표면의 15% 이상
정형외과	척추측만증 ³⁾	25°	20°
안 과	굴절이상[근시]	-12.00D	-11.00D

주: 예를 들어 BMI 지수가 16~17인 경우 과거에는 현역병 판정을 받았으나, 현재는 보충역 대상자 판정을 받게됨.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병무청은 보충역 자원의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은 보충역으로 판정된 인원을 사회복무요원(과거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하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여 군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보충역으로 판정받는 인원이 사회복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 활용되는 인원보다 많아 보충역 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보충역 자원 현황]

(단위: 만명)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보충역 대상자(A)	6.0	6.5	8.5	9.8	10.7	11.2
사회복무요원 소집 등(B)	3.8	3.6	4.5	4.8	5.1	5.3
보충역 자원(A-B)	2.2	2.9	4.0	5.0	5.6	5.9

주: 2017년부터는 예상인원

자료: 병무청

2) 체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눈 값(체중(kg)/신장(m)²)으로 비만도 판정에 주로 사용한다. 신체지수에 의한 비만의 분류는 정상 : BMI 20~25, 과체중(1도 비만) : BMI 25~29.9, 비만(2도 비만) : BMI 30~40, 고도비만 : BMI 40.1 이상을 말한다.

3) 척추측만증에 의해 척추의 휘어짐 각도가 20도보다 작으면 3~4개월마다 정기적인 관찰이 필요하고, 20~40도는 보조기를 착용하는 치료가 필요하며, 40도 이상인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2014년 기준 2만 2,000명 수준이던 보충역 자원은 2016년말 4만명 수준으로 확대되어 2년 사이 81.8%가 증가하였으며, 2019년에는 5만 9,000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보충역 자원의 소집 적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요원으로의 소집인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인원이 보충역 판정인원 증가 수준 이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복지요원의 경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게 되는데,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하여 근무 인원 수를 보충역 대상자만큼 증가시키지 못하고 있다.

[사회복지요원 근무 현황]

(단위: 명)

연 도	2014년	2015년	2016년
지방자치단체	21,191	21,893	21,685
국가기관	5,207	5,157	5,215
공공단체	7,322	8,272	9,270
복지시설	11,187	13,029	15,790
합 계	44,907	48,351	51,960

자료: 병무청

또한, 산업기능요원⁴⁾의 경우도 보충역 판정 인원 증가에 따라 2016년 보충역 대상 배정 인원을 전년 대비 4,500명 증원한 9,000명으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편입인원은 5,746명에 그쳤다.

특히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인원이 매년 배정인원을 하회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병무청은 산업기능요원은 보충역 판정자가 본인의 자유회사에 따라 지원하는데, 주로 제조업 분야에서 복무하여 사회복지요원에 비해 업무 강도와 위험성이 높아 지원율이 낮다고 설명하고 있다.

4) 산업기능요원은 현역병 대상자와 보충역 대상자로 구분하여 편입되고 있다.

[산업기능요원(보충역 부분) 편입 현황]

(단위: 곳, 명)

구분	업체 수	배정인원	편입인원
2013년	5,831	3,000	2,771
2014년	5,892	4,000	3,096
2015년	6,237	4,500	2,968
2016년	6,781	9,000	5,746

자료: 병무청

이러한 보충역 자원 충원 과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병무청이 현역병 입영적체의 해소를 위하여 보충역 판정 인원을 증가시켰음에도 그 대상자들이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적기에 마련하지 못함에 따라 보충역 자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병무청은 보충역의 자원 확대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보충역이 근무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하고 수요를 발굴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해외 책임관의 원격실태조사 응답률 제고 필요

가. 현 황

산업지원인력 사업¹⁾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산업지원인력 제도의 운영 및 복무관리를 위한 것이다. 병무청은 산업지원인력 사업의 2016년도 예산현액 3억 4,900만원 중 3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산업지원인력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산업지원인력	349	349	0	0	349	348	0	1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현역병 필요 인원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의 일부를 병역 지정업체 또는 해운·수산업체에서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승선근무예비역²⁾으로 복무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 12월말 기준 전문연구요원 6,447명, 산업기능요원 20,732명, 승선근무예비역 3,185명 등 총 30,364명이 산업지원인력으로 복무하고 있다.

조홍연 예산분석관(nise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434-309

2) 승선근무예비역은 항해사·기관사 면허 소지자로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 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등을 위하여 해운·수산업체에 승선근무하면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2016년 산업지원인력 복무 현황]

(단위: 개소, 명)

구분	지정 업체 수	복무인원
전문연구요원	1,887	6,447
산업기능요원	6,781	20,732
승선근무예비역	155	3,185
계	8,823	30,364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병무청은 국외체재 인력에 대한 현지책임관의 원격실태조사 응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승선인력을 제외한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은 연구, 업무 등의 목적으로 해외 체류가 필요한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에 따라 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³⁾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1년 이내로 하고 있다.

병무청은 2016년부터 전문연구요원과 산업기능요원이 3개월 이상 국외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 E-mail을 활용하여 원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출·퇴근 근무 상황, 업무수행(연구활동) 내용 등을 파악하고 있다.

원격실태조사는 체재자와 체재자의 현지책임관인 지도교수 또는 관리자에게 실시하고 있고, 현지책임관은 국외여행 허가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산업지원인력을 관리하기 위해 병역지정업체 등이 해당 지역에 있는 사람을 지정하며, 허가 목적에 따라 업무의 출장인 경우 현지직원이, 공동연구인 경우 책임 교수 등이 현지책임관으로 지정된다.

2016년의 경우 원격실태조사 대상에 해당하는 체류 인원은 총 37명인데, 원격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체재자의 경우 전원 E-mail 답변을 하였으나, 현지책임관의 경우 24명(64.9%)만 응답하여 응답률이 다소 낮은 상황이다.

3) 「병역법 시행령」 제87조(교육훈련 및 파견근무 등) ④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이 의무복무기간 중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출장 등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45조와 제147조에 따른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 또는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기간은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1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통틀어 3개월 이내의 국외여행기간은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보되, 전문연구요원이 해당 분야와 관련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 등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국외여행기간은 모두 해당 분야에 복무한 기간으로 본다.

[체재자 및 현지책임관 응답 현황]

(단위: 명, %)

구분	계	응답	미응답	응답률
체재자	37	37	0	100.0
현지책임관	37	24	13	64.9

자료: 병무청

이에 대해 병무청은 일부 현지책임관의 경우 산업지원인력제도에 대한 인식이 대체로 낮아 E-mail 원격 실태조사 시 응답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외에 체류하는 인원들을 모두 직접 조사하는 것은 인력·시간 등의 한계로 어려운 측면이 있고, 당사자인 체재자의 E-mail 답변은 신뢰도가 그리 높지 않을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현지책임관을 통한 조사는 복무점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병무청은 현지책임관이 E-mail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국외체재자에 대한 복무점검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사회복무요원 교육¹⁾ 사업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부실을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복무를 유도하기 위한 복무기본교육, 복무지도교육 등을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의 2016년 예산현액 98억 8,400만원 중 96억 8,300만원을 집행하였고 2억 100만원을 불용하였다.

[사회복무요원 교육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사회복무요원 교육	9,884	9,884	0	0	9,884	9,683	0	201
사회복무연수 센터 운영	4,523	4,523	0	△171 ²⁾	4,226	4,088	0	138
공공요금	592	592	0	△166	416	389	0	27
시설장비 유지비	92	92	0	0	92	47	0	45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전국 6곳의 사회복무교육센터(서울·부산·대구·수원·광주·대전)에서 실시하던 사회복무요원의 교육을 일원화하기 위하여 2016년 3월 충청남도 보은군에 사회복무연수센터를 개원하였으며, 사회복무연수센터(이하 “센터”라고 함) 운영을 위하여 2016년 예산현액 42억 2,600만원 중 40억 8,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억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조흥연 예산분석관(riskite@assembly.go.kr, 788-4639)

1) 예산코드: 일반회계 1434-319

2) 교육생 수송차량 임차료가 부족하여 동일 세부사업 내에서 조정하였다.

나. 분석의견

병무청은 센터 운영과 관련된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를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여 관련 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공공요금은 센터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하수도의 요금, 건물화재보험료 등을 지불하기 위한 것인데, 2016년 예산액 5억 9,200만원 대비 65.7%인 3억 8,900만원이 집행되었다.

[2016년 센터 주요 공공요금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천원)

구분	편성액	집행액	편성기준
전기요금	452,106	294,134	565,132(12개월분) × 80%
상하수도요금	87,238	47,640	109,047(12개월분) × 80%
건물화재 보험료	29,300	19,455	2,930 × 10개월

자료: 병무청

이에 대해 병무청은 센터 개원이 당초 1월에서 3월로 지연됨에 따라 1~2월분 공공요금을 지불하지 않아 관련 예산의 집행이 부진하였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 편성 시 건물화재 보험료는 10개월 분만 반영되었고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의 경우에도 병무청에서 요구한 12개월 분의 80%만 편성되었음에도, 관련 예산 집행이 부진한 것은 당초 공공요금을 적정 수준으로 편성하지 않은 것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시설장비유지비의 경우 2016년 예산현액 9,200만원 중 4,700만원만 집행되어, 편성액의 절반 수준(48.9%)인 4,500만원이 불용되었다.

이에 대해 병무청은 센터가 2016년 신축되어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센터에서 사용하는 장비도 신규도입으로 2년 간 무상수리가 가능함에 따라 시설장비유지비가 불용되었다는 입장이다.

[무상수리기간에 따른 예산 집행 부진 주요 장비 현황]

(단위: 천원)

장비	편성액	집행액	무상수리기간
온수탱크	234	0	2년
자동제어시스템	4,290	0	
보일러	5,390	0	
공기조화기	26,988	3,240	
지열냉난방시스템	2,597	0	
히트펌프형 공기조화기	1,165	0	

주: 공기조화기의 소모성 부품(필터) 교체는 무상수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일부 집행이 발생하였다.

자료: 병무청

그러나 신축건물은 하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고 일부 장비의 경우 무상보증수리 기간 내에 있어 유지보수비를 반영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이러한 사항들을 예산 편성 시 고려하지 않아 집행 부진이 발생한 것은 부적정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향후 병무청은 센터의 공공요금과 시설장비유지비의 필요 소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집 필

총괄 | 조용복 예산분석실장
고기석 사업평가국장

심의 | 상지원 예산분석총괄과장
서세욱 산업예산분석과장
임명현 사회예산분석과장
박혜진 행정예산분석과장
박홍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성 | 채미강 예산분석관
조흥연 예산분석관
조가영 예산분석관
이미연 예산분석관
모주영 사업평가관

지원 | 이인희 행정실무원

결산분석시리즈 I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17년 8월 16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BN 978-89-6073-023-6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17